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12 호
2019. 3. 21.(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32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4

[입법예고]

제2019-78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19-785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19-792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8

제2019-80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제2019-80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19-81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제2019-81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제2019-81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9

◈ 고 시

제2019-98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24

제2019-102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 33

제2019-103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33

제2019-104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43

제2019-105호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5

제2019-106호 노량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0

제2019-10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6

제2019-108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 92

제2019-109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 96

제2019-11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6

◈ 공 고

제2019-715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 106
제2019-747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 ····· 107
제2019-75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117
제2019-752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118
제2019-75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 120
제2019-763호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양수 등록 공고 ····· 121
제2019-77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 121
제2019-784호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공고 ····· 122
제2019-7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 124
제2019-796호 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124
제2019-803호 제10회'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학생공모전 (변경) ····· 127
제2019-819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 136
제2019-820호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 147
제2019-82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 161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19-151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 165

◈ 구 고 시

제2019-32호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 166
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강북구) ····· 169
제2019-37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도봉구) ····· 173
제20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 176
제2019-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 180
제2019-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강서구) ····· 186
제2019-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금천구) ····· 194
제2019-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195
제2019-37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 203

◈ 구 공 고

제2019-375호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 205
제2019-3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 206
제2019-308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마포구) ····· 208
제2019-409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 209
제2019-308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 213
제2019-343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 222
제2019-4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초구) ····· 241

◈ 사업소고시

제2019-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43

◈ 사업소공고

제2019-6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244
제2019-6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246

◈ 기 타

제2019-41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0
제2019-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0
제2019-4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51

◈ 정 정

제2019-73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2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2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홈페이지 회의 영상자료가 제공자 중심의 시청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의 회의 중계 영상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49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회법」,「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 제3조)

–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

○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시민의 관광활동 촉진·관광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 2133-2807, FAX : 2133-1067, E-mail : jinri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5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안 제12조제1항)

나.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

1)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안 제12조제2항제1호)

2)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3)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안 제12조제2항제4호)

4)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안 제12조제2항제5호)

5)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안 제12조제2항제6호)

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527, 팩스: 02)2133-0710, 이메일: gykim@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92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시기,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
나.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시행 중인 자치법규, 정책, 투자·출연기관 등의 사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마.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함(안 제18조)
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전화 : 02-2133-5059, FAX : 02-2133-0729, EMAIL : kyunghwa14@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난년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년도 체납액 지급대상 일부를 조정하고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4호)
나.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의 적용대상 범위를 타시도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세입증대를 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다.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본공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되 징수포상금 증가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4조제2항)
라.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59, E-mail : lui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도로굴착복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체계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0조, 제11조)

마.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바. 시장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02)2133-8186, 팩스: 02)768-8906, 이메일: nak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담당 김낙현</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1. 안 제4조
(종전)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중 첨부서류 추가
(신설)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1)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의 이원화(안 제4조 관련)

가) 서울시는 '05.3. 효율적인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처리, 품질·이력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도입하고 전산관리 체계 구축

나)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도입 이전의 종이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방식을 현재까지 유지(전체 굴착허가신청의 약 10%)

2)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첨부서류의 실효성 부족(별지 제4호 서식 관련)

가) 현재 서울시는 1년에 2회(상·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굴착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와 함께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제출토록 하고 있음(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다) 서울시 도로는 이용자와 도시 규모가 방대한 만큼 도로상황이 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며 굴착사업계획서와 첨부되는 서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1) 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통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효율화

가) 종이 문서로 접수된 사항은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전산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이에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재차 입력하는 절차를 거침

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한지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업무 과중이 발생

2) 실질적 공사 시기의 도로상황을 반영한 각종 대책 수립의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1) 도로굴착·복구사업 진행과 관련한 업무의 시스템 이용 일원화

2) 사업시행자의 착공 직전인 굴착허가 단계에서 각종 대책에 대한 수립과 도로관리청의 실효성 검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1) 기존의 종이 문서로 접수하던 민원인의 불편 호소

2) 사업시행자의 굴착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구비서류의 증가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1)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관리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으로 실현 가능

2) 각종 대책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유관 부서 및 기관의 협조가 필요

가) 교통소통대책 : 교통소통대책심의회의 상시화로 기 실현 가능하며 해당 절차에 대한 협조 검토 완료

나) 그 외 대책 : 도로관리청 허가 담당자의 자체 검토 및 시스템 상의 유관 부서·기관 의견 조회 및 검토 기능으로 시행 가능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1) 기존의 시스템 선택적 이용을 통하여서는 전산화 체계 실현 불가

2) 도로굴착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도로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1) 교통소통대책 : 교통 관련 부서의 심의 결과로 대체하여 유사 규제 해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1) 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통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효율화

구분	부담자	문서 접수 굴착허가 신청 건수		발생비용/편익
비용	사업시행자	3천여 건/년	1~2 건/인 (*개인)	종이문서 작성 → 시스템 등록
편익	사업시행자		1~2 건/인 (*개인)	허가청 방문 및 대기 등 비용 해소
	도로관리청		약 120 건/인 (**담당자)	도로굴착복구 관련 민원 발생 해소

* 종이문서로 접수되는 도로굴착허가 신청은 주로 개인에 의해서 발생

** 도로관리청(자치구)에서 개인 굴착복구업무 담당자 1인/자치구 * 25개 자치구 = 25인

2) 사업시행자의 착공 직전인 굴착허가 단계에서 각종 대책에 대한 수립과 도로관리청의 실효성 검토

구분	부담자	발생비용/편익
비용	사업시행자	굴착허가신청 단계에서 재검토/구비해야 할 첨부서류의 증가 1. 먼지발생방지대책 2. 안전사고방지대책 3. 도로시설유지대책
편익	사업시행자	1. 교통소통대책의 교통 관련 부서의 심의 결과로 대체 2. 실질적인 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
	도로이용자	도로 점용에 따른 이용 불편 감소 및 공사로 기인한 위험성 저감
	도로관리청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감독·관리 수준 제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검토 완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자치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적정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적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및 구체적인 기준 설정 (안 제7조제1호사목3)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대상이 아니므로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평가결과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안 제7조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33조제2~4호)

라.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 (안 제18조의2제2항)

마.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안 제24조제3항)

바.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1, 팩스 : 02-2133 - 0750 E-mail : cmr214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주택건축본부장 : 류 훈
건축기획과장 : 박경서, 건축정책팀장 : 정광순, 담당 : 조미리</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제33조</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
관계자</td><td colspan="9">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의 건축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별도의 기준을 따르는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주</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건축조례 개정 및 폐지 시까지</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 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현행 3)과 같음)
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역사도심기본계획'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허가권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이 어려워 심의대상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제외)의 부재로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여 소규모 굴착공사장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신설이 필요함

○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한양도성역사도심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관계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르도록 개선하고자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종전 굴토심의 대상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자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됨

○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별도의 대체수단은 없으며 및 기존 규제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별도의 행정기구 및 예산 필요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시장경쟁제한 요소 및 기업활동 저해요소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조례안에 기준 및 절차 등 규제 내용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정책 계획 일부 변경 등에 따라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위원회 구성, 분과별 명칭 및 소관사항 재정립(안 제7조 및 제12조)
나. 직장맘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이동 및 정비(안 제7장)
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18. 9. 28.) 사항 반영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문 수정(안 제6조, 제35조, 제38조)
라. 조직개편('19. 1. 1.)에 따른 젠더자문관 업무 관련 변경사항 반영(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015, FAX: 02)2133-0729, E-mail: inlove31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2018. 12. 31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9조)

다.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조례 제27조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으로 함(제6조)

마.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려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에 설치비용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관계서류 공람 전에 시장과 협의토록 하며, 시장은 설치비용 보조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사업비 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빈집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빈집소유자로 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보조대상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주민합의체와 법 제23조에 따라 인가된 조합으로 함(안 제14조)

자.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6조)

카. 시장은 보조신청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순위,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시장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조합설립,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별지 제1~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전화: 02)2133-7251, 팩스 : 02)2133-0753, 이메일: passion7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담당 김희완</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2건</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피규제집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이해관계자: 구청장(인가권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시까지</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① 제정안 제6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 영에서 조례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으로 정하여 구청장(인가권자)에게 변경 신고하도록 함

② 제정안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계획을 포함함</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제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법 제23조에 의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의결을 거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영 제21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과 영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구청장에게 경미한 변경신고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경미한 변경신고토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조합 총회를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서 조합 총회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완화한 것임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우리시 도시정비조례상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실현가능성 충분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영 및 조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으로 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례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 없음

2. 별지 제4호서식(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로서 건축법령상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거·처리토록 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작업자 또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및 동 시행령 제27조 제6호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계획서에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석면의 안전한 제거·처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도시정비법령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실현가능성 충분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영 및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12조제5호, 제27조제6호(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생략)

영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5.(생략)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 13. (생략)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 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8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6호)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 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증) 16,882.4	16,882.4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변경, 공원 해제 면적 조정(감 3,306.47㎡→감 2,981.47㎡, 국공유지 일부 제외), 최대개발규모 표기 변경 등은 주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 조건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882.40	-	16,882.4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0,045.83	(감)2,981.47	7,064.36	-	-
	도 로	4,358.03	-	4,358.03	-	-
	공원	5,302.25	(감)2,981.47	2,320.78	-	-
	기타	385.55	-	385.55	-	-
공동이용시설		-	(증)172.00	172.00	-	5개소
주택용지 (개별건축)		6,492.57	(증)3,153.47	9,646.04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882.4	-	16,882.4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82.4	-	16,882.4	1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국지도로	230 (24)	충신동 1	이화동 9-208	일반도로	서고72-40 (1972.4.6.)	현황에 의한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4	국지도로	230 (24)	충신동 1	이화동 9-208	일반도로	서고72-40 (1972.4.6.)	
기정	소로	3		4	국지도로	60 (42)	이화동 9-166	이화동 9-3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830 (45)	종로6가 12-23	동숭동 산2-32	일반도로	서고88-741 (1988.9.10.)	
기정	소로	2		8~12	국지도로	430 (255)	이화동 10-2	이화동 9-312	일반도로	서고78-682 (1978.12.23.)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낙산 근린공원	근린 공원	이화동 9-413 일원	201,983	(감)2,981.47	199,001.53	제208호 (1940.3.12.)	

※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신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활용용도	비 고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화동 9-66	39	이화갤러리	조성완료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화동 9-434	39	이화 마을박물관	조성완료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화동 9-478	33	배꽃에 흰달집 (주민소통방)	조성완료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화동 9-425	22	활용계획 검토	매입완료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화동 9-89	39	활용계획 검토	매입완료

※ 건물규모, 운영방법 등 설치계획은 추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최종 결정예정임.

5)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1)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6,882.4	획지계획 없음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주택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계 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계 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 법령에 따름							

(2)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 내용		비 고
불허용도	구역 전체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전층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차고	

※ 불허용도 외 입지가능한 업종 중 ① 주거지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업종, ②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가로변 적치물 등 마을경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업종, ④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정비구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다산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및 중구청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권장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가) 주택개량 지원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계획내용
주택개량 융자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주택 개량,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주택개량 직접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협정 체결 건축물	이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외관개량 직접지원 (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계, 서울특별시 주거개량 직접지원제도 적용)

※ 세부지원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달라질 수 있음 (부문별 정비계획 지침 참조 등)

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증)16,882.4	16,882.4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 공고된 경우 적용가능 · 공공부문 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운영' 참조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6)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한양도성의 구조적 안전성과 가치극대화 등을 고려한 역사문화환경 보전 • 주민쉼터공간 조성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조성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
재난 방지	화재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 내 통합형 비상 소화함 설치를 통한 재난 안전 확보 – 현황 : 소화전(4), 비상소화장치함(1), 소화기(5) – 추가 : 소화전(1), 비상소화장치함(1), 소화기(4) • 성곽 측 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방지 – 전신주 재활용(4), 정비(10), 이설(1)	-
	풍수해	• 주거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풍수해 대비 성곽마을 특성화 구간의 노후도로 재포장구간 중 노후하수관 교체 • 성곽마을길 조성지역 및 계단정비구간의 경사부분 배수시설 정비	-
	기타	• 경사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노후계단 정비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성곽마을길 조성지역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생울타리투시형 담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투시형 구조로 계획(주변시선의 연결확대)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 통제	· 공폐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인접 벽면(담장)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
영역성 강화	· 공폐가, 막다른 골목, 계단 등 우범지역에 벽면을 활용한 골목 가림막, 투시형 출입문, 골목 · 계단 폭을 활용한 간이 편의시설 설치
활동의 활성화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누리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활동공간 마련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원, 마을입구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 환경관리는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에서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관리
방법용 CCTV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 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 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시설 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10)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 주민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 창설 · 마을축제,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 · 운영하는 주체
마을공동체 운영계획	·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구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추진 및 각종 행사 참여

11) 구역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보전 및 활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 한양도성 및 성곽마을과의 연계성 확보로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정체성 회복 도모 · 한양도성과 연결되는 골목길의 도로 포장 및 시설물 등을 역사 · 문화 자원과 연계되도록 고려하여 계획 ·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곽으로의 원활한 유도를 위한 바닥 안내판 설치 · 서울 한양도성의 경관을 보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내 건축물의 규모, 높이, 용도, 색채, 재료, 형태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스스로 규제	

※ 문화재와 관련된 인접공간 정비 또는 개발사업 시행시 각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12)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급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사 업 내 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종로청장 등	해당없음	-
	주택개량	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종로구(주거재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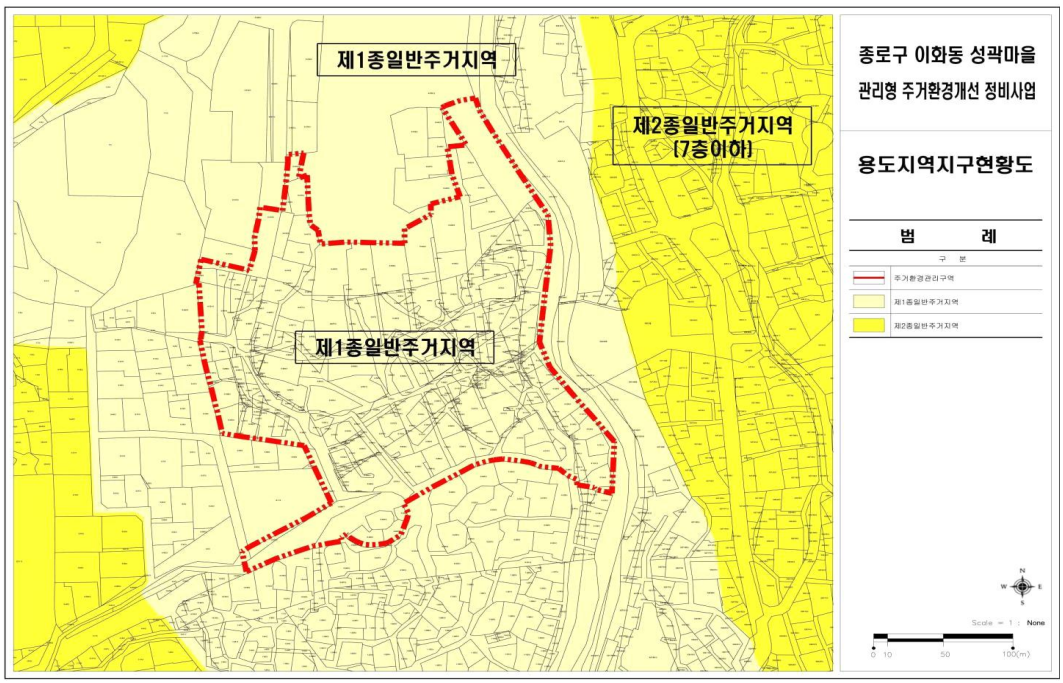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청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이수연 / ☎ 02-2133-7257)
2) 종로구 주거재생과(담당자 길현준 / ☎ 02-2148-2615)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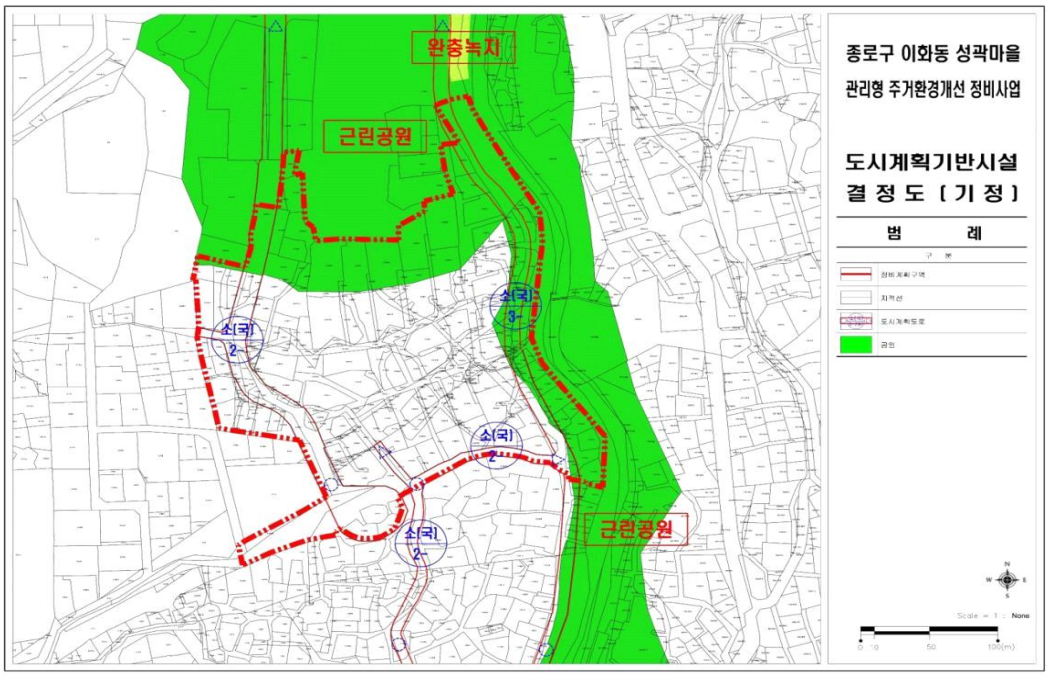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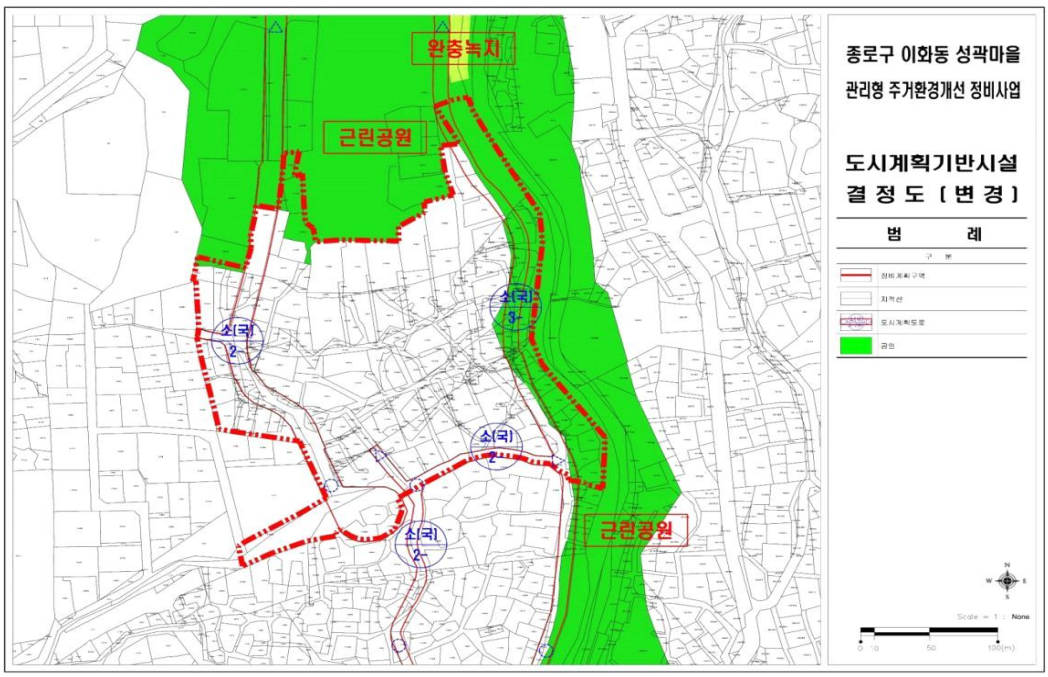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2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시립대 본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89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	
서울시립대 제2공학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90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동대문구 전농제2동 88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 용역시행 결과 종합등급 상향(C등급→B등급)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3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2)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2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 · 휘경동 일원	830,453.0	-	830,453.0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생략)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30,453.0	-	830,453.0	100.0	-
주거 용지	소 계	460,419.3	-	460,419.3	55.4	-
	공동주택	441,774.8	-	441,774.8	53.2	중앙 · 삼익 · 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7,023.0	-	7,023.0	0.8	6개
근생 용지	소계	107,988.0	-	107,988.0	13.0	-
	상업업무	107,988.0	-	107,988.0	13.0	신이문 ·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62,045.7	-	262,045.7	31.6	-
	도 로	137,605.2	-	137,605.2	16.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301.5	-	44,301.5	5.3	-
	공 원	34,137.0	-	34,137.0	4.1	-
	녹 지	20,612.0	-	20,612.0	2.5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8,000.0	-	8,000.0	1.0	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781.0	-	7,781.0	0.9	4개소
	공공청사 등	6,219.0	-	6,219.0	0.7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90.0	-	3,390.0	0.4	지하주차장2개소(3,175㎡) 중 1개소 중복결정면적(2,000㎡) 제외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생략)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복지시설 등) : (변경없음, 생략)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생략)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생략)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생략)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생략)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		830,453.0	-	830,453.0	100.0	
촉진구역		571,729.0	-	571,729.0	68.8	
이문1구역		144,964.0	-	144,964.0	17.5	
이문3구역		154,618.0	-	154,618.0	18.6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3,505.0	-	133,505.0	16.1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6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	-	151,388.0	18.2	
휘경1구역		12,915.0	-	12,915.0	1.6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구역		43,329.0	-	43,329.0	5.2	
휘경3구역		64,387.0	-	64,387.0	7.8	
존치지역		258,724.0	-	258,724.0	31.2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85,567.0	-	185,567.0	22.3	
	①	29,567.0	-	29,567.0	3.6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②	67,135.0	-	67,135.0	8.1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0.7	회기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73,157.0	-	73,157.0	8.8	
	④	0.0	-	0.0	0.0	이문초등학교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4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	-	17,03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28.0	-	7,228.0	0.9	중앙선
	⑫	6,284.0	-	6,284.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329	-	43,329	100.0
주거지역	소계	43,329	-	43,329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742	-	14,742	34.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587	-	28,587	66.0

※ 변경사유 : 휘경2구역 현황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생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생략)

12)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생략)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생략)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 방재,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생략)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생략)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생략)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휘경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43,329	-	43,329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재정비 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3,329	-	43,32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61	-	13,761	31.8	-
	도 로	6,921	-	6,921	16.0	-
	공 원	3,402	-	3,402	7.9	-
	녹 지	3,438	-	3,438	7.9	-
택 지 (획지)	소 계	29,568	-	29,568	68.2	-
	6-1	28,587	-	28,587	65.9	공동주택
	6-2	178	-	178	0.4	종교시설
	6-3	803	-	803	1.9	공공청사

※ 변경사유 : 휘경2구역 현황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157)	이문동 288-65번지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번지	휘경동 119-46번지	보행자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17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⑫**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일원**	**3,438**	**-**	**3,438**	**서고2007-496 (´08.1.7)**	

※ 변경사유 : 휘경2구역 현황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⑫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02	-	3,402	서고2007-496 (´08.1.7)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공공청사**	**동사무소**	**휘경동 135-9번지**	**803**	**-**	**803**	**동고 107 (1997.11.6)**	**휘경1동 동사무소**

※ 변경사유 : 휘경2구역 현황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2 재정비 촉진구역	43,722	-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319	-	-	319	-	-

◦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휘경2 재정비 촉진구역	43,329	6-1	28,587	동대문구 휘경동 131-31번지 일대	85,6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30층이하 (112m이하)
			6-2	178	동대문구 휘경동 131-75번지 일대	356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6-3	803	동대문구 휘경동 135-9번지 일대	1,60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900세대 [임대 149세대, 장기전세 25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89세대(54.3%) - 전용면적 60~85㎡이하 : 355세대(39.5%) - 전용면적 85㎡초과 : 56세대(6.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선 철로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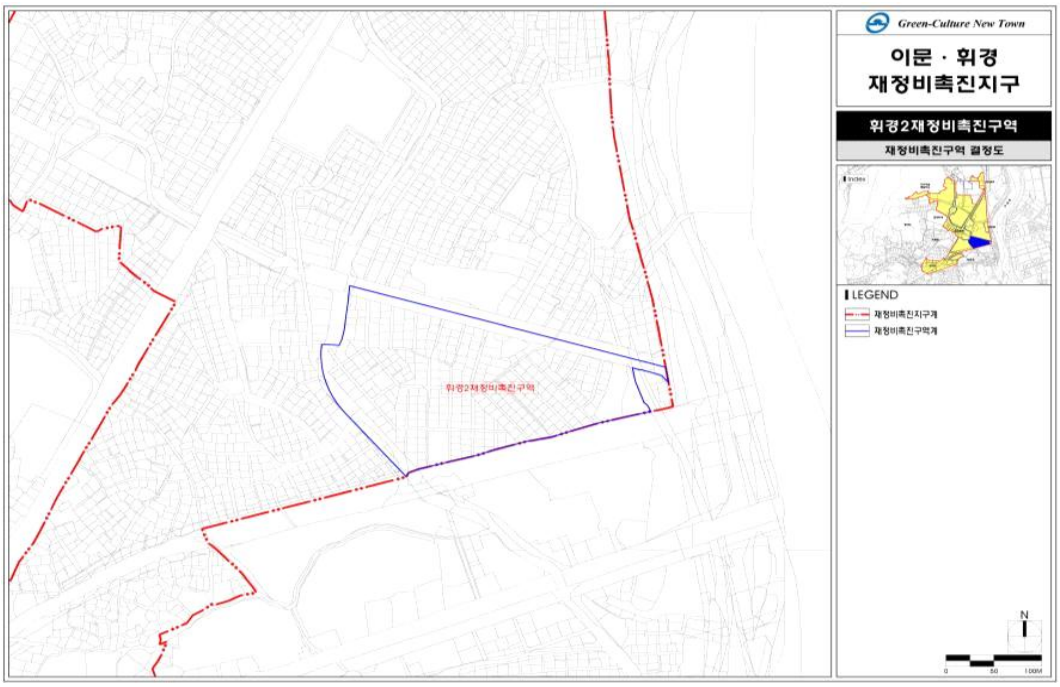
5.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546)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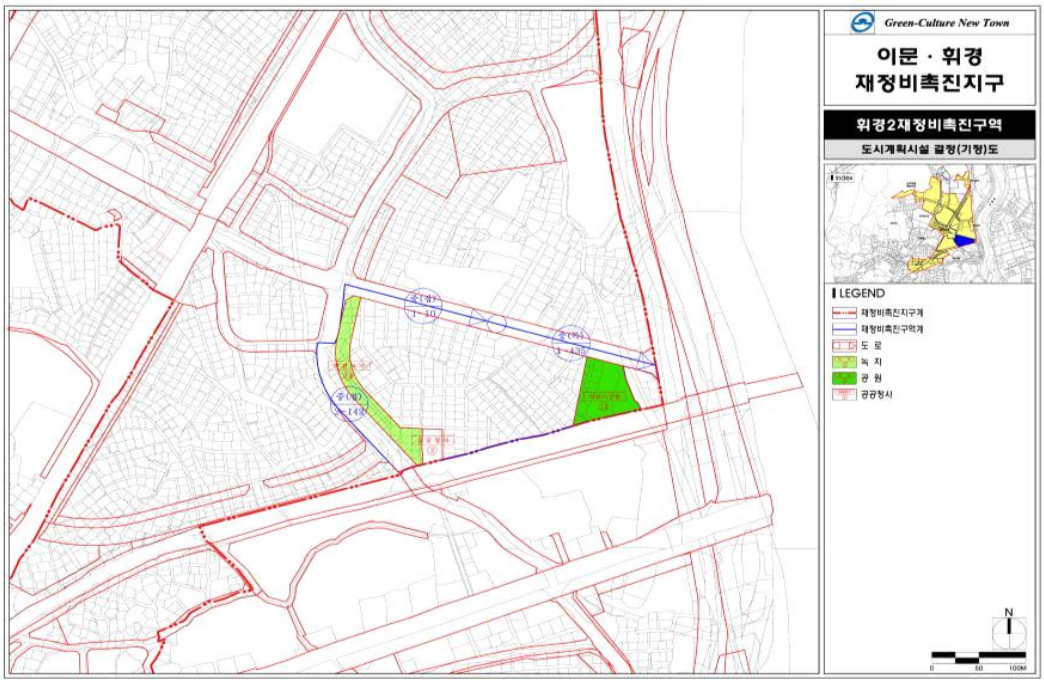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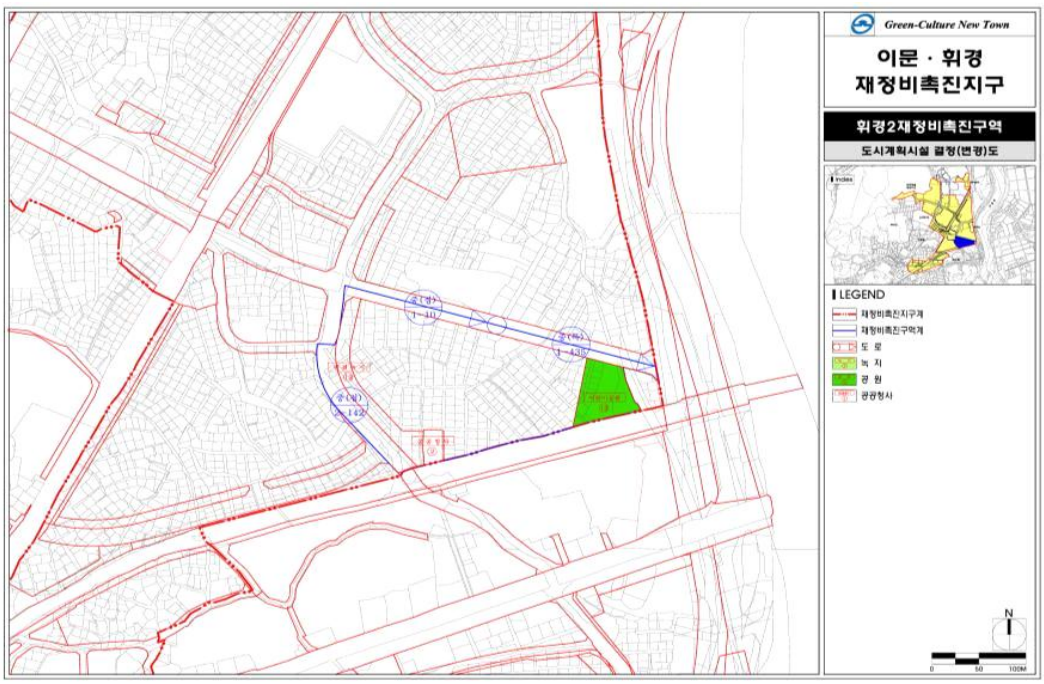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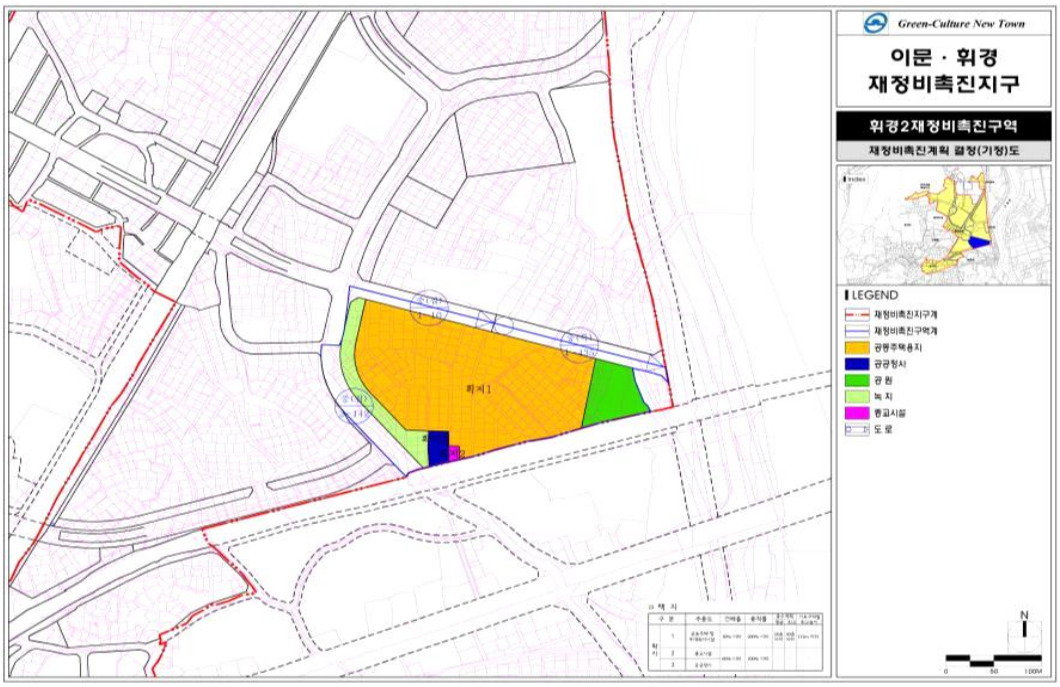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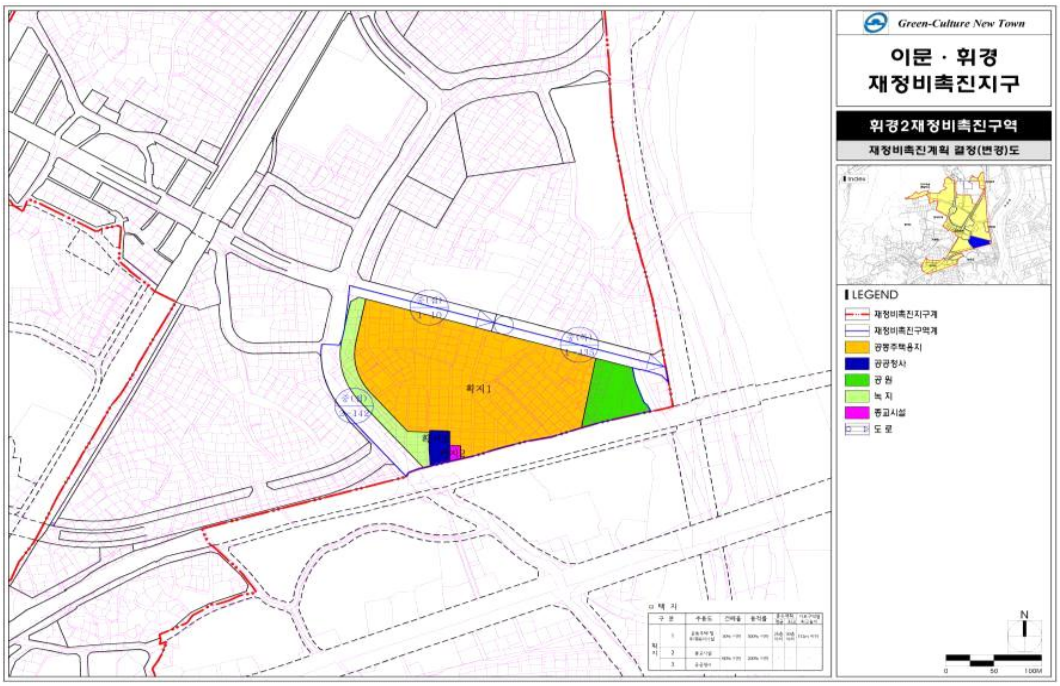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4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2013.09.05.)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2015.6.25.)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호(2017.1.26.)로 변경되고, 제2018-29호(2018.2.8.)로 변경되고, 제2018-224호(2018.7.19.)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단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다. 구역면적 : 1,123,784㎡

라. 조성목적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마. 추진경위

-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
-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
-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
-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
-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183호)
-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4-247호)
-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
-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
- 2015.6.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
-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
-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
- 20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7-26호)
- 2017. 5. 4.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161호)
- 2017. 7. 27.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273호)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 20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9호)
- 2018. 7. 19.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24호)

바. 입지여건

1) 교통여건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2㎞),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
-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9,363톤/일 공업용수 : 2,949톤/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1,276,196 MWh/년	한국전력
통 신	미 정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오수발생량 : 10,899톤/일 폐수발생량 : 2,323톤/일	서울특별시

※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

2. 관리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리방향

-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
-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 자족적 공동체 조성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84	729,785	81,326	224,438	76,469	11,766

※ 관리제외면적 :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소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설립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비율은 공고문에 따로 정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라)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00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GT	그린생산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업종별 배분 비율

-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랜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가) 입주계약 신청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심사

- 심사절차

위 원 회		시 장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협의 보완
토지공급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체결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첨부 가능

  ·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

다)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공실활용 입주절차

- 연구시설 공실활용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공실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절차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된 공실활용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활용 제공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및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집법 제39조)

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입주대상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바)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사)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 (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최초분양시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 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용지의 환수 (산집법 제41조)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음

- 단,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나)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관리기관은 공실활용 입주자가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처분 (산집법 제43조)

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

6) 이행강제금 (산집법 제43조의3)

가)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며, 이의 문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다)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7) 연구개발환경의 보전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8)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3호(2018.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986,272.5	-	986,272.5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보광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 기준년도 : 2007년
- ○ 목표연도 : 2024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6,272.5	-	986,272.5	100.0	
주택용지	소계	664,769.9	-	664,769.9	67.4	
	주상복합	194,238.3	-	194,238.3	19.7	
	공동주택	470,531.6	-	470,531.6	47.7	존치아파트 포함
기 타	소계	20,417.1	-	20,417.1	2.1	
	종교시설용지	14,911.1	-	14,911.1	1.5	
	기 타 용 지	5,506.0	-	5,506.0	0.6	변전소 이전부지
공공용지	소계	301,085.5	-	301,085.5	30.5	
	도로	144,458.3	-	144,458.3	14.6	
	주차장	1,649.0	-	1,649.0	0.2	
	공원	29,464.6	-	29,464.6	3.0	
	녹지	28,069.0	-	28,069.0	2.9	
	공공공지	16,079.0	-	16,079.0	1.6	미래 공공시설용지 포함
	교육시설	76,363.4	-	76,363.4	7.7	
	공공문화시설	5,002.2	-	5,002.2	0.5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34,196인 / 12,766세대(변경없음)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766	-	12,766	34,196	-	34,196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12,066	-	12,066	32,580	-	32,580	
	40㎡ 이하	800	-	800	2,160	-	2,160	
	40㎡~60㎡	4,676	-	4,676	12,626	-	12,626	
	60㎡~85㎡	3,979	-	3,979	10,744	-	10,744	
	85㎡ 초과	2,611	-	2,611	7,050	-	7,050	
존치관리구역	-	700	-	700	1,616	-	1,616	기존세대 수용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	81,365.6	-	81,365.6	
교 육 시 설	소 계	3	76,363.4	-	76,363.4	
	초등학교	2	22,798.4	-	22,798.4	보광초 이전, 1개소 신설
	중·고등학교	1	53,565	-	53,565	오산중고교
공공·체육 문화시설	소 계	4	5,002.2	-	5,002.2	
	공공청사	2	2,646.0	-	2,646.0	주민센터 2개소
	소방파출소	1	800	-	800	
	사회복지시설	1	1,556.2	-	1,556.2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	57,533.6	-	57,533.6	
공원 시설	소 계	10	29,464.6	-	29,464.6	
	문화공원	3	10,185.9	-	10,185.9	제3호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3	9,502.2	-	9,502.2	
	소공원	4	9,776.5	-	9,776.5	
녹지 시설	소 계	5	28,069	-	28,069	
	연결녹지	2	17,234	-	17,234	
	완충녹지	1	5,796	-	5,796	
	경관녹지	2	5,039	-	5,039	

※ '18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8.11.20)을 통해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예시도 변경
- 향후 자문결과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 후 변경 될 수 있음

5) 교통계획(변경)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 건축위원회 심의(2017.9.12)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2017.11.27) 결과를 반영한 교통계획 관련 도면 변경

6) 경관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 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촉진2	뉴타운	보광동	265	16.2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3	뉴타운	한남동	686	38.6	190%	-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4	뉴타운	보광동	360	16.2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기정	촉진5	뉴타운	동빙고동	60	18.7	170%	-	60%	2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6,272.5	-	986,272.5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4개 구역)		897,527.5	-	897,527.5	-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265번지 일대	162,321	-	162,321	주택재개발사업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	386,395.5	주택재개발사업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2,030	-	162,030	주택재개발사업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6,781	-	186,781	주택재개발사업	
존치관리 구역	소 계(3개 구역)		88,745	-	88,745	-	
	한남1 존치관리구역	보광동 151번지 일대	56,788	-	56,788		
	한남2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807번지 일대	28,996	-	28,996		
	한남3 존치관리구역	한남동 550번지 일대	2,961	-	2,961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386,395.5	-	386,395.5	100.0
	일반주거지역	소 계	316,028.0	-	316,028.0	81.8
		제1종일반주거지역	152,992.6	-	152,992.6	39.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1,641.9	-	101,641.9	26.3
		제3종일반주거지역	61,393.5	-	61,393.5	15.9
	준주거지역		70,367.5	-	70,367.5	18.2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0)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고도지구	최고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8m이하	4,560 (4,560)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2	고도지구	최고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일대	23m이하	28,320 (28,320)	서고 제252호 (02.6.27)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조망가로	반포로변	41,520	1,730	양측12	서고 제164호 (82.4.22)	
기정	2	미관지구	중심지	이태원동34 ~한남동736	22,260	1,800	15	서고 제164호 (82.4.22)	
기정	3	미관지구	역사문화	강변북로변	13,440	1,120	양측12	서고 제194호 (84.4.17)	
기정	4	미관지구	역사문화	독서당길변	1,200	100	양측12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 역 명	주 된 용 도	건폐율 (%)	기준용적률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최대용적률 (%)	높이계획		비 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8	214	214	8 / 15	48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90	232.5	232.5	- / 22	73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10	210	10 / 29	95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주거	60이하	170	223	223	10 / 50	170	

※ 한남3구역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 (단, 구역 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 분	획 지 명	최 고 높 이	비 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3-7-2	73m	
	4-31-1	95m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상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에 따른 건축배치계획 변경 및 건축위원회 심의(2017.9.12)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2017.11.27) 결과를 반영한 일반건축지침도 변경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				시설제공 면적(㎡) (건축물 등) -②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①+②-③ -④-⑤)	순부담률 (%)
			합□ 계 -①	도 로	공원 및 녹지	기타		계획기반 시설내 -③	기존기반 시설내 -④	유상매입 시설 -⑤		
합□□ 계		897,527.5	251,232.5	142,773.3	57,533.6	50,925.6	5,512	60,544.2	60,664.3	17,440	118,096.0	13.2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 촉진구역	162,321	55,215	38,727	2,292	14,196	-	15,457	11,364	12,043	16,351	10.1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6,395.5	92,576.5	51,849.3	27,263.6	13,463.6	5,512	21,945.2	25,576.3	-	50,567.0	13.1
	한남4재정비 촉진구역	162,030	49,032	34,565	6,027	8,440	-	14,496	11,832	2,221	20,483	12.6
	한남5재정비 촉진구역	186,781	54,409	17,632	21,951	14,826	-	8,646	11,892	3,176	30,695	16.4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

구 분	비 용 분 담				비 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도로	-	-	-	○	(소로3-8호선 및 소로3-9호선 현황도로 정비포함)
주차장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비 민간부담)
공원·녹지	-	-	-	○	-
공공공지	-	-	-	○	-
공공청사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사회복지시설	-	○	-	○	건축공사비 구비부담 (한남3촉진구역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학교	○	-	○	○	교육청, 서울시 부담 (한남3촉진구역 부지 및 건축공사비 민간부담)

※ 보광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비용분담은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상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 계획 대지지분 오기 정정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계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비 고
				소 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합 계		12,066	10,124	1,942	800	797	345	
촉진 구역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1,926	1,598	328	136	135	57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5,816	4,940	876	356	356	164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1,965	1,630	335	138	138	59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2,359	1,956	403	170	168	65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구역별 단계적 사업추진

구 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 상	비 고
1단계	2009년	2021년	2024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2010년	2019년	2022년	한남2, 한남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2.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단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7) 방재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	-	386,395.5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86,395.5	-	386,395.5	100.0
주거용지		293,819.0	-	293,819.0	76.0
기반시설	소 계	92,576.5	-	92,576.5	24.0
	공공청사	1,410.0	-	1,410.0	0.4
	사회복지시설	1,298.2	-	1,298.2	0.3
	학 교	10,755.4	-	10,755.4	2.8
	공 원	27,263.6	-	27,263.6	7.1
	도 로	51,849.3	-	51,849.3	13.4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15~30	보조 간선	1,298 (392)	이태원동 128-20대 일대	보광동 12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128호 (77.4.28)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500 (247)	한남동 543-8대 일대	보광동 80-2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제590호 (78.11.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532 (532)	한남동 642-17대 일대	한남동 568-237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2	21	18	집산 도로	161 (161)	보광동 259-4도 일대	보광동 264-88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2	22	15	집산 도로	472 (472)	보광동 21-1대 일대	보광동 248-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59 (159)	보광동 265-1021대 일대	한남동 732-152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536 (536)	보광동 3-86대 일대	보광동 265-23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306 (306)	한남동 568-177대 일대	보광동 3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42 (742)	한남동 647-39구 일대	한남동 732-191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84 (84)	보광동 265-916대 일대	보광동 265-694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09 (109)	한남동 732-226대 일대	한남동 732-19대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20 (520)	한남동 763-18도 일대	한남동 620-171종 일대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02 (102)	한남동 568-514도 일대	보광동 1-15구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7-223호 (2017.6.29)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8 (1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70 (108)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기정	소로	3	9	4	국지 도로	116 (30)	한남동 732-23도 일대	한남동 732-23도 일대	일반 도로	-	서고 제2018-243호 (2018.8.2)	

※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732-126일대	4,044.1	-	4,044.1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주차장② 중복결정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한남동620-171일대	6,133.8	-	6,133.8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보광동8-3일대	1,615.9	-	1,615.9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보광동35-13일대	5,973.3	-	5,973.3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기정	2	공원	소공원	한남동766-2일대	4,643.8	-	4,643.8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기정	3	공원	소공원	한남동568-105일대	2,576.4	-	2,576.4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기정	4	공원	소공원	한남동561-1일대	2,276.3	-	2,276.3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공청사	주민센터	보광동265-124일대	1,410.0	-	1,410.0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보광동 주민센터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한남동665-9일대	10,755.4	-	10,755.4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신설초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노외주차장	한남동732-126일대	4,044.1	-	4,044.1	서고 제2009-387호 (2009.10.1)	문화공원③ 지하에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보광동265-999일대	1,298.2	-	1,298.2	서고 제2017-223호 (2017.06.29)	종합사회복지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386,395.5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2,444	-	-	2,444	-	-

○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최고 높이	
한남3 재정비 촉진 구역	386,395.5	3-1-1	3,704.5	용산구 한남동 732-19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2	3,231.4	용산구 한남동 732-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3	5,001.0	용산구 한남동 686-1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1-4	8,889.4	용산구 한남동 653-33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2-1	56,465.8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78.5이하	-	12층	39m	
		3-2-2	52,217.3	용산구 보광동 265-168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154.8이하	-	5층	18m	
		3-3	16,298.4	용산구 한남동 647-46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21.8이하	-	15층	48m	
		3-4-1	18,205.5	용산구 한남동 609-8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4-2	17,373.2	용산구 한남동 557-39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5	9,787.9	용산구 보광동 15-18번지일대	공동주택	50이하	250이하	-	15층	48m	
		3-6	24,288.5	용산구 보광동 3-28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이하	-	12층	39m	
		3-7-1	15,958.0	용산구 보광동 251-5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0층	67m	
		3-7-2	54,409.5	용산구 보광동 11-1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91.7이하	-	22층	73m	
		3-8	1,527.7	용산구 보광동 265-443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3-9	837.4	용산구 한남동 653-70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0	2,598.5	용산구 한남동 568-91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3-11	1,758.5	용산구 보광동 265-35대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공공 청사	1,410.0	용산구 보광동 265-124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이하	-	7층	25m	
		사회복지 시설	1,298.2	용산구 보광동 265-999대일대	복지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학교	10,755.4	용산구 한남동 665-9번지일대	교육시설	60이하	150이하	-	5층	18m	

<table>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 : 부분임대
<table><tr><th>구분
(전용면적)</th><th>총세대수</th><th>분양세대</th><th>임대세대</th><th>비율
(%)</th></tr><tr><td>40㎡미만</td><td>356</td><td>-</td><td>356</td><td>6.1</td></tr><tr><td>40~50㎡미만</td><td>356</td><td>-</td><td>356</td><td>6.1</td></tr><tr><td>50~60㎡미만</td><td>2,305</td><td>2,141</td><td>164</td><td>39.6</td></tr><tr><td>60~85㎡미만</td><td>1,851</td><td>1,851</td><td>-</td><td>31.9</td></tr><tr><td>85㎡이상</td><td>948</td><td>948</td><td>-</td><td>16.3</td></tr><tr><td>합 계</td><td>5,816(192)</td><td>4,940(192)</td><td>876</td><td>100.0</td></tr></table></td><td></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건축배치, 높이 및 형태 지침도 참조</td><td></td></tr>
</table>

주1)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2) 건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가중평균선에서의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부분 지반층에서의 층수 기준 최고높이임

주3)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

※ 단, 구역 전체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90m 이하 적용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9~2024년)	주택재개발조합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건립위치	공급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변경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52,916.21	53,051.41	356세대(6.1%)	40㎡이하	
			356세대(6.1%)	40㎡~50㎡	
			164세대(2.8%)	50㎡~60㎡	
			전체 876세대(15.0%)	-	

※ 사업시행인가 협의의견(세대별 공급면적 변경)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 연면적 변경

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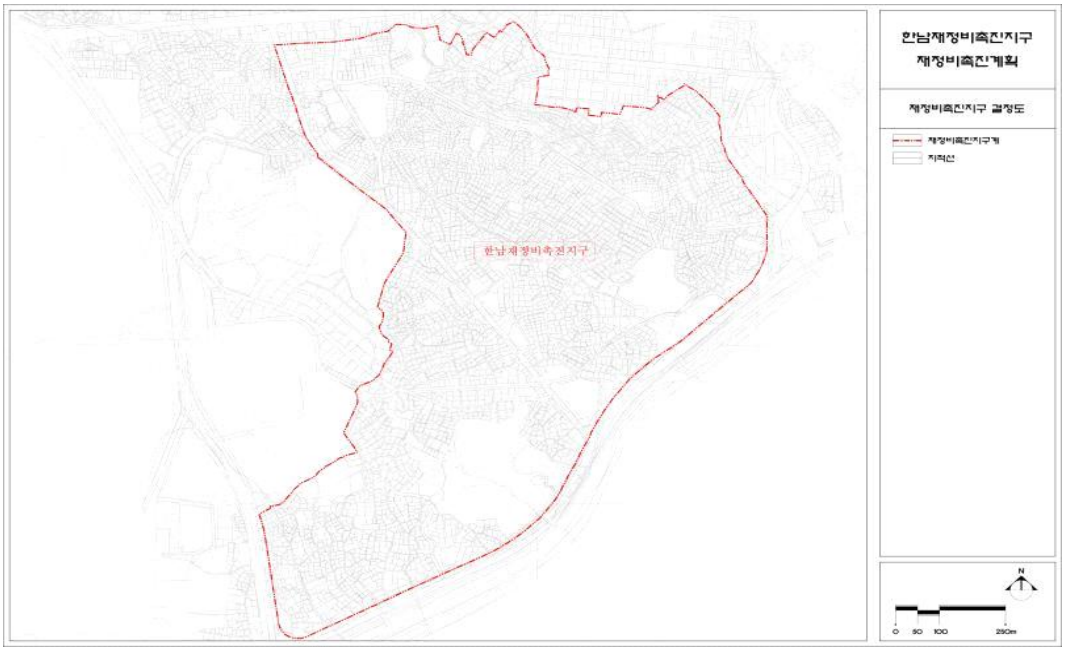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바.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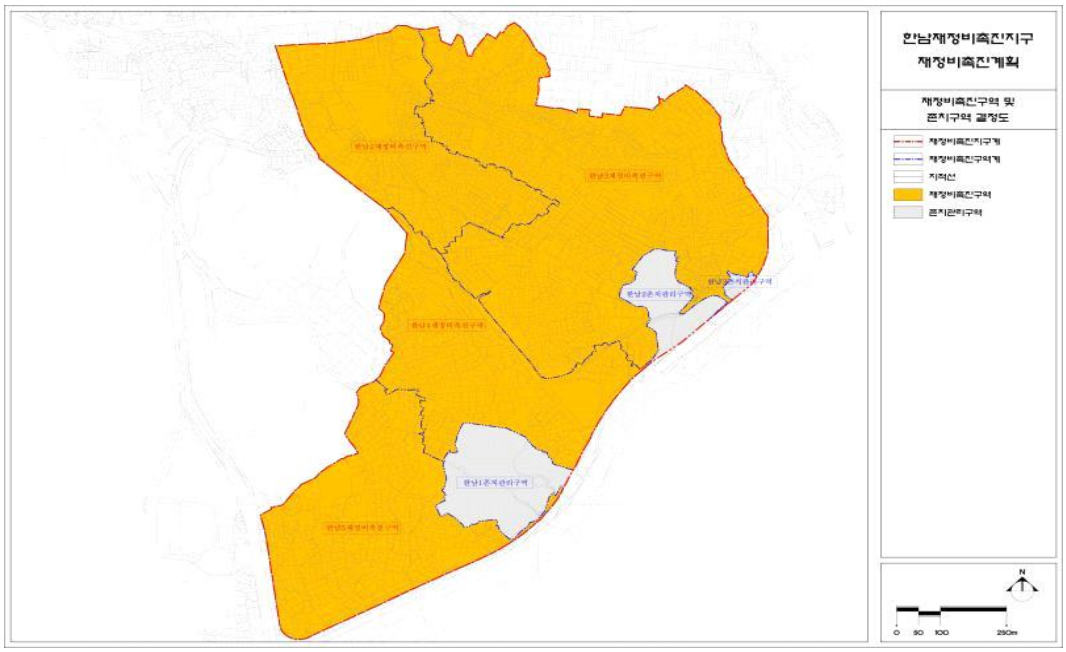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02)2199-74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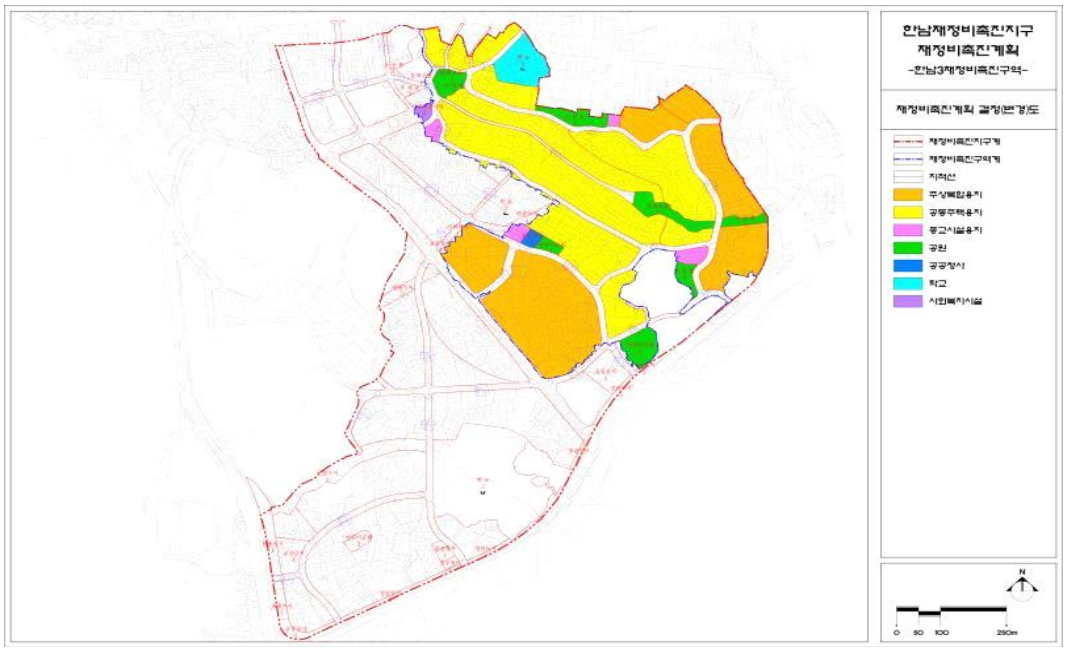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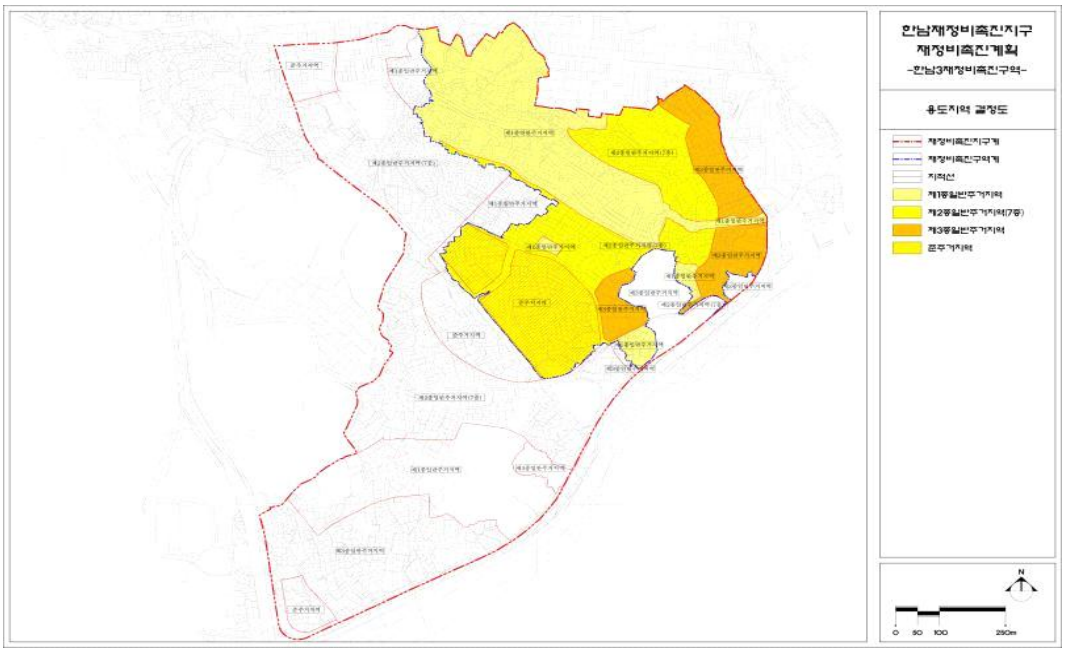
○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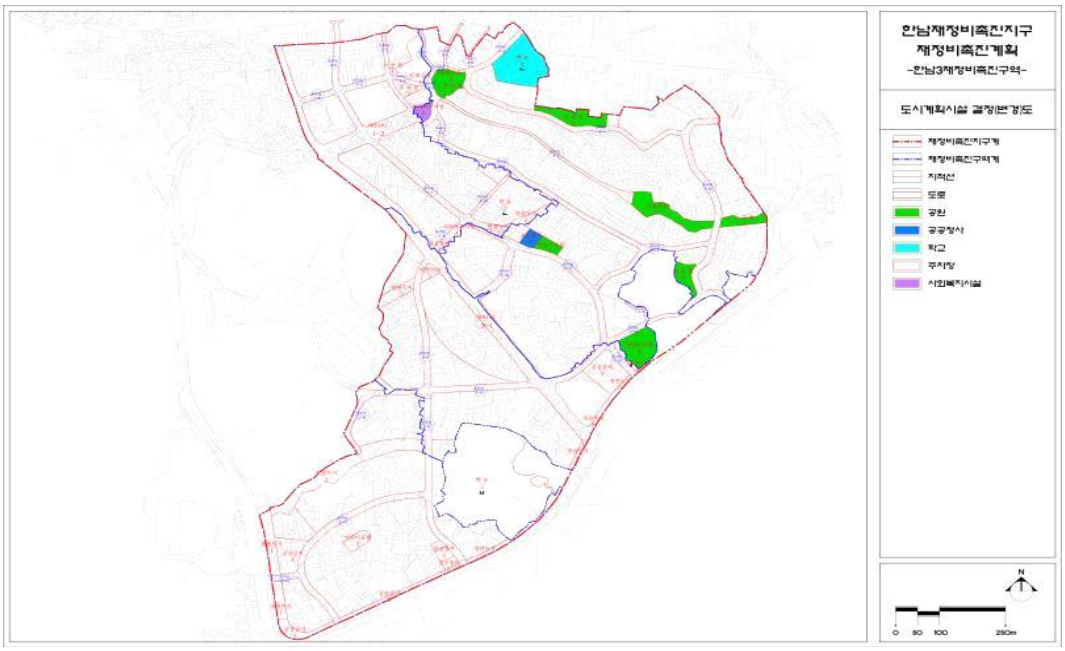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

노량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 · 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9,070.5	-	739,070.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39,070.5	-	739,070.5	100.0	-
획지	소 계	506,342.9	-	506,342.9	68.5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07,783.7	-	307,783.7	41.6	-
	복합시설	148,709.2	-	148,709.2	20.1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12,270.0	-	12,270.0	1.7	-
기반시설	소 계	232,727.6	-	232,727.6	31.5	-
	공원녹지	47,248.0	-	47,248.0	6.4	-
	공공시설	16,532.0	-	16,532.0	2.2	-
	공공공지	178.0	-	178.0	0.0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393.0	-	59,393.0	8.0	-
	도 로	103,805.6	-	103,805.6	14.1	-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기정	8,093 (48)	6,668 (48)	2,171	3,567	930 (48)	1,425	586	551	267	21
	변경	8,118 (48)	6,687 (48)	2,131	3,642	914 (48)	1,431	588	555	267	21
노량진1촉진구역		1,997	1,657	269	812	576	340	162	140	38	-
노량진2촉진구역		421	315	99	216	-	106	-	-	85	21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노량진4촉진구역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노량진5촉진구역		746 (25)	616 (25)	260	316	40 (25)	130	54	58	18	-
노량진6 촉진구역	기정	1,499 (23)	1,237 (23)	460	729	48 (23)	262	106	106	50	-
	변경	1,499 (23)	1,237 (23)	456	733	48 (23)	262	106	106	50	-
노량진7촉진구역		551	457	208	230	19	94	44	39	11	-
노량진8촉진구역		1,007	835	325	460	50	172	80	70	22	-

※ ( )는 부분임대 세대임

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09.0	-	72,809.0	-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2,809.0	-	72,809.0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8,567.0	-	18,567.0	25.5	-
	도 로	8,056.0	-	8,056.0	11.1	-
	공 원	4,656.0	-	4,656.0	6.4	-
	문화시설	5,571.0	-	5,571.0	7.6	-
	공공시설	284.0	-	284.0	0.4	-
택 지 (획 지)	소 계	54,242.0	-	54,242.0	74.5	-
	6-1	53,757.0	-	53,757.0	73.8	-
	6-3	485.0	-	485.0	0.7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715 (33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5 (20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 (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 일대	15,746.4 (4,656.0)	-	15,746.4 (4,656.0)	

※ (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공공청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번지 일대	3,368.0 (284.0)	-	3,368.0 (284.0)	

※ ( )는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문화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314-10번지 일대	5,571.0	-	5,571.0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6 재정비 촉진구역내	212.6	감) 6.5	206.1	
	주민공동시설		1,861.0	증) 184.5	2,045.5	
	경로당		396.6	감) 14.9	381.7	
	보육시설		598.3	감) 6.2	592.1	
	문고		560.8	증) 83.2	644.0	
	주민운동시설		653.9	-	653.9	
	어린이놀이터		1,580.1	-	1,580.1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6 재정비 촉진구역	72,809.0	6-1	53,757.0	동작구 노량진동 194-198번지일대	공동 주택	20.61 이하	268.01 이하	90 이하	-	28층 이하
			6-3	485.0	동작구 노량진동 313-97번지일대	종교 시설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 (호)	1,499 (23)	262	106	106	50	1,237 (23)	460	729	48 (23)
		비율 (%)	100.0	17.48	7.07	7.07	3.34	82.52	30.69	48.63	3.20
	변경	주택 (호)	1,499 (23)	262	106	106	50	1,237 (23)	456	733	48 (23)
		비율 (%)	100.00	17.48	7.07	7.07	3.34	82.52	30.42	48.90	3.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 12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 남북간 연결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B=10~15m)를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39,070.5	-	739,070.5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소 계	723,534.5	-	723,534.5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46,854.0	-	46,854.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7,854.9	-	167,854.9	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007.1	-	127,007.1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818.5	-	381,818.5	51.7
	준주거지역		12,108.0	-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5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A	12~15	집산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101	12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3류	3	6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15	국지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7	4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745	노량진동240-79	대방동23-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9	15	국지도로	645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우선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25	15~20	집산도로	1,325 (292)	대방동49-6	상도동366-5	일반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264호 1981.07.11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도로	25	대방동11-25	대방동11-8	보행자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1	15~20	국지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3길
기정	소로	3류	12	6~8	국지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43-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09,661.0 (46,626.0)	-	409,661.0 (46,626.0)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03.12	( )는 지구 내
지구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	6,881.6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080.0	-	11,080.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1,683.0	-	11,683.0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5,746.4 (4,656.0)	-	15,746.4 (4,656.0)	-	( )는 6구역 내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1,235.0	-	1,235.0	-	-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일대	178.0	-	178.0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400.0	-	4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3,368.0	-	3,368.0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600.0	-	60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

□ 체육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체육시설	체육관	노량진동 225-171일대	1,997.0	-	1,99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	-

□ 학 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영화초교, 영등포 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32.0	-	47,332.0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0	-	12,061.0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	159.0	-	159.0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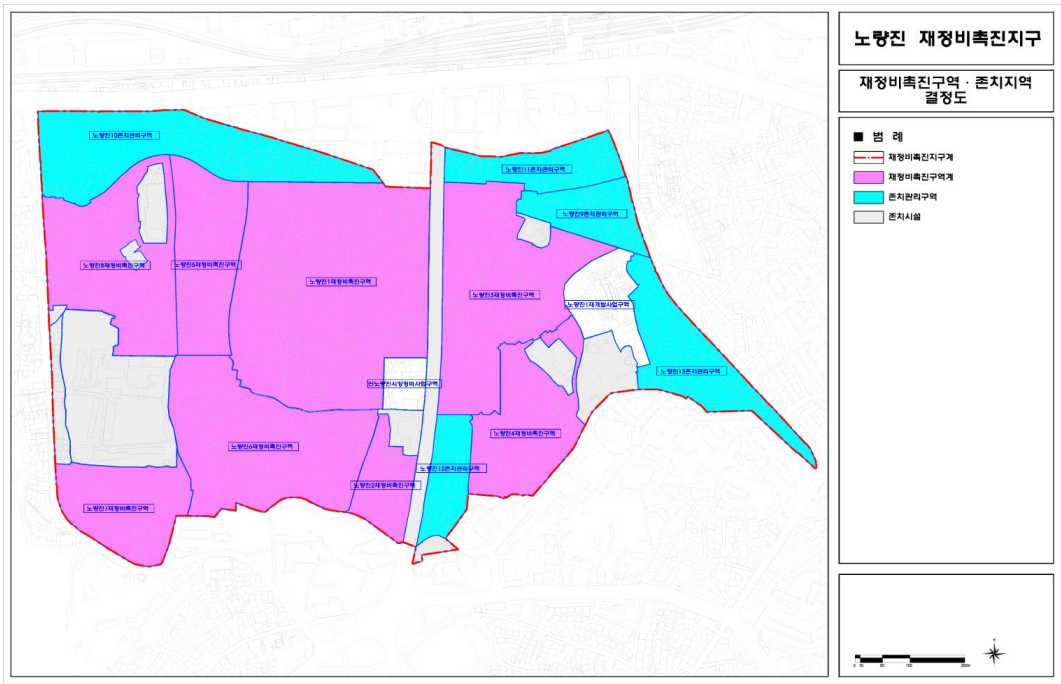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노량진동 314-10번지 일대	5,571.0	-	5,57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06.15.)	-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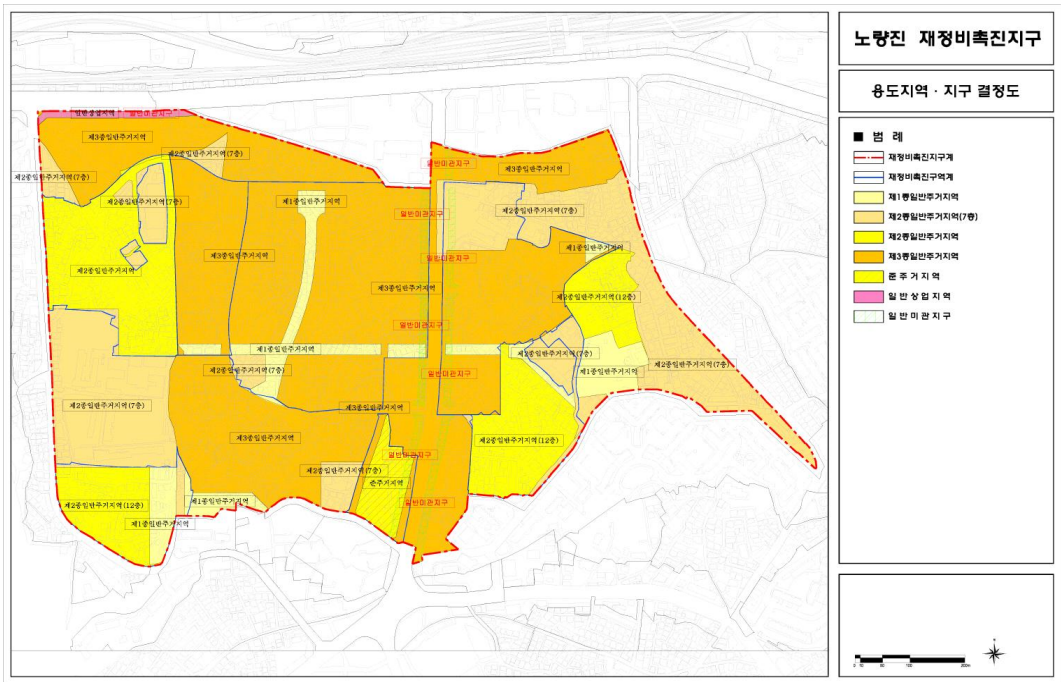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바. 시민의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3)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138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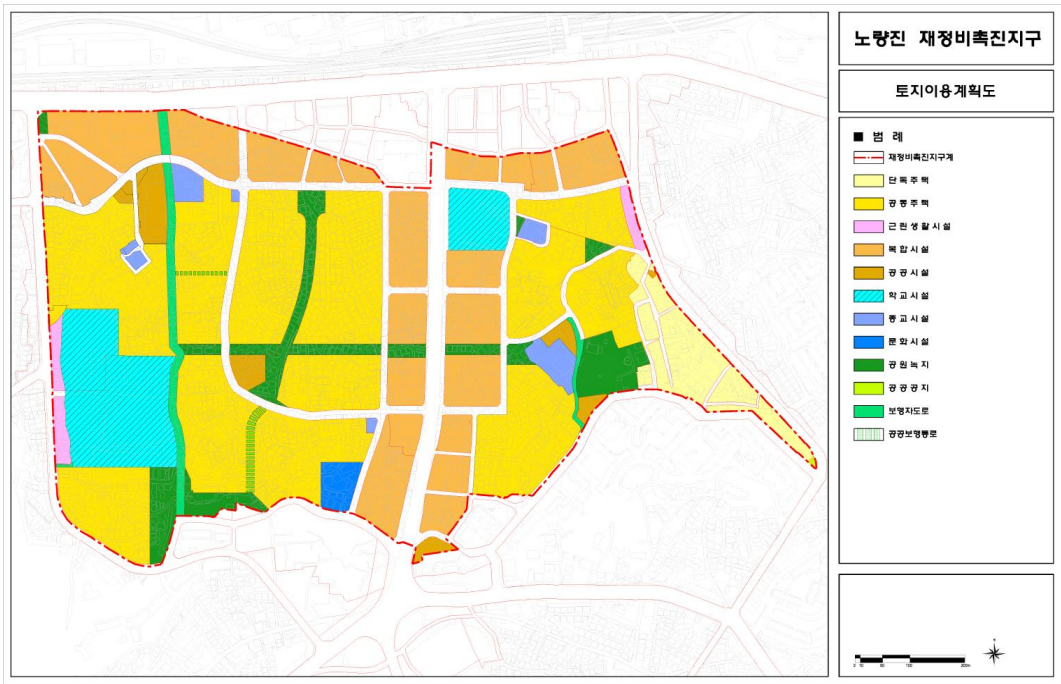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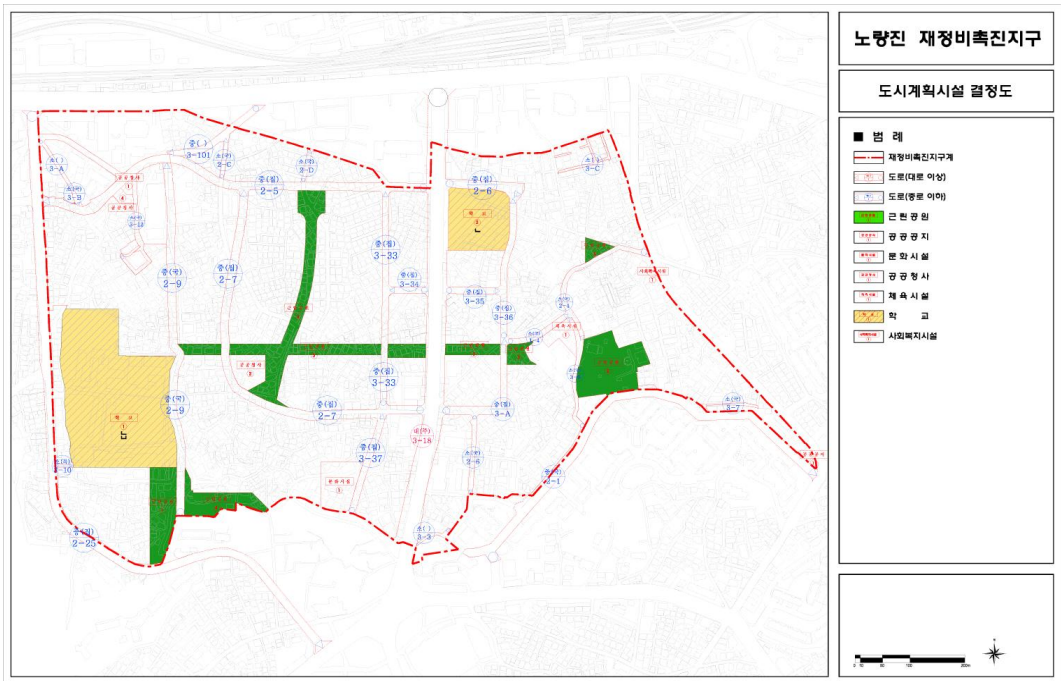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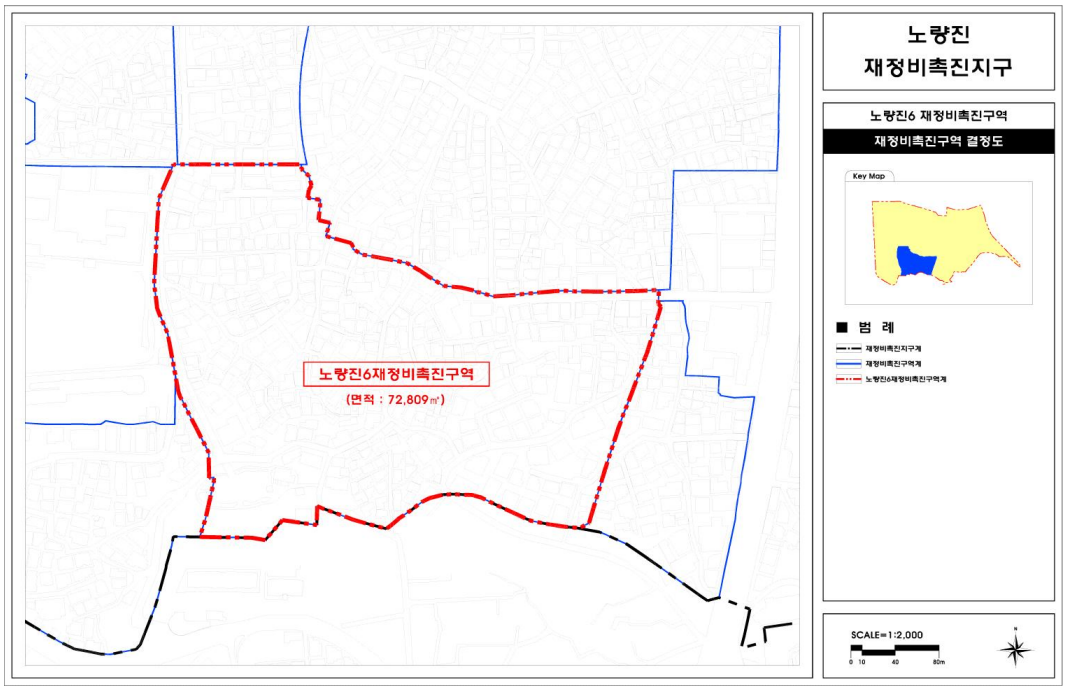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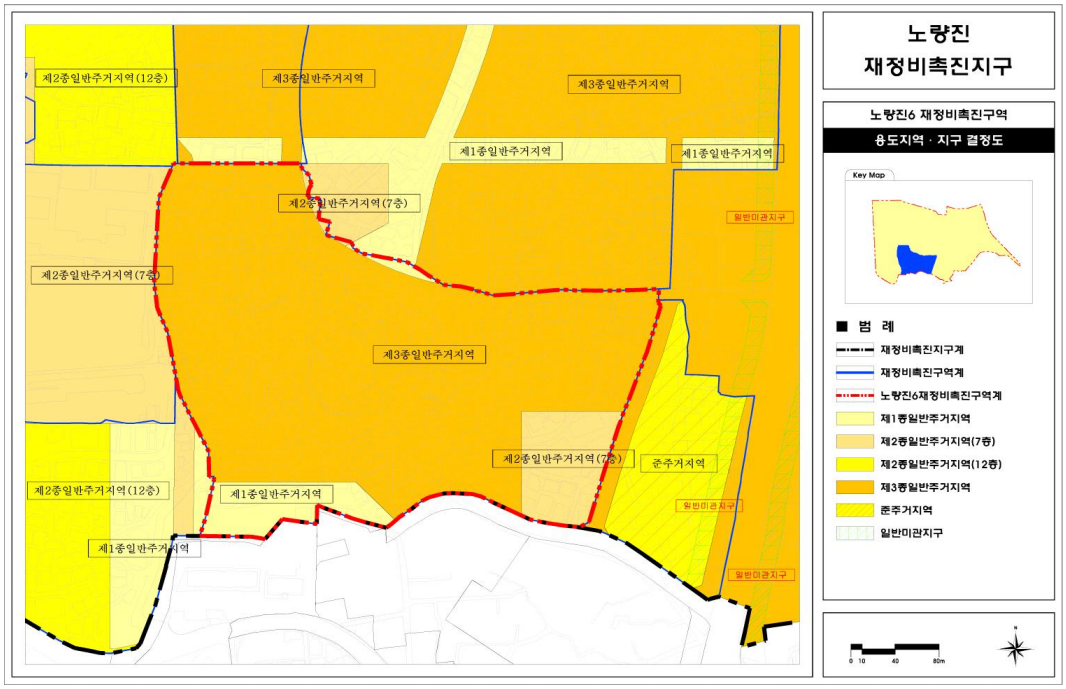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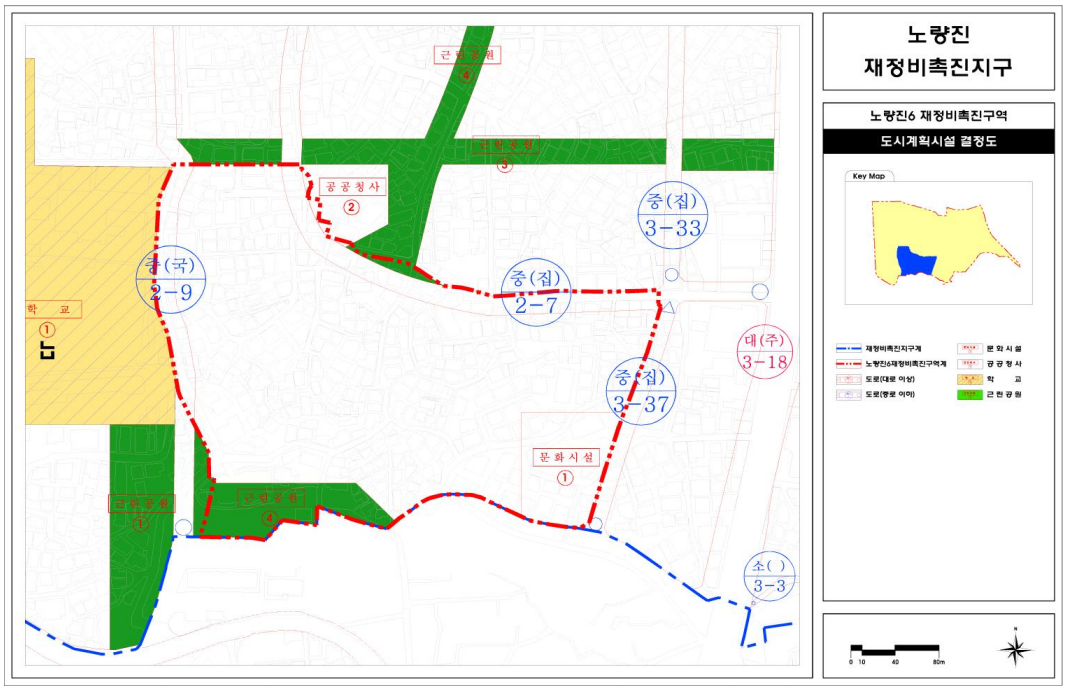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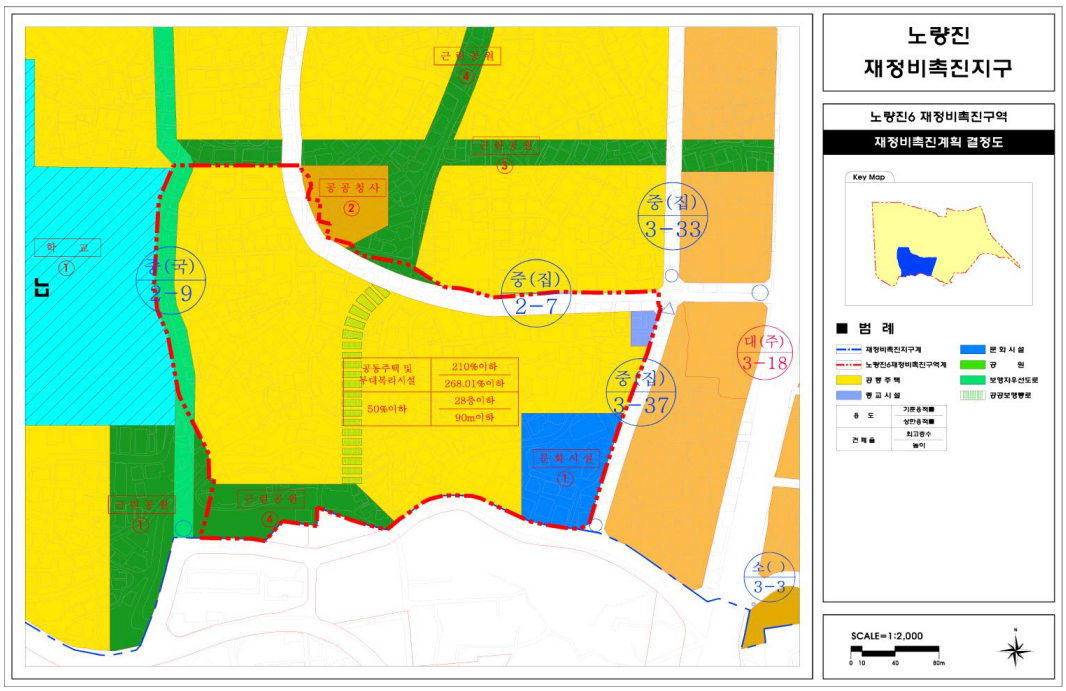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695호('90.10.19.)호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226호('93.7.3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86호('17.11.2.)로 변경 결정된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고덕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3,4번 출입구, 환기구 등 철도시설 이설 및 신설을 위하여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본선)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	47,400	-	건설부고시 제695호 (90.10.19)	• 환기구이설 (1개소,496㎡) • 종점명칭변경
변경	-	철도	도시철도(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강일동 579일대	-	47,400	-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본선)	○ 환기구 이설(1개소, 496㎡) ○ 종점 명칭 변경 (하일동→강일동)	○ 기존 환기구(1개소)를 이설 후 본선에 포함 (5358번 환기구) ○ 행정구역 (동)명칭 변경(2007.1.1.)에 따른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5호선 상일동역 정거장)	강동구 고덕동 주공2단지일대(상일동역)	24~42	329	8,060	건설부 고시 제695호 (90.10.19)	○ 증)1,510㎡ - 3, 4번 출입구 및 환기구(3개소) 이설 - 3-1, 4-1번 출입구 신설
변경	-	철도	도시철도(5호선 상일동역 정거장)	강동구 상일동 146일대	24~58	329	9,570		

○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정거장)	○ 정거장 면적변경 -면적:8,060㎡→9,570㎡ (증 1,510㎡) ○ 정거장 위치를 실제 지번으로 정정	○ 고덕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3,4번 출입구 및 환기구(3개소) 이설, 3-1, 4-1번 출입구 신설 면적 반영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 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	철도	강동구 상일동 121 일대	길이	-	증) 71.26m	71.26m	-	• 증) 112㎡ -3(3-1)번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폭	-	증) 0.84~3.85m	0.84~3.85m		
				높이(해수면기준)	-	증) 8.91~26.62m	8.91~26.62m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철도(정거장)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신설 - 면적 : 112㎡	• 3(3-1)번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일부가 고덕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설치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입체적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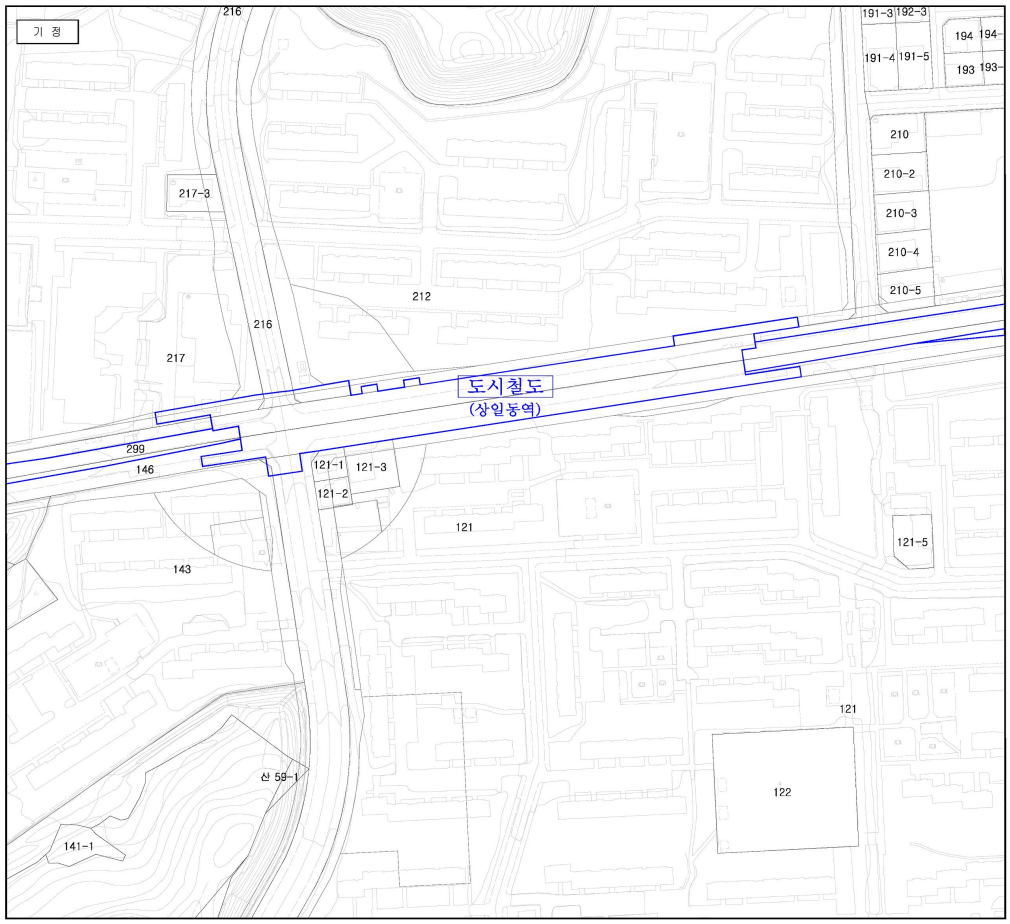
라.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3)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2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기정)



범 례

도시계획시설(기정)

N

SCALE : 1/1,500

0 10 30 50

■ 도시계획시설(철도:본선) 변경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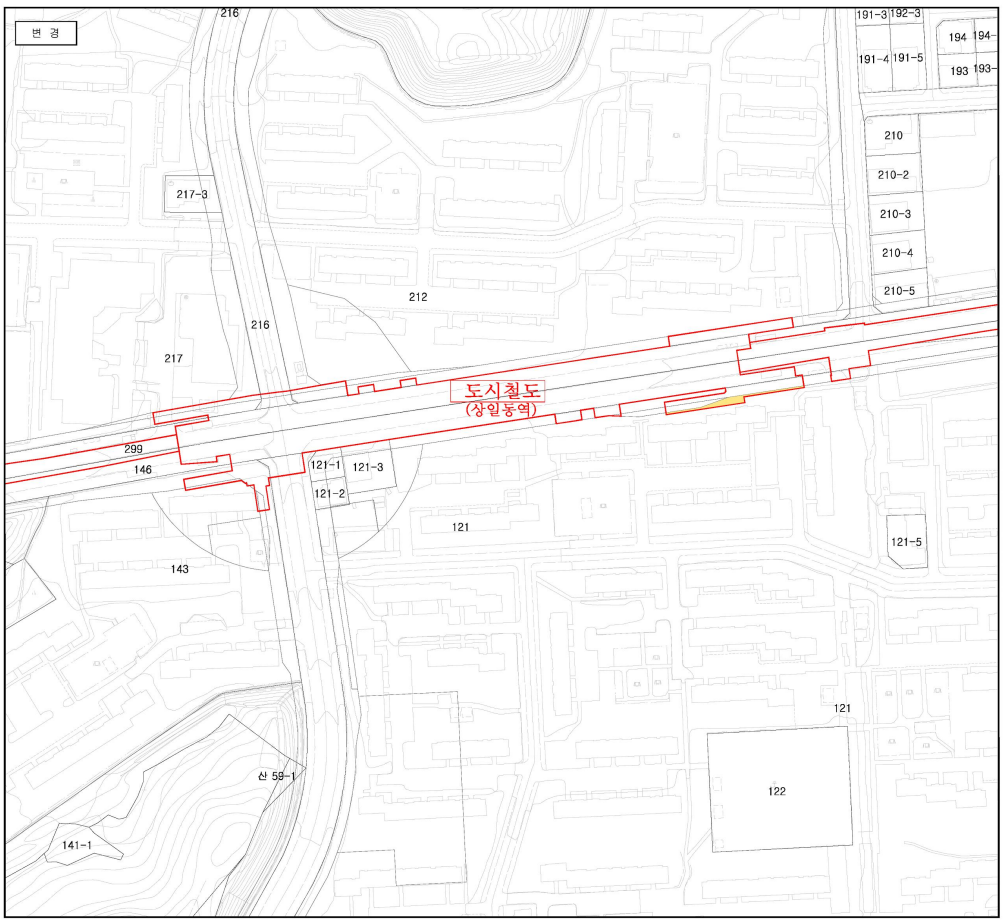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명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	47,400m	-	건설부고시 제1990-655호 (1990.10.19)	●환기구 8개소(3,696㎡) ●중랑천횡 변경
변경	-	철도	도시철도 (명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강일동 57일대	-	47,400m	-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동구 고덕동 2단지 앞 대 (상일동역)	24 ~42	329	8,060	건설부고시 제1990-655호 (1990.10.19)	●증1,510㎡ -3번 환승구 및 환기구(계산) 이설 - 3-1,4-1번 출입구신설
변경	-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동구 상일동 146 일대	24 ~58	329	9,570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직성지	1차 확인지	2차 확인지	1차 확인지	2차 확인지
소 속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직 위	주무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주무관	기반시설 계획팀장
직 명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이 주 연	이 선 형	우 진 택	김 성 길	백 운 경
확인인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범 례

- 도시계획시설(변경)
- 도시계획시설(입체적결정)

N

SCALE : 1/1,500

0 10 30 50

■ 도시계획시설(철도:본선) 변경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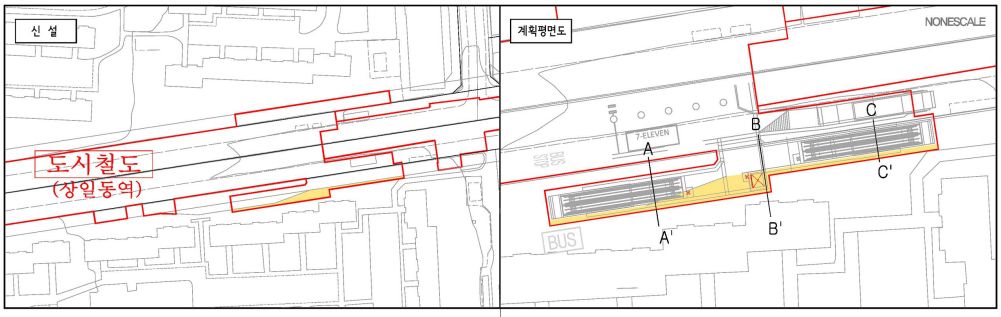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	47,400m	-	건설부고시 제1990-695호 (1990.10.19)	●환기구 6설 (1개소,496㎡) ●종점명칭 변경
변경	-	철도	도시철도(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0일대	강동구 강일동 579일대	-	47,400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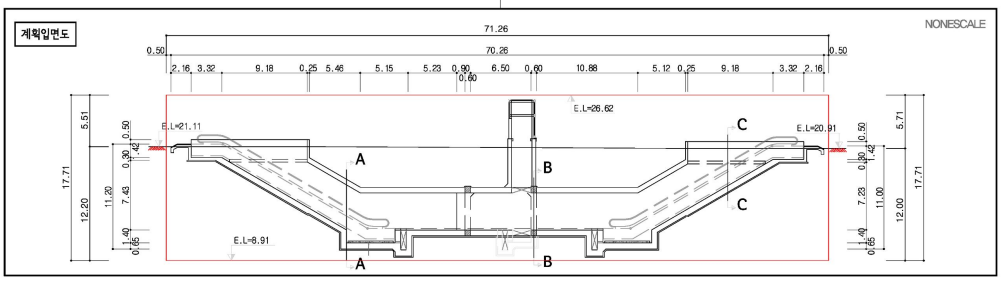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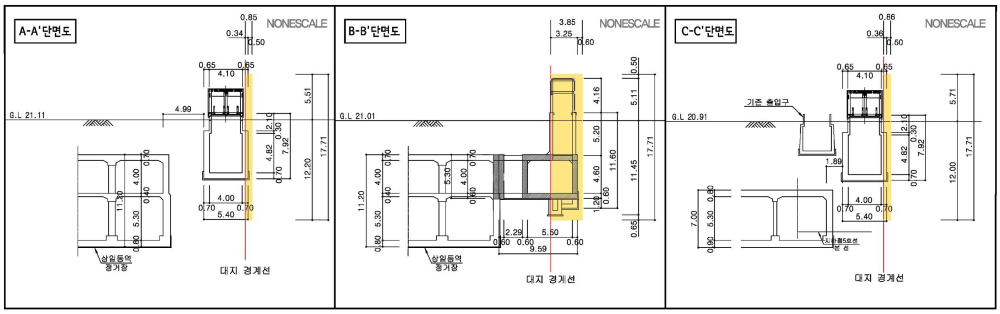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m)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5호선)	강동구 고덕동 2단지 옆대 (상일동역)	24 ~42	329	8,060	건설부고시 제1990-695호 (1990.10.19)	●증) 1,510㎡ - 3번 출입구 및 환기구(계수) 이설 - 3-1,4-1번 출입구신설
변경	-	철도	도시철도(5호선)	강동구 상일동 146 일대	24 ~58	329	9,570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직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직 위	주무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주무관	기반시설 계획팀장
직 명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이 주 연	이 선 형	우 진 택	김 성 길	백 운 경
확인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및 지형도면(신설)







범 례

- 도시계획시설(변경)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 A=112㎡)

N

SCALE : 1/1,500

0 10 30 5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점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철도	강동구 상일동 121일대	길이	-	증)71.26m	71.26m	-	• 증)112㎡ - 3번 출입구이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폭	-	증) 0.84m~ 3.85m	0.84m ~ 3.85m		
				높이	-	증) 8.91m~ 26.62m	8.91m ~ 26.62m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직 위	주무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주무관	기반시설 계획팀장
직 명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이 주 연	이 선 형	우 진 택	김 성 길	백 운 경
확인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8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0호(2018.12.27)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차량기지)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자 : 김 성 연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처
   ○ 도심접근성 증대로 지역개발촉진 및 1, 2, 4~7호선,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차량기지 부지면적 20,192.8㎡
   ○ 총사업비 : 9,894.8억원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10.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변경없음)

11.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7) 및 동북선경전철 주식회사(☎ 02-966-8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일시사용, 변경)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시 까지

연번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내용	비고
					공 부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6,040.2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958.6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5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497.1	노원구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154.9	노원구					

사용할 토지의 지장물조서(일시사용,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8	건물	컨테이너	29㎡	주식회사 두양 엔지니어링 외 1인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가로등	H 8m 철재	10식						
				우수맨홀	∅600	2EA						
				신호등	H 8m 철재	8식						
				옹벽	H1.2m 콘크리트	44.4m						
				옹벽	H1.2m 콘크리트	17.0m						
				옹벽	H1.2m 콘크리트	16.9m						
				옹벽	H1.2m 콘크리트	2.2m						
				옹벽	H3.0m 콘크리트	37.4m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8	건물	컨테이너	29㎡	주식회사두양 엔지니어링 외 1인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가로등	H 8m 철재	1식						
				옹벽	H1.2m 콘크리트	10.2m						
				옹벽	H3.0m 콘크리트	6.5m						
5	당초	노원구 중계동	369-11	담장	H1.9m 벽돌	14.9m	노원구					
	변경	노원구 중계동	369-11	담장	H1.9m 벽돌	9.7m	노원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9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를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기준점 명칭 및 번호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설치일 (측량일)	표지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지적삼각점 서울326	중부	X	441439.71	205.34	경도	37° 28′ 20.394″	1984.9.30.	표석	서초구 우면동 산33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멸실
		Y	201403.80		위도	127° 00′ 57.761″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36호(2010.9.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고시 제2018-308호(2018.09.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동대문구 용두 · 전농동 일대	370,787.7	감) 13.4	370,774.3	최초지정일: 2009.09.10 (서고 제2009-345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년도 : 2022년 (당초 2018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70,787.7	감) 13.4	370,774.3	
촉진지구	소계			147,951.9	감) 13.4	147,938.5	
	도시환경정비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1,819.2	-	1,819.2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	1,938.3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5.0	감) 13.4	7,011.6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47일대	41,602.5	-	41,602.5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706.5	-	51,706.5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494일대	27,623.4	-	27,623.4	
	주택재개발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개별건축	소계		222,835.8	-	222,835.8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222,835.8	-	222,835.8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없음.

6.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11-1일대	7,025.0	감) 13.4	7,011.6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 구역면적 변경 (구역계 변경 없음) (7,025.0㎡ → 7,011.6㎡)	·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25.0	감) 13.4	7,011.6	100.0	-
주거지역	소 계	1,963.8	감) 13.4	1,950.4	27.8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3.8	감) 13.4	1,950.4	27.8	-
상업지역	소 계	5,061.2	-	5,061.2	72.2	-
	일반상업지역	5,061.2	-	5,061.2	72.2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용두동 11-1일대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1,963.8㎡ → 1,950.4㎡)	·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25.0	감) 13.4	7,011.6	100.0	
획 지	소 계	3,891.0	-	3,891.0	55.5	
	업무,판매,주거복합용지	3,891.0	-	3,891.0	55.5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134.0	감) 13.4	3,120.6	44.5	
	도 로	2,233.4	감) 18.3	2,215.1	31.6	
	공 원	900.6	증) 4.9	905.5	12.9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용두동 11-1일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로 면적변경 2,233.4㎡ → 2,215.1㎡ - 공원 면적변경 900.6㎡ → 905.5㎡	·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대로	3	130	25~47	보조 간선	2,100 (8)	오스카 극장동측	전농동 광장	일반 도로	-	-	조서누락 추가
기정	중로	2	379	15	집산 도로	92 (88)	용두동 9-7	용두동 47-7	일반	-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기정	중로	2	503	15	집산 도로	150 (103)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	서고 제2000-23호 (2000.2.9)	
기정	중로	2	492	18 (8)	집산 도로	112	용두동 9-2	용두동 11-24	일반	-	서고 제1996-359호 (1996.12.31)	

※ ( )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㉛	공원	어린이공원	용두동 9-11일원	1,581.5	증) 5.7	1,587.2	서고제359호 ('96.12.31)	구역내 905.5㎡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㉛	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1,581.5㎡→1,587.2㎡, 구역내 편입면적 : 905.5㎡)	·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기존건축물 없음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청량리3 재정비 촉진구역	7,025.0	택지	3,891.0	동대문구 용두동 11-1일대	업무, 판매, 주거	60 이하	1,000 이하	150이하
변경	청량리3 재정비 촉진구역	7,011.6	복합 용지	3,891.0	동대문구 용두동 11-1일대	업무, 판매, 주거	60 이하	1,000 이하	150이하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 중로2-379호선변 : 3m – 중로2-503호선변 : 3m – 중로2-492호선변 : 3m · 공공(입체)보행통로 – 중로2-503호선과 제31호공원을 연결하는 공공(입체)보행통로 조성						

(3)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계획

▌공공시설 부담률 : {(3,120.6-2,326.2-6.7=787.7)/7,011.6}×100 = 11.23%

구분	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촉진구역 총면적(㎡)	순부담률 (%)
기정	3,134.0	2,337.7	6.1	7,025.0	11.27
변경	3,120.6	2,326.2	6.7	7,011.6	11.23

※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4) 용적률계획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획지면적(㎡)		용적률 적용기준(%)	비 고
	기정	변경		
계	3,891	3,891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3,891	3,891	800	

▌상한용적률

구 분	산정내용	비고
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α)} = 800% × (1+1.3 × 0.203) = 1,011.12% ≒ 1,000%이하 ※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3,134.0 - (2,337.7 + 6.1)} / 3,891.0 = 0.203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변 경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α)} = 800% × (1+1.3 × 0.202) = 1,010.08% ≒ 1,000%이하 ※ α값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3,120.6 - (2,326.2 + 6.7)} / 3,891.0 = 0.202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아.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주택연면적 비 율	-	65%이하
장기전세 주택공급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용도용적제 배제에 따라 증가되는 주택용도 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용적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용적률)×주거비율 × 25%이상 = (800%-600%) × 65% × 25% = 32.5%이상 ·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 : 3,891㎡ * 32.5% = 1,264.58㎡이상 확보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1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9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4세대
	변경	· 용도용적제 배제에 따라 증가되는 주택용도 용적률의 2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용적률-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용적률)×주거비율 × 25%이상 = (800%-600%) × 65% × 25% = 32.5%이상 ·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준 : 3,891㎡ * 32.5% = 1,264.58㎡이상 확보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1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7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6세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 전체연면적의 5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포함 전체세대수 220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0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88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2세대
	변경	· 주택 전체연면적의 5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설 · 규모별 건설비율(시프트 포함 전체세대수 220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0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186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4세대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이하		85㎡초과	합계
	60㎡이하	60~85㎡		
세대수(장기전세주택)	30 (9)	188 (4)	2	220 (13)
비 율	30 (7)	186 (6)	4	220 (13)

※ ( )는 장기전세주택(SHIFT) 세대수임

자.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 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환경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재난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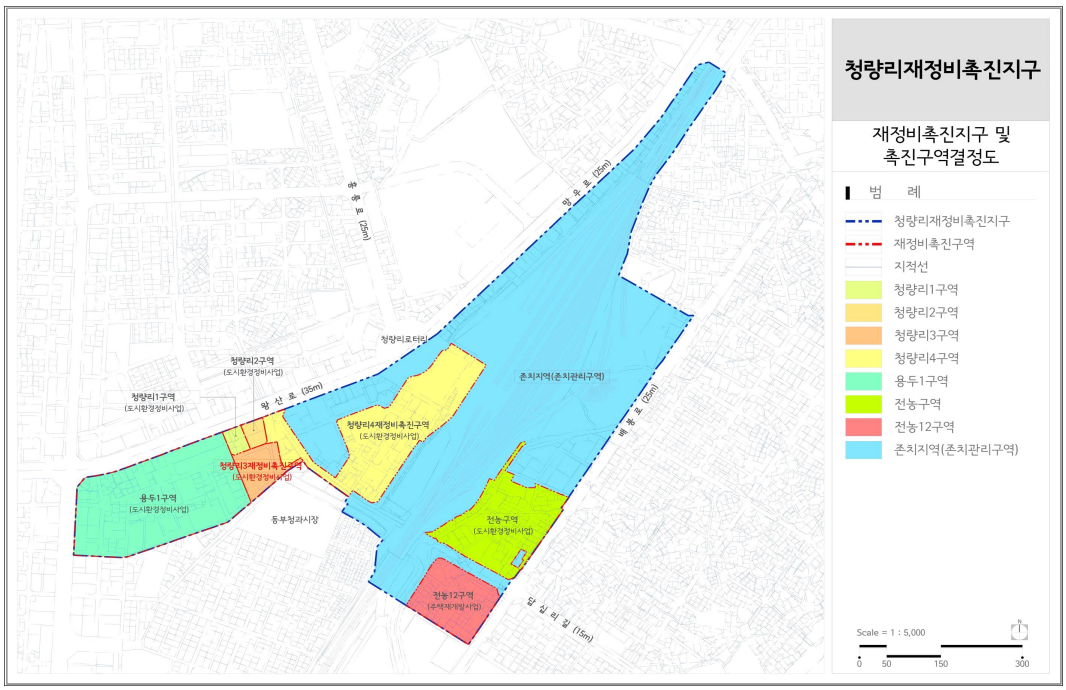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후 4년이내	토지등소유자	220세대	해당사항없음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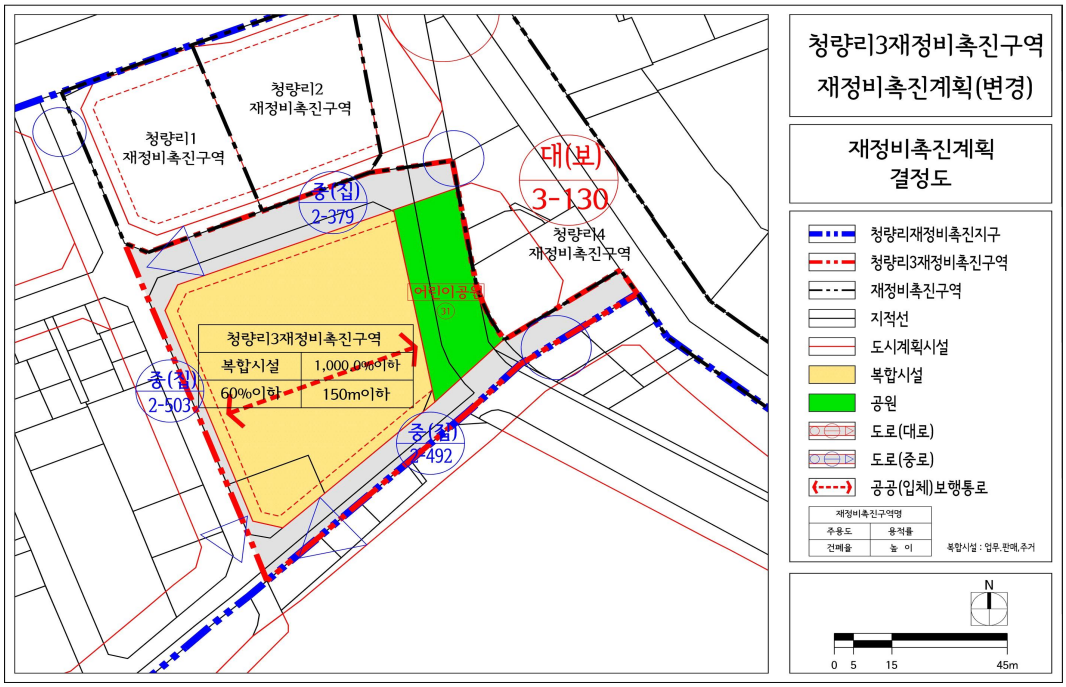
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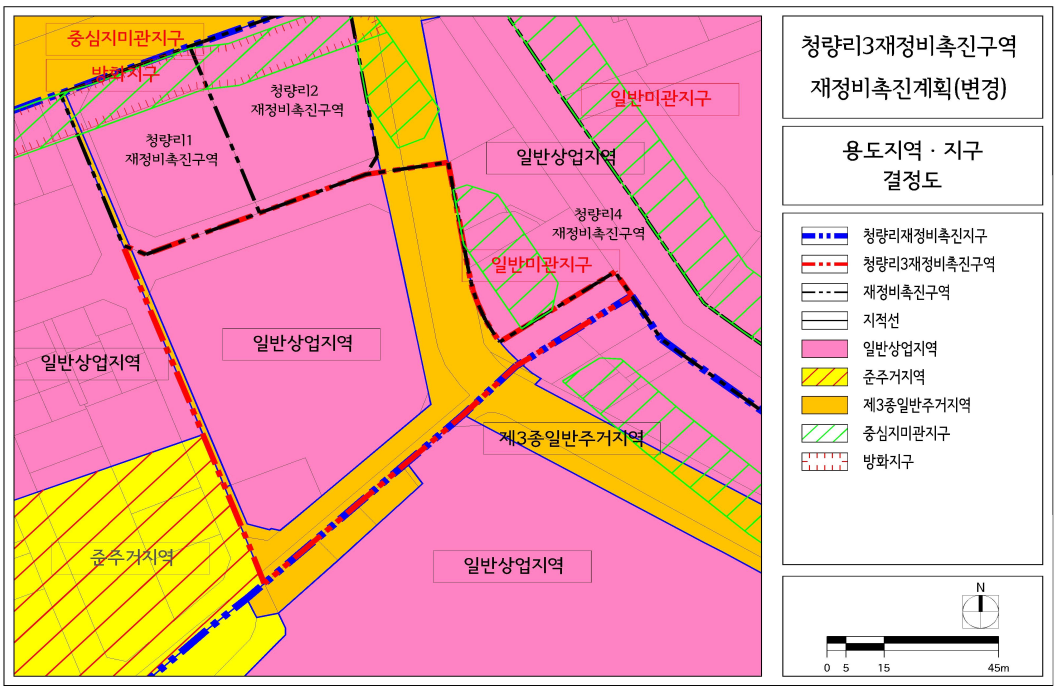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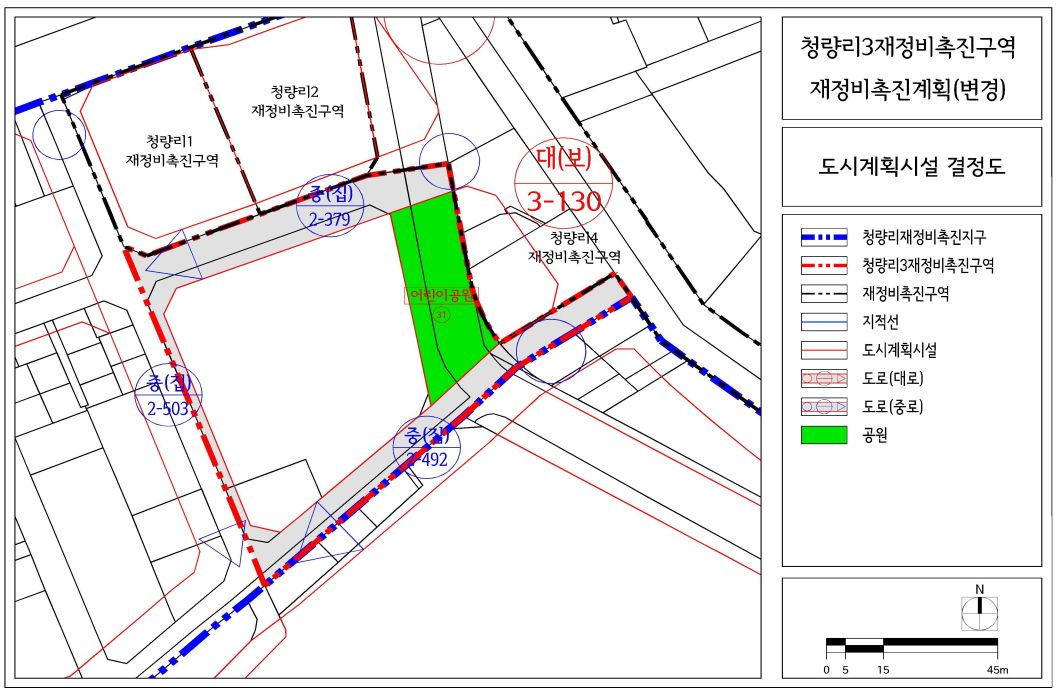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15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등기우편 발송결과 등기반송·영업소재지 이사·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3. 21.(목) ~ 2019. 4. 3.(수)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5">대표 김진수 [두이전기통신 주식회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9, 8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등록사항(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개별기준 나목 3차
- 예방과-17232(2018.11.0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결과보고”</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강동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전시봉</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td><td>전화
번호</td><td>02-6981-7692</td></tr>
<tr><td>일 시</td><td colspan="3">2019년 04월 25일(목) 10:00</td><td>장 소</td><td>강동소방서
3층 소회의실</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td></tr>
<tr><td>성명</td><td colspan="4">홍성원</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3차-등록취소)**이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47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19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고내용

○ 이수심사 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호 송절주 등 16개 종목
※ <붙임 1>의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대상 및 일정 참조

○ 일정 및 장소 : <붙임 1>의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대상 및 일정 참조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2>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3. 22(금) ~ 3. 29(금)

○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 <붙임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나.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주 소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연락처 : 전화(02-2133-2616), 전자우편(youngmoons@seoul.go.kr)

[붙임 1]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대상 및 일정 등

연번	종목명(인원수)	신청자	이수심사 시기	이수심사 장소	비고
1	2호 송절주(1명)	박0정	5월	공방 또는 전수교육관	기능(개인)
2	제5호 필장(1명)	정0영	10월	전수교육관	기능(개인)
3	제13호 매듭장(2명)	노0희	보유자와 재협의	미정	기능(개인)
4		문0원			
5		이0행			
6	제21호 휘몰이잡가(3명)	이0민	5월	휘몰이잡가 전수관 또는 전문공연장	예능(개인)
7		김0기			
8		박0란			
9	22호 마들농요(2명)	김0식	보유자와 재협의	전문공연장	
10		김0자			
11	제24호 초적(2명)	문0돈	6.23	전문공연장	예능(개인)
12		김0태			
13	제25호 판소리고법(송원조)(3명)	정0자	4.14	전문공연장	예능(개인)
14		전0대			
15		황0남			
16	판소리고법(정화영)(6명)	김0호	4.13	전문 공연장	예능(개인)
17		김0덕			
18		박0순			
19		윤0식			
20		정0리			
21		한0석			
22	제33호 행당동애기씨당굿	김0준	보유자와 재협의	전문공연장	
23	제39호 아쟁산조(9명)	고0형	6.15	전문 공연장	예능(개인)
24		김0민			
25		김0나			
26		박0경			
27		박0성			
28		손0빈			
29		유0현			

연번	종목명(인원수)	신청자	이수심사 시기	이수심사 장소	비고
30	제39호 아쟁산조(9명)	윤0림	6.15	전문 공연장	예능(개인)
31		한0아			
32	제40호 수표다리밟기 (9명)	이0순(소리)	8월 말경 (보유자와 재협의)	전문 공연장 또는 수표다리밟기 전수관	예능(단체)
33		김0미(소리)			
34		이0헌(소리)			
35		김0옥(소리)			
36		김0순(소리)			
37		김0영(소리)			
38		오0숙(소리)			
39		강0애(소리)			
40		김0선(소리)			
41	제41호 송서율창 (13명)	김0미	6. 1	전문공연장 또는 보존회연습실	예능(개인)
42		김0자			
43		마0희			
44		박0경			
45		송0석			
46		신0숙			
47		윤0숙			
48		윤0만			
49		윤0기			
50		이0완			
51		조0식			
52		지0구			
53		최0규			
54	제45호 한량무 (8명)	강0숙(색시)	5.25	남산국악당	예능(단체)
55		김0열(한량)			
56		김0자(색시)			
57		김0영(색시)			
58		박0경(색시)			
59		박0욱(한량)			
60		박0순(한량)			
61		안0환(한량)			

연번	종목명(인원수)		신청자	이수심사 시기	이수심사 장소	비고
62	제46호 살풀이춤(4명)		김0희	5.18	남산국악당	예능(개인)
63			유0라			
64			이0진			
65			장0순			
66	제44호 삼현육각	피리(6명)	곽0헌(피리)	7월 경 (보유자와 재협의)	전문 공연장	예능(개인)
67			김0진(피리)			
68			연0관(피리)			
69			오0미(피리)			
70			이0희(피리)			
71			조0현(피리)			
72		대금(5명)	남0연(대금)			
73			신0민(대금)			
74			신0민(대금)			
75			정0희(대금)			
76			최0희(대금)			
77		(해금 11명)	김0식(해금)			
78			김0영(해금)			
79			김0경(해금)			
80			박0정(해금)			
81			박0아(해금)			
82			백0연(해금)			
83			이0민(해금)			
84			임0하(해금)			
85			한0지(해금)			
86			홍0희(해금)			
87			황0애(해금)			
추1	제28호 악기장(2명)		김0웅	보유자와 재협의	전수교육관	기능(개인)
추2			김0철			
추3			이0규			

※ 향후 심사일정과 장소 등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심사일 7일전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 구성	4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6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 구성	4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3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 배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 실연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과제 등은 2019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수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예정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분야별)

1. 음악 분야

(1)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기능력	창법, 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 연주법의 전통성은?	30점
		가락, 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15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 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15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40점

(2)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15점
		가락·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0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5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무용 분야

(1)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3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20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1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40점

(2)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10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	1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3. 대규모 놀이 분야(단체)

(1) 놀이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놀이 구성에 맞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제작 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4. 의례 분야(단체)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15점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15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도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5. 연극 분야(단체)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1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점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탈·소도구 등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3) 악기 연주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주법의 전통성	○ 연주법의 전통성	10점
		장단의 정확도	○ 장단의 정확도	10점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10점
	단체협연 능 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6. 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음식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제작 과정의 적합성 정도	20점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	10점
		조리 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10점
		음식의 특수성	○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	2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8. 공예기술(개인)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 ○ 공정의 적정성 정도	30점
		기술의 숙련도	○ 공정의 능숙도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목이해도	해동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붙임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대학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1의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 부 서 류
ㅇ 신청자 이력서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접 수	→	신청인에게 심사 7일 전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5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9-49	(사)린덴바움 (대표:이승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31,613호	o. 음악을 통한 평화 구현, 인권 및 환경보호추구	1,000 (현금및물품)	전국	2019.3.8.~ 2020.3.7 / 2019.3.8.~ 2021.3.7
2019-50	(재)푸르메재단 (대표:강지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o.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 치료비 지원 모금 사업	100 (현금)	전국	2019.3.8.~ 2020.3.7 / 2019.3.8.~ 2021.3.7
2019-51	(사)한국조혈 모세포은행협회 (대표:민우성)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2층	o. 조혈모세모 기증자 예우 및 기증희망자 독려	70 (현금및물품)	전국	2019.3.11.~ 2019.12.31 / 2019.3.11.~ 2019.12.31
2019-52	(사)청년문간 (대표:이문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5지층	o. 청년,아동청소년,취약 계층 어르신 및 가정에 필요한 물품지원	50 (현금및물품)	서울	2019.3.11.~ 2020.3.10 / 2019.3.11.~ 2021.3.10
2019-53	(재)아름다운가게 (대표:홍명희)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회현동2가)	o.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목적사업 지원	990 (현금)	전국	2019.3.11.~ 2020.2.28 / 2019.3.11.~ 2021.2.28
2018-119-1 **(금액증)**	(사)청소년과 가족의좋은친구들 (대표:김태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3층(봉천동,대원빌딩)	o. 경계선 청소년·청년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50 → 60** (현금및물품)	전국	'18.11.20 ~ '19.9.30 / '18.11.20 ~ '20.9.30
2019-20-1 **(목적및사용 분야추가)**	(사)국제청소년 문화교육연맹 (대표:심재환)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313 (대지빌딩)	o. 희망꿈나무 아카데미 **→ 희망과 꿈을 세계로**	1,000 (현금및물품)	전국	'19.1.25 ~ '19.12.31 / '19.1.25 ~ '20.12.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8-50-1 **(사용기간 연장)**	국민대학교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대표;이태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80-27 갤럭시빌라103호	o.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픈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이어가고자 평화의 소녀상 건립	40 (현금및물품)	전국	' 18.3.27 ~ ' 19.3.1 / ' 19.3.27 ~ ' 19.3.1 → **' 19.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52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8.8월~10월)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3.21. ~ 2019. 4. 4.(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독촉 납부기한(2019.3.7.)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2018.8월~10월) 공시송달 대상명단

(단위:원)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미납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과세금액	가산금	체납금액 (가산금포함)	비고
계	1건					54,000					1,340	55,340	
1	000382	59마5071	2018-10-11	7:51	18:00	54,000	이현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폐문부재	54,000	1,340	55,340	19.3.20기준

◈ 서울시공고 제2019-75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80514	(주)드므에프앤디	김철수	강남구 삼성로 150, 113호 (대치동, 한보미도상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2	서울090087	세아건설㈜	하혜자	성북구 동소문로11길 32 (동소문동4가)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3	서울120008	(주)오푸스본	전일성	성동구 상원1길 26, 409호 (성수동1가, 서울숲에이타워)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4	서울120052	(주)효원산업개발	김혜신, 임종하	강남구 선릉로107길 7, 301호 (역삼동, 대명빌딩)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5	서울140014	조일건설산업(주)	하광식	중랑구 동일로144길 23(묵동)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6	서울160001	금강시너지건설(주)	오명진	서초구 양재천로23길 9, 5층 (양재동,율림빌딩)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7	서울160022	(주)덕성에프앤비	김삼범 (등기상:이영근)	성동구 아차산로 168(성수동2가) 등기상)성동구 뚝섬로1길 63, 지하1층3호의1 (성수동1가,영창디지털타워)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8	서울160046	(주)엘림피엠씨	최재용	동대문구 전농로 151, 4층 (전농동)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5조위반	2019.03.11.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 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63호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양수 등록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주식회사 담원문화유산	보존과학협 (04-01-0012)	110111 6988583	김영택, 송정연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82길 89, 2층(고덕동)	02-485-0709	19.03.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7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주식회사 에코비젼21	제147호	2019.3.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75-5, 2층(성수동2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4호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공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건축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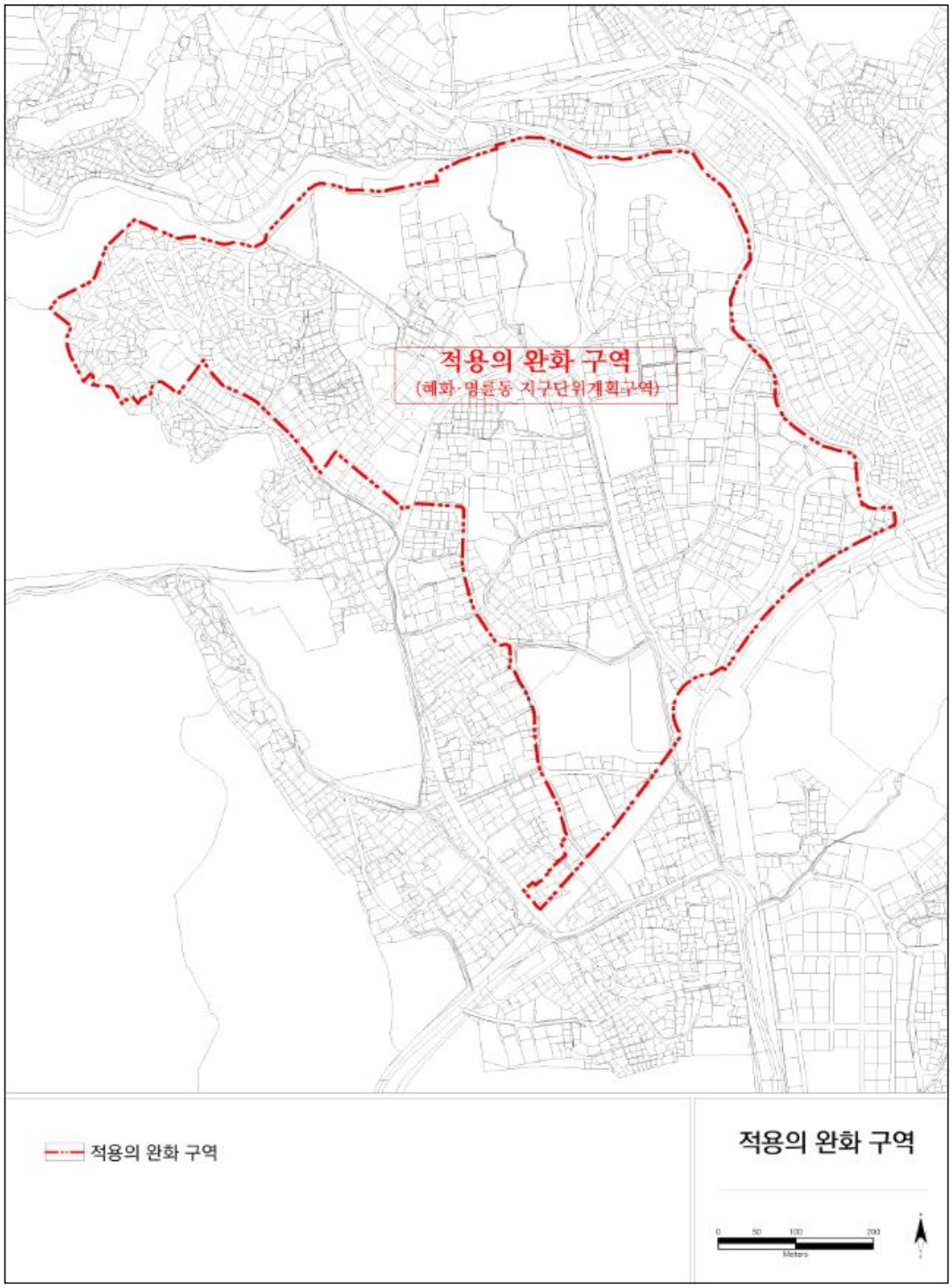
명칭	위치	면적	비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혜화동 일대 (명륜1,2,4가동, 혜화동)	461,242㎡	※ 적용방법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구역 범위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고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6), 종로구 건축과(☎02-2148-2812)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구역도 1부.

붙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9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등록 직인(등록사유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9. 3. 7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X1.8cm		2019. 3. 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96호

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자**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19.3.21.)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 금9,000백만원

3.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5. **융자금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다. 인정범위: 차수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6.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및 신청일정

가. 지원절차

계획공고	지원신청	지원심사	지원결정	결정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자금대여	대출실행
서울시	추진주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나. 신청서류 제출(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한: 2019. 4. 3.(수)(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1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금액 명시)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11. 기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되어야 함
○추진위원회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3호**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23호(2019.2.21.)를 단독(다세대)주택의 지역 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마을●골목길 재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자격 :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분 야	공동 응모	비 고
마을만들기	5인 이내	응모자 1인(팀)이 2점 이내 작품 응모 가능
골목길재생	5인 이내 **※ 응모자 1인 이상이 4.8(월) '골목길재생분야 공모설명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함.**	

2 공모분야 : 대상지 1개소 선택 후 공모 기본방향 및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 제시

분 야	공모 대상지 기준
마을만들기	■ 자유대상지 서울시 내 소재지로 5만㎡ 내외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 지정대상지 ※ 지정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주체의 협의를 통해 제시한 곳으로 가점, 시상배분 등은 사전 논의된 바 없으며, 이는 심사 시 위원회 결정사항임 [참고1] 시·구 사전협의한 지정대상지* 9개소(구역계 조정 가능)
	■ 대상지 제외 - 도시재생활성화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골목길재생	■ 골목길재생지역 13개소 [참고2] 골목길재생사업 선정대상지 13개소

3 공모 기본방향

○ 다양한 사업방식(모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발굴(마을만들기 분야에 해당)
○ 지속가능한 마을●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 서울형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4 공모 반영 사항

분 야	내 용
마을만들기	전면철거 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기존 단독(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아이디어를 발굴 등을 위한 공모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형성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① (필수) 위치도, 도시계획 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작성 ②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 ③ 해당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④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중요) ⑤ (선택)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골목길재생	서울시의 소규모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유형인 골목길재생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상지별 골목길재생의 의미와 골목길재생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추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①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 ② 해당 지역에서의 골목길재생의 의미 ③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골목길 재생 방안(참신성/실효성/효과성 고려) ※ 골목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

5 공모일정

※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에 공지 예정

- 사업설명회 : 2019.03.22.(금) 15:00 ~ 18: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마을만들기 분야)
  2019.04.08.(월) 14:00 ~ 17: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골목길재생 분야)
- 작품접수 : 2019. 8. 22(목) ~ 23.(금) (2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로비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예정) : 2019. 9. ※ 서울시 홈페이지 게제 및 개별통보
- 전시 및 시상(예정) : 2019. 10 ~ 11.

6 공모 제출물

제출물	마을만들기	골목길재생
출품신청서 1부	[서식1] 2점 응모 시 작품별로 각각 제출	
작품설명서[서식2] (ppt 7부 제출)	- 파워포인트 20매(A4) 내외로 작성	
프레젠테이션 판넬 [서식3]	A0 size(841x1,189mm)1매, 5T폼보드 부착 (가로·세로 제한 없음, 사이즈규격 준수)	
CD제출 (usb제출 금지)	작품설명서(ppt파일 첨부, ppt를 pdf변환하여 첨부) 프레젠테이션 판넬 JPEG (300dpi 9933×14043 pixel 정도로 함)	
재(휴)학증명서 각1부	공모기간 중인 `19년 1학기의 응모자격(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가자 전원 해당, `19년 8월 발급받아 제출)	

※ 작품설명서 : 심사 시 배포될 자료로 제본 금지, 규격 준수(A4, 70g~80g), 특수 재질 금지
※ usb : 공공기관 보안상 인식불가

7 제출방법

- 위 공모 제출물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프레젠테이션 판넬, 작품설명서에는 사업대상지 위치 및 작품명을 제외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학교명(학교마크),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를 금함(실격사항)**
- 포장은 작품별 개별 포장하여 제출하되 우편물(등기)의 경우 **응모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인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보내실 곳)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주거환경개선과

8 시상 및 심사 (총 12점, 시상금 41백만원)

구 분	마을만들기			골목길재생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6	2,400만원		6	1,700만원
최우수상	700만원	1	700만원	500만원	1	500만원
우수상	400만원	2	800만원	300만원	2	600만원
장려상	300만원	3	900만원	200만원	3	600만원

※ 시상 및 심사 유의사항

- 추진상황에 따라 시상 조정(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해당자가 없을 수 있음)
-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별도 추진
- 심사에 출품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외국사례 복사 제출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작품은 심사제외 및 수상 취소**

9 일반 유의사항

○ **수상작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과도하게 개념적이거나 활용가치 대비 과도한 공급 비용이 예상되는 아이디어는 지양바랍니다.

○ 반환기한(추후 통보)내 반환하지 않는 작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주관기관인 서울시는 출품물의 반환기간 내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및 공모요강, 참고자료(마을공모전 길라잡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니 응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itybuild.seoul.go.kr)

※ 역대 출품작 및 수상작 열람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부문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Tel 02-2133-7245)

▸골목길재생 부문 :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Tel 02-2133-8626)

※ 자세한 구역계는 홈페이지 참조

[참고1] 마을만들기 부문 지정대상지(9개소, 시·구 협의완료)

연번	공모전 대상지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세부 위치		
1	강북구	우이동	124-12번지 일대	25,000	최고고도지구, 북한산국립공원 인접
2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34,831	불광8주택재개발해제(`14.03.)
3	은평구	구산동	177번지 일대	32,494	구산1재건축정비구역해제(`17.03.)
4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74,500	고척1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13.07)
5	구로구	오류동	20-1번지 일대	78,800	오류2재건축 정비예정구역해제(`13.12)
6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103길 일대	24,000	자연발생취락지구, 골목길재생대상지역
7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	105,733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해제(`15.05.)
8	영등포구	신길동	314-4번지 일대	80,272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해제(`14.07.)
9	관악구	청룡동	1535-10번지 일대	68,720	봉천8-1재건축정비구역해제(`15.11.)

[참고2] 골목길재생 부문 지정대상지(골목길재생지역 13개소)

연번	공모전 대상지			폭(m)	연장(m)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세부 위치				
1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길 일대	0.6~2	800	13,868	
2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 일대	1~4	430	9,248	
3	종로구	운니동 · 익선동	종로 1,2,3,4가동 일대	4~6	1,100	28,000	
4	중구	장충동	2가 69 일원	1~4	782	20,200	
5	성동구	용답동	용답21길 일대	2~8	1,958	33,205	
6	강북구	수유1동	484-21번지 일대	4~7	780	18,800	
7	노원구	월계동	392-103번지 일대	1.5~8	1,740	40,540	
8	서대문구	천연동	독립문로 12길, 12가길, 12나길 일대	6~8	675	4,518	
9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 4길 일대	1~10	1600	17,000	
10	마포구	연남동	동교로 51길 일대	2~6	575	8,200	
11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1~8	900	24,000	
12	영등포구	신길3동	신길로41라길~신길로45길 일대	0~4	420	8,734	
13	강남구	대치동	삼성로 64길 일대	8	220	1,760	

5mm
공 백
(65mm × 35mm)
5mm

[서식1-(1)] 출품신청서_마을만들기 부문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출품 신청서

[마을만들기 부문]

작품명		○○○ ○○○○ ○○○○○○○○		
대상지역 현황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번지 일대 (○○,○○○㎡)		
	지정대상지 여부	자유대상지 □ 지정대상지 □		
	지역,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사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명], 재정비촉진지구 및 기타 정비(예정)구역 [구역명]		
참여자	성 명	학 교 (학과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참여자	홍길동	○○대 (○○학과)	(주소) : (e-mail 주소) :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에 위와 같이 응모 신청합니다.

2019.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첨부물 : 1. [서식2] 작품설명서 7부.
2. [서식3] 프리젠테이션 판넬.
3. CD 1부(작품설명서 ppt, pdf 및 판넬 파일 포함) * usb 제출 금지
4.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1-(2)] 출품신청서_골목길재생 부문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출품 신청서

[골목길재생 부문]

작품명				
내용 요약				
200자 이내				
대상지역	자치구		상세 주소	
참여자	성 명	학교 (학과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참여자	홍길동	○○대 (○○학과)	(주소) : (e-mail 주소) :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에 위와 같이 응모 신청합니다.

2019.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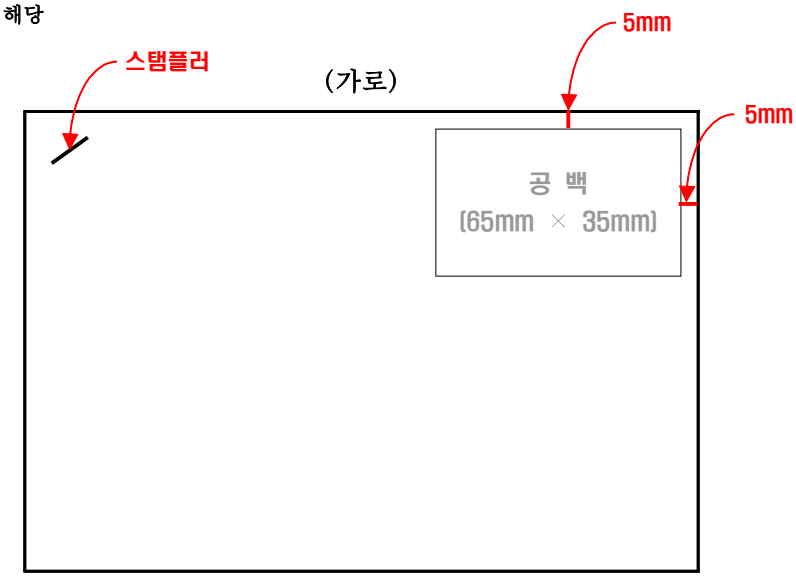
첨부물 : 1. [서식2] 작품설명서 7부.
2. [서식3] 프리젠테이션 판넬.
3. CD 1부(작품설명서 ppt, pdf 및 판넬 파일 포함) * usb 제출 금지
4.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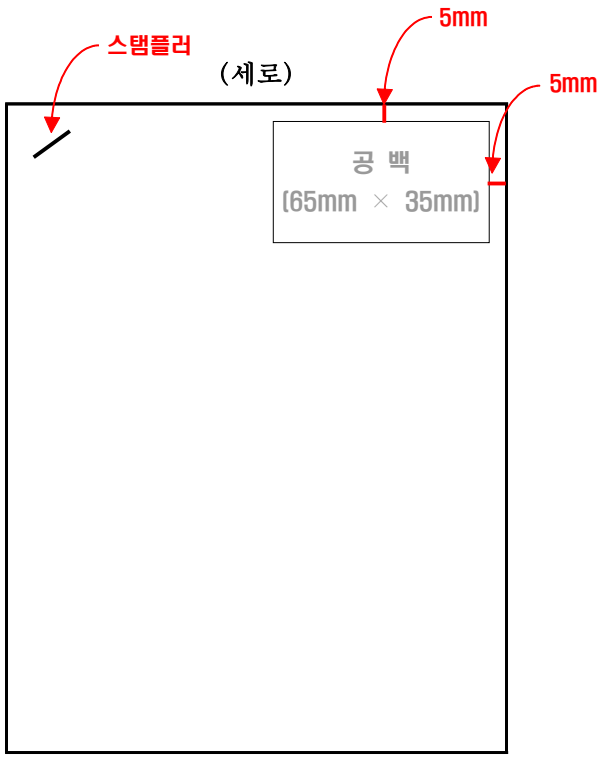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2] 작품설명서(ppt) 7부

※ A4규격, 70~80g, 특수재질 금지,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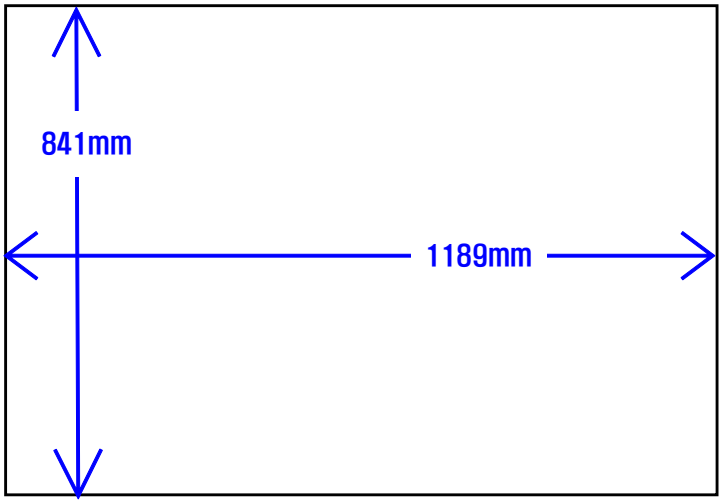
※ 공백은 표지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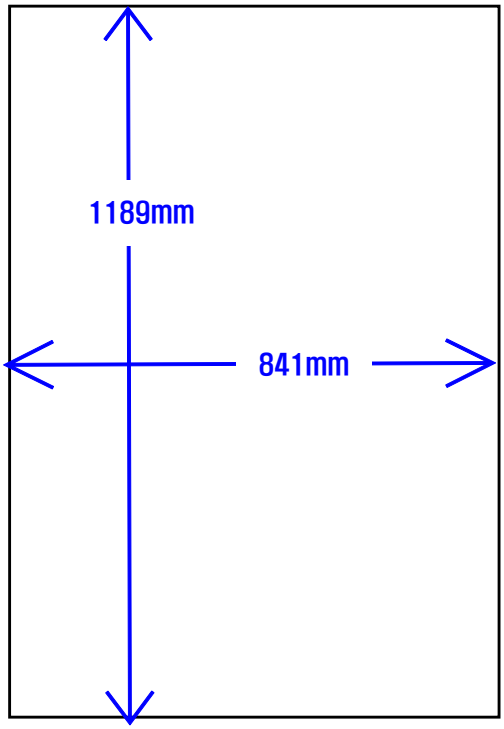


[서식3] 프레젠테이션 판넬 ※ A0규격,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가로)



(세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19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 3. 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5호(2007. 9.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창신동 615-279번지 일대의 낙산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원 명 : 낙산공원(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창신동 615-279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구분		시설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시 설 계		56,700.60	56,010.10	감) 606.8	
기반시설	도 로	29,804.90	29,765.40	증) 44.2	
	광 장	11,718.00	11,261.00	감) 457.0	
조 경 시 설		557.00	1,098.00	증) 541.0	
휴 양 시 설		1,236.00	1,669.00	증) 433.0	
운 동 시 설		5,255.00	4,087.00	감) 1,168.0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주거환경개선과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02-2133-7258)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서울시 창신동 615-279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01,983.0	56,700.60	7.0	1023.34	1394.80	118	199,001.53	56,093.80	7.0	1023.34	1394.80	169	감 606.8
기반시설	소계	41,522.90	41,522.90					41,110.10	41,110.10					
	도로	29,804.90	29,804.90					29,849.10	29,849.10					증 44.2
	광장	11,718.00	11,718.00					11,261.00	11,261.00					감 457
조 경 시 설		557.00	557.00				33	1,098.00	1,098.00				42	증 541
휴 양 시 설		1,236.00	1,236.00	2.00	303.00	303.00	45	1,669.00	1,669.00	2.00	303.00	303.00	87	증 433
운 동 시 설		5,255.00	5,255.00				4	4,087.00	4,087.00				4	감 1,168
교 양 시 설		5,953.60	5,953.60	2.00	182.24	404.85		5,953.60	5,953.60	2.00	182.24	404.85		
편 익 시 설		1,915.10	1,915.10	2.00	284.10	432.95	6	1,915.10	1,915.10	2.00	284.10	432.95	6	
관 리 시 설		261.00	261.00	1.00	254.00	254.00	30	261.00	261.00	1.00	254.00	254.00	30	
녹지 및 기타		145,282.4						142,907.73						감 2,374.67
시설율(법정 40%)		(56,700.6 / 201,983.0) x 100 =28.07%						(56,093.8 / 199,001.53) x 100 =28.19%						
건폐율(법정 10%)		(1023.34 / 201,983.0) x 100 =0.51%						(1023.34 / 199,001.53) x 100 =0.51%						

※ 1.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2019-98)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 반영
2. '낙산공원 내 구 원각사 리모델링' 사업(2017년 제4차 도공위 결정, 현재 지형도면 고시 준비중) 시설면적 변경사항 반영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공작물(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01,983	56,700.6			1,023.3	1,394.8	118			199,001.53	56,093.8			1,023.3	1,394.8	169	
기반시설	소계			41,522.9	41,522.9								41,110.1	41,110.1						
	도로		전지역	29,804.9	29,804.9							전지역	29,849.1	29,849.1						증 44.2
	광장	가	19개소	11,718	11,718						가	18개소	11,261	11,261						감 457
		가-1	동숭 산32임 일원	(1,550)	(1,550)						가-1	동숭 산32임 일원	(1,550)	(1,550)						
		가-2	장신 627-151대	(229)	(229)						가-2	장신 627-151대	(229)	(229)						
		가-3	동숭 50-111도 일원	(4,084)	(4,084)						가-3	동숭 50-111도 일원	(4,084)	(4,084)						
		가-4	창신 611-46대 일원	(1,063)	(1,063)						가-4	창신 611-46대 일원	(1,063)	(1,063)						
		가-5	이화 산1-1임	(721)	(721)						가-5	이화 산1-1임	(683)	(683)						감 38
		가-6	동숭 50-113대 일원	(271)	(271)															감 271
		가-7	산1-11임 일원	(82)	(82)						가-6	산1-11임 일원	(82)	(82)						
		가-8	275-5대 일원	(182)	(182)						가-7	275-5대 일원	(182)	(182)						
		가-9	동숭 산2-10임	(692)	(692)						가-8	동숭 산2-10임	(692)	(692)						
		가-10	동숭 산2-10임	(543)	(543)						가-9	동숭 산2-10임	(543)	(543)						
		가-11	동숭 산32임 일원	(322)	(322)						가-10	동숭 산32임 일원	(322)	(322)						
		가-12	동숭 산2-32임	(97)	(97)						가-11	동숭 산2-32임	(97)	(97)						
		가-13	동숭 산2-40임 일원	(148)	(148)															감 148
		가-14	395-2임 일원	(588)	(588)						가-12	395-2임 일원	(588)	(588)						
		가-15	395-2임 일원	(48)	(48)						가-13	395-2임 일원	(48)	(48)						
		가-16	395-2임 일원	(981)	(981)						가-14	395-2임 일원	(981)	(981)						
		가-17	306-31대 일원	(34)	(34)						가-15	306-31대 일원	(34)	(34)						
		가-18	306-18대 일원	(53)	(53)						가-16	306-18대 일원	(53)	(53)						
		가-19	305-41대 일원	(30)	(30)						가-17	305-41대 일원	(30)	(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공작물(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557	557					33			1,098	1,098					42	증 541
	그늘시렁	①	11개소							16	①	11개소							16	
		①-1	이화 134							(1)	①-1	이화 134							(1)	
		①-2	동숭 50-113대 일원							(1)	①-2	동숭 50-113대 일원							(1)	
		①-3	창신 627-15일원							(1)	①-3	창신 627-15일원							(1)	
		①-4	이화 산1-1임							(1)	①-4	이화 산1-1임							(1)	
		①-5	이화 산1-1임							(1)	①-5	이화 산1-1임							(1)	
		①-6	이화 50-153대							(1)	①-6	이화 50-153대							(1)	
		①-7	동숭 산2-10임							(2)	①-7	동숭 산2-10임							(2)	
		①-8	동숭 산2-32임							(1)	①-8	동숭 산2-32임							(1)	
		①-9	이화 9-314대 일원							(2)	①-9	이화 9-314대 일원							(2)	
		①-10	창신 611-46대							(2)	①-10	창신 611-46대							(2)	
		①-11	창신 23-328대							(2)	①-11	창신 23-328대							(2)	
	정자	②	2개소							2	②	2개소							2	
		②-1	395-2임 일원							(1)	②-1	395-2임 일원							(1)	
		②-2	11-200대 일원							(1)	②-2	11-200대 일원							(1)	
	화계	③	전지역							15	③	전지역							15	
	전망대										④	창신 615-279 일원							1	증 1기
	장식벽										⑤	2개소							8	
											⑤-1	창신 615-279 일원							(1)	증 1기
											⑤-2	이화 9-438 일원							(7)	증 7기
	화단	나	창신 701-4대 일원	45	45						나	창신 701-4대 일원	45	45						
	연못	다	3개소	396	396						다	3개소	396	396						
		다-1	동숭 50-123대 일원	(118)	(118)						다-1	동숭 50-123대 일원	(118)	(118)						
		다-2	308-5임 일원	(50)	(50)						다-2	308-5임 일원	(50)	(50)						
		다-3	305-18대 일원	(228)	(228)						다-3	305-18대 일원	(228)	(228)						
	벽천	라	동숭50-125대 일원	116	116						라	동숭50-125대 일원	116	116						
	전망쉼터										마	창신 615-279 일원	263	263						증 263
	잔디밭										바	이화 9-438 일원	278	278						증 27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공작물(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소계			1,236	1,236			303	303	45			1,669	1,669			303	303	87	증 433	
	노인정	1	2개소	386	386						1	2개소	386	386							
		1-1	308-12임 일원	(210)	(210)	조적근	1층	(210)	(210)		1-1	308-12임 일원	(210)	(210)	조적근	1층	(210)	(210)			
		1-2	이화 9-410대 일원	(176)	(176)	철근 CONC	1층	(93)	(93)		1-2	이화 9-410대 일원	(176)	(176)	철근 CONC	1층	(93)	(93)			
	목재 데크	④	동숭 5-145대 일원	134	134					1	⑥	2개소	144	144					2		
											⑥-1	동숭 5-145대 일원	(134)	(134)					(1)		
											⑥-2	동숭 50-113대 일원	(10)	(10)					(1)	증 10	
	벤치	⑤	전지역			목재				14	⑦	전지역			목재				16	증 2기	
	데크형벤치										⑧	전망쉼터 마 일원			목재					증 5기	
	원형벤치										⑨	잔디밭 바 일원			CONC					증 35기	
	테이블	⑥	전지역			목재				30	⑩	전지역			목재				30		
	쉼터	마	7개소	716	716						사	9개소	1,139	1,139							
		마-1	395-2임 일원	(206)	(206)						사-1	395-2임 일원	(206)	(206)							
		마-2	395-2임 일원	(108)	(108)						사-2	395-2임 일원	(108)	(108)							
		마-3	305-21대 일원	(48)	(48)						사-3	305-21대 일원	(48)	(48)							
		마-4	305-7대 일원	(45)	(45)						사-4	305-7대 일원	(45)	(45)							
		마-5	305-4대 일원	(27)	(27)						사-5	305-4대 일원	(27)	(27)							
		마-6	산1-11임 일원	(25)	(25)						사-6	산1-11임 일원	(25)	(25)							
		마-7	11-200대 일원	(257)	(257)						사-7	11-200대 일원	(257)	(257)							
											사-8	이화 9-436 일대	(385)	(385)						증 385	
											사-9	이화 134	(38)	(38)						증 38	
운동시설	소계			5,255	5,255					4			4,087	4,087					4	감 1,168	
	체력단련시설	⑦	9개소	2,158	2,158					4	⑪	7개소	990	990					4		
		⑦-1	이화 134	(115)	(115)															감 115	
		⑦-2	동숭 50-113대 일원	(1,053)	(1,053)															감 1,053	
		⑦-3	동숭 산 2-32임	(155)	(155)						⑪-1	동숭 산 2-32임	(155)	(155)							
		⑦-4	동숭 50-141대 일원	(434)	(434)						⑪-2	동숭 50-141대 일원	(434)	(434)							
		⑦-5	이화 9-312대 일원	(401)	(401)						⑪-3	이화 9-312대 일원	(401)	(401)							
		⑦-6	395-2임 일원							(1)	⑪-4	395-2임 일원							(1)		
		⑦-7	395-2임 일원							(1)	⑪-5	395-2임 일원							(1)		
		⑦-8	395-2임 일원							(1)	⑪-6	395-2임 일원							(1)		
		⑦-9	395-2임 일원							(1)	⑪-7	395-2임 일원							(1)		
	베드민턴장	바		2,443	2,443						아		2,443	2,443							
		바-1	창신 611-48대 일원	(1,411)	(1,411)						아-1	창신 611-48대 일원	(1,411)	(1,411)							
		바-2	동숭 50-117대 일원	(490)	(490)						아-2	동숭 50-117대 일원	(490)	(490)							
		바-3	이화 9-341대 일원	(542)	(542)						아-3	이화 9-341대 일원	(542)	(542)							
	농구장	사	창신 611-47대 일원	654	654						자	창신 611-47대 일원	654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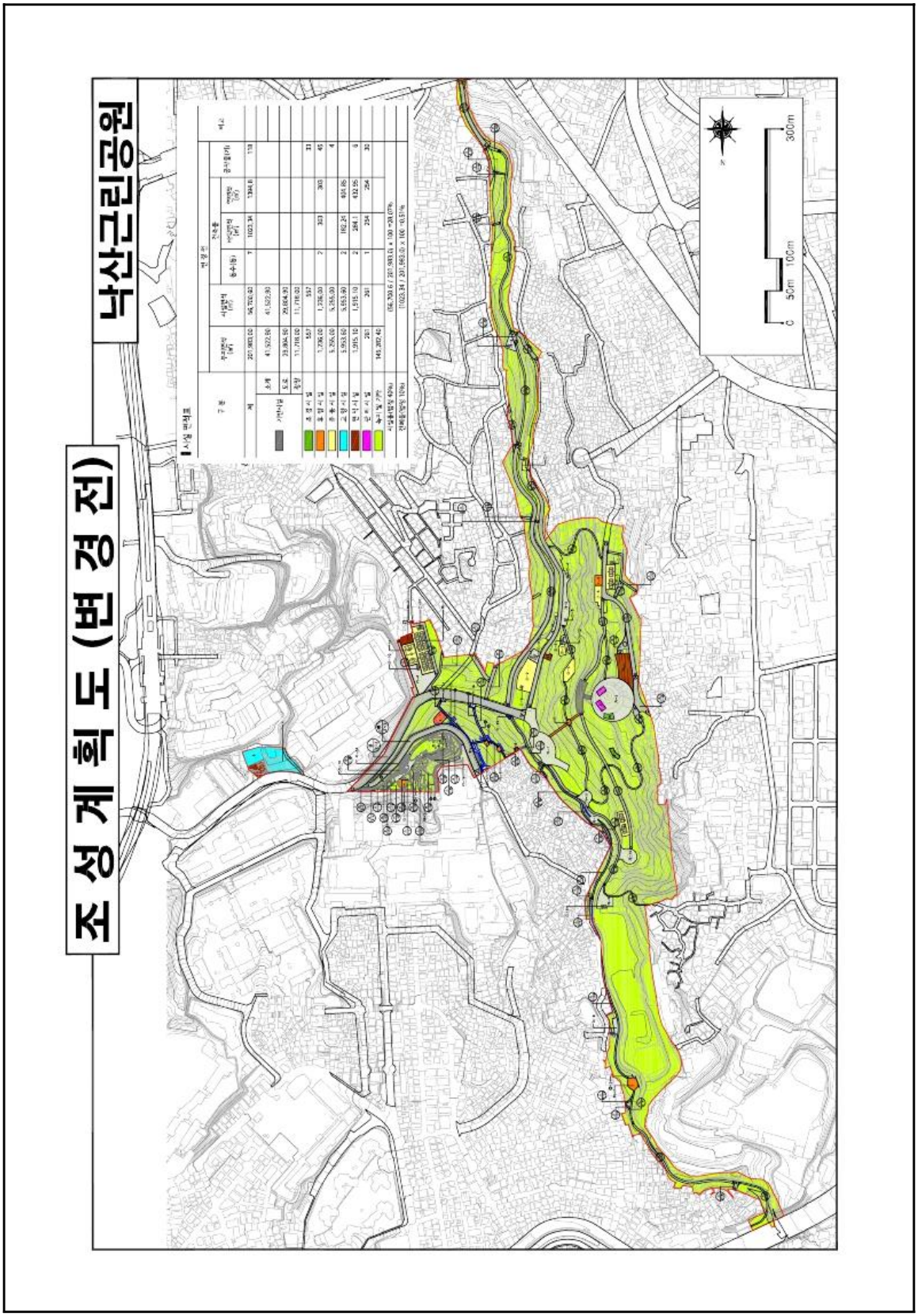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1,915.1	1,915.1			284.1	432.95	6			1,915.1	1,915.1			284.1	433.0	6	
	고정식 화장실	2	동숭 산 2-32임	90	90	조적도	1층	46	46		2	동숭 산 2-32임	90.0	90.0	조적도	1층	46.0	46.0		
	음수전		전지역							5		전지역							5	
	휴지통		전지역							1		전지역							1	
	주차장	아	3개소	1,315	1,315						차	3개소	1,315.0	1,315.0						
		아-1	동숭 50-129대 일원	(1,046)	(1,046)						차-1	동숭 50-129대 일원	(1,046.0)	(1,046.0)						
		아-2	창신 611-47대 일원	(269)	(269)						차-2	창신 611-47대 일원	(269.0)	(269.0)						
	카페	5	창신동 7-26	510.1	510.1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2층	238.1	386.95		5	창신동 7-26	510.1	510.1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2층	238.1	387.0		
관리시설	소계			261	261			254	254	30			261.0	261.0			254.0	254.0	30	
	안내판		전지역							30		전지역							30	
	관리 사무소		동숭 50-111도	261	261	철근 CONC	1층	254	254		3	동숭 50-111도	261.0	261.0	철근 CONC	1층	254.0	254.0		
교양시설	소계			5,953.6	5,953.6			182.2	397.4				5,953.6	5,953.6			182.2	397.4		
	성곽	⑧	전지역	3,762	3,762						⑫	전지역	3,762.0	3,762.0						
	비우당	4	창신 9-471 일원	1,552	1,552	초가	1층	28.8	28.8		4	창신 9-471 일원	1,552.0	1,552.0	초가	1층	28.8	28.8		
	도서관	6	창신동 7-26	639.6	639.6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1층	153.4	376.05		6	창신동 7-26	639.6	639.6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1층	153.4	376.1		
녹지및 기타	소계			145,282.4									142,907.73							
	-		전지역	145,282.4								전지역	142,907.73							감 2,374.67

다.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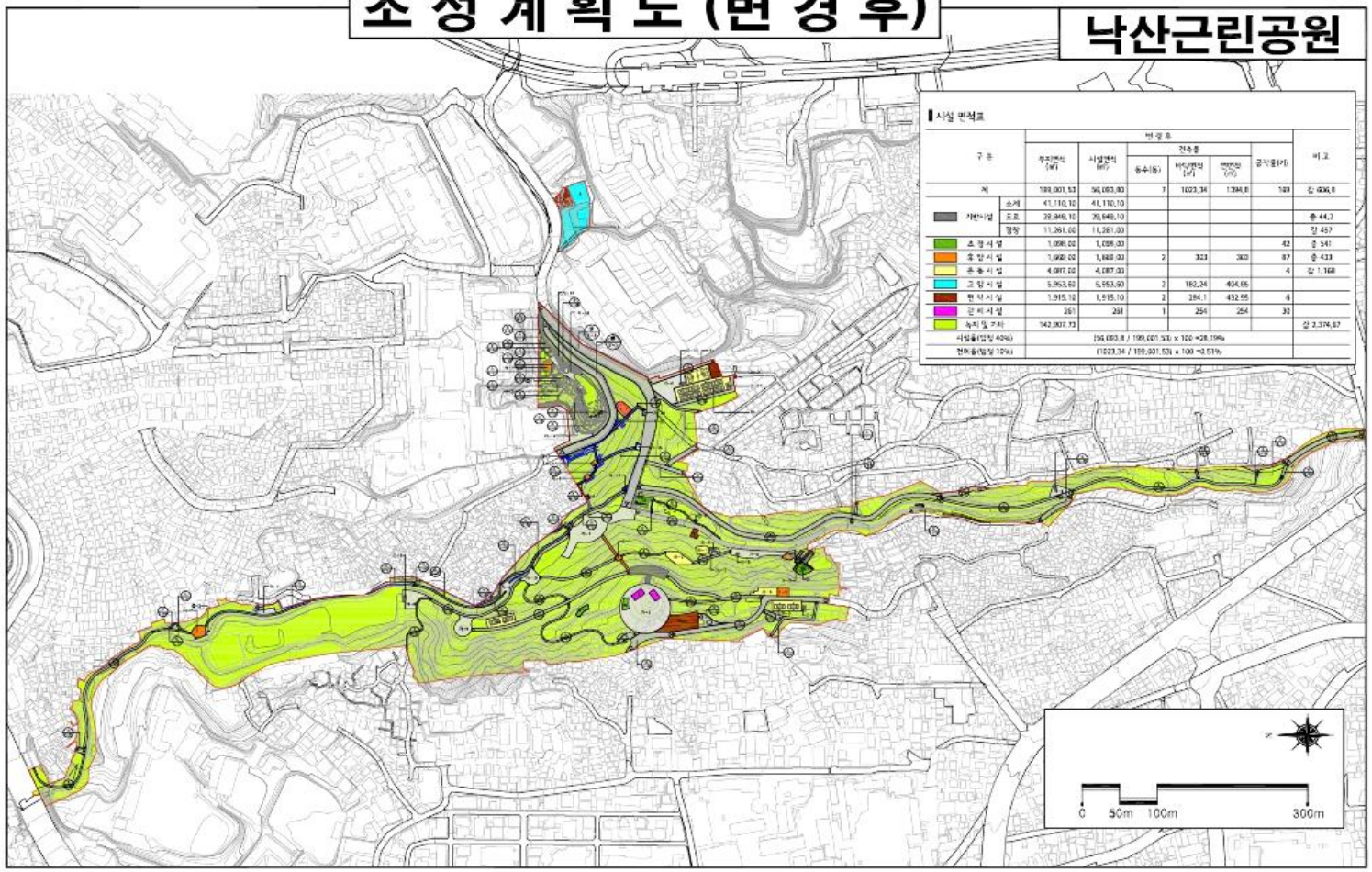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6,234.6)	(29,804.9)				
변경					**6,318.6**	**29,849.1**				**증 44.2**
당초	중로	소 계			616.0	8,634				
당초		2류	1	15	352	5,555	지구내도로	삼선2가 395-5임	광장 가-1	
당초		3류	1	12	264	3,079	지구내도로	삼선1가 308도	삼선2가 산1-1임	
당초		소 계			5,618.6	21,170.9				
변경					**5,702.6**	**21,215.1**				**증 44.2**
당초	소로	3류	1	6	114	784	지구내도로	창신 701-4	창신 668-24	
당초			2	4	55	220	진입로	창신 668-17	창신 660-21	
당초			3	1.5	42	64	산책로	395-4임	소로3-22	
당초			4	3	311	944	산책로	창신 668-62	창신 627-210	
당초			5	1.2	4	4.4	산책로	395-4임	소로3-3	
당초			6	5	56	280	지구내도로	충신 18-91	충신 1-149	
당초			7	6	75	450	진입로	창신 627-87	창신 627-206	
당초			8	6	384	2,304	지구내도로	광장 가-1	이화 9-724	
당초			9	6	442	2,652	지구내도로	창신 627-208	창신 615-209	
당초			10	3	21	63	진입로	창신 626-37	창신 622-78	
당초			11	4	6	24	지구내도로	창신 615-199임	이화 9-728	
당초			12	5	59	295	진입로	창신 615-72	창신 615-50	
당초			13	6	52	312	진입로	창신 611-60	창신 615-55	
당초			14	3	71	213	진입로	창신 611-19	창신 611-45	
당초			15	4	91	354	지구내도로	창신 23-313	창신 611-52	
당초			16	2.5	61.9	149	진입로	광장 가-15	중로 3-1	
당초			17	1.2	10.6	12.8	산책로	395-4임	소로3-22	
당초			18	1.2	10.0	12	산책로	395-3임	소로3-23	
당초			19	1.5	14.0	36.7	산책로	소로3-72	쉼터 사-5	
당초			20	3	96	275	진입로	이화 산1-7임	이화 9-411	
당초			21	6	245	1,681	지구내도로	이화 9-413도	동숭 50-129	
당초			22	1.2	10.0	12	산책로	소로3-3	소로3-2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류	23	1.5	26.3	37.5	산책로	소로3-17	광장 가-12	
당초			24	1.5	9.8	17.3	산책로	광장 가-13	소로 3-23	
당초			25	1.5	8.4	18.7	산책로	광장 가-13	광장 가-12	
당초			26	1.2	13.5	17.3	산책로	광장 가-12	소로3-27	
당초			27	1.2	32.6	43.2	산책로	광장 가-12	395-3임	
당초			28	3.0	47.0	157.3	산책로	광장 가-12	395-3임	
당초			29	1.0	10.0	10.2	산책로	광장 가-12	쉼터 마-2	
당초			30	1.2	19.5	23.5	산책로	광장 가-14	395-2임	
당초			31	1.2	3.0	6.0	진입로	291-16도	소로3-77	
당초			32	3	133	418	지구내도로	동숭 산1-1임	동숭 50-111	
당초			33	1.5	108	162	산책로	광장 가-9	광장 가-7	
당초			34	2	14	32	진입로	창신 94-19도	창신 94-19	
당초			35	4	21	100	산책로	창신 688-13	창신 668-44	
당초			36	3	14	46	진입로	창신 660-222	창신 660-256	
당초			37	6	19	120	산책로	창신 660-4	창신 615-199임	
당초			38	3	163	488	산책로	창신 615-199임	창신 615-199임	
당초			39	4.5	102	457	지구내도로	창신 23-327	창신 611-49	
당초			40	2.0	143.0	298.0	산책로	소로3-72	소로3-79	
당초			41	-	-	-	-	-	-	
폐지			**41**	**2**	**147**	**302**	**산책로**	**이화 9-409도**	**이화 산1-9임**	**공원 제외**
당초			42	5	26	147	산책로	이화 9-308도	이화 9-308도	
당초			43	8	20	214	지구내도로	동숭 50-132	주차장 차-1	
당초			44	2.5	69	180	산책로	동숭 50-111도	광장 가-6	
당초			45	4	136	531	지구내도로	이화 9-408도	광장 가-6	
당초			46	3	63	198	산책로	동숭 산 2-32임	동숭 산 2-39임	
당초			47	2	62	124	산책로	목재데크 ⑥-1	체육시설 ⑨-1	
당초			48	3	108	322	산책로	목재데크 ⑥-1	광장 가-5	
당초			49	2	84	171	산책로	동숭 50-114	동숭 50-111	
당초			50	4	227	925	지구내도로	광장 가-6	광장 가-4	
당초			51	2	179	363	산책로	동숭 산2-30임	동숭 50-14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류	52	6.5	37	222	산책로	광장 가-6	동숭 산2-30임	
당초			53	8	62	672	지구내도로	동숭 129-213	동숭 50-128	
당초			54	4	70	328	지구내도로	광장 가-5	동숭 50-113	
당초			55	1.2	23.0	28.0	산책로	소로3-72	광장 가-7	
당초			56	1.2	48.5	55.0	산책로	광장 가-7	소로3-77	
당초			57	6.5	9	65	진입로	삼선1가 292-5	광장 가-3	
당초			58	2	70	145	진입로	동숭 산2-10임	광장 가-3	
당초			59	3	141	427	진입로	동숭 산1-1임	창신 290-78	
당초			60	2.5	11.0	34.0	산책로	291-16도	소로3-77	
당초			61	3.0	64.0	230.0	산책로	소로3-77	279-8대	
당초			62	2.0	215.0	402.0	산책로	279-1대	쉼터 마-7	
당초			63	2.5	12.0	31.5	산책로	11-152대	소로3-83	
당초			64	2.0	10.0	24.0	산책로	11-152대	소로3-83	
당초			65	2.5	81.0	186.0	진입로	광장 가-16	종로3-2임	
당초			66	1.2	62.0	86.0	산책로	광장 가-12	395-2임	
당초			67	3.5	105.0	351.0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4	
당초			68	1.2	36.0	49.5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5	
당초			69	1.5	20.0	30.0	산책로	쉼터 사-3	쉼터 사-4	
당초			70	1.5	12.5	25.0	산책로	쉼터 사-4	302-14도	
당초			71	2.0	49.0	98.0	산책로	쉼터 사-7	소로3-84	
당초			72	2.0	217.0	558.0	진입로	중로2-1	소로3-77	
당초			73	2.0	25.0	53.0	진입로	소로3-72	301대	
당초			41	-	-	-	-	-	-	
변경			41	**1.5**	**18.0**	**27.0**	**산책로**	**소로3-8**	**전망쉼터 마**	
당초			74	-	-	-	-	-	-	
변경			74	**1.5**	**105.0**	**157.5**	**산책로**	**전망쉼터 마**	**소로3-8**	
당초			75	-	-	-	-	-	-	
변경			75	**1.5**	**108.0**	**161.7**	**산책로**	**충신 1-510**	**이화 9-134**	


조성계획도 (변경 전)
낙산근린공원
N
0 50m 100m 300m

조 성 계 획 도 (변 경 후)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산사업 정비구역 지정'(서고2019-98)에 따른 공원경계 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20호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재생기업(CRC)이란?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관리,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운영, 지역 내 다양한 사업 간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기반 기업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18:00까지
○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선정규모 : 12개 내외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

2.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1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상도4동, 성수, 신촌, 암사, 장위, 난곡·난향동, 묵2동,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송정동, 인수동
중심 시가지형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정동, 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
경제기반형	낙원상가, 서울역, 장안평, 창동·상계, 영등포 경인로

3.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및 지원사항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원사항**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유 형	지원항목	내 용
공 통	공간조성비	- 3년간 최대 2,000만원(1회)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 · 홍보마케팅 · 회계 · 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유 형	추가지원항목	내 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년
	사회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4.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단체의 구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구성되거나, 실질적인 협력 프로세스를 갖춘 3인 이상의 법인이어야 함
    ※ 실질적인 협력 프로세스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고용관련)** 고용 인력의 주민 비율은 자율로 하나, CRC 선정 시 가점 요소임

- 지역성
  - **(구성방식)**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진행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법인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구성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재생과 관련한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함
  - **(설립장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또는 해당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역특성 반영)** 지역의 특성 및 지역재생을 고려한 사업 및 활동을 발굴·기획·실행해야 함
  - **(자원활용)** 지역의 중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함

- 공공성
  - **(지역사회 이익)** 도시재생기업은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함
  - **(의사결정 체계)**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여해야 함

- 수익성·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과 활동을 해야 함
  - **(수익성)** 지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운영구조를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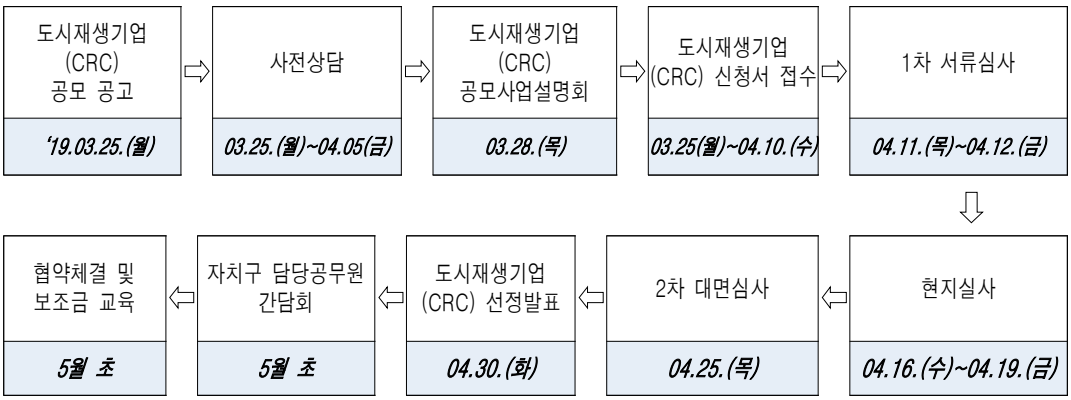
○ 유형 특화 요건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의 경우 도시재생기업(CRC) 필수 요건 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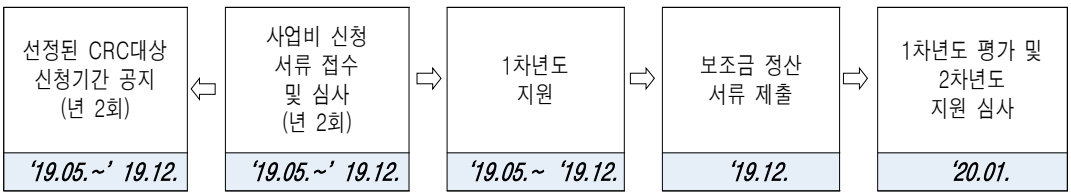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법인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선정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
사업분야	- 주거지 관리 :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 집수리,에너지 등 - 지역자산 운영관리 : 거점시설,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

5. 사업추진절차

○ 선정절차



○ 지원절차



※ 선정발표 후 해당 CRC 대상 사업비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기간 내 매년 심사 및 평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장 지원 확정
※ 공고 기간 내 사전 상담 진행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
※ 상기 일정은 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03.25.(월)~04.10.(수) 09:00~18:00

○ 제출서류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법인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 관련 인·지정서
- 정부 재정지원 현황서(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필요시 사실관계 입증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 용으로 저장하여 직인 날인 후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우편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도시재생기업지원팀)
- 이메일 접수 : **crc@surc.or.kr**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서류 누락 또는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관련문의 및 사전상담 신청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 (02-6929-3283, 3266)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CRC 전문가 자문단 중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2차 대면심사로 최종 선발

❍ 선정발표 : '19.04.30. (예정)

❍ 심사기준

- 서류평가 : CRC 세부요건 충족여부 검토
- 현장실사 : 심층면접 및 사업장 점검
  (사업장 실제 가동여부, 유급근로자 실제 근로여부 확인 등)
- 대면심사 : 도시재생 이해, 지역활성화 목표와 비전, 공공성, 기업역량 등 심층 평가

8.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 +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 (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
공간 및 조성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 (월 12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항목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 자부담 20%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경영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 별·지역 별 멘토링 지원	-
사업 연계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 지원 방법

- 선정된 도시재생기업(CRC)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청기간 내 지원항목별로 신청접수 후 사업비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 ● 신청 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으로 선정된 법인
  - ● 신청 내용 :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공간조성지원비, 인건비
    ※ 인건비지원은 앵커운영을 하는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만 신청가능
  - ● 신청 기간 : 년 2회(선정된 도시재생기업에 개별 공지)
  -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해당 사업 관련 신청서류를 E-mail 또는 우편/방문접수
  -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사업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주관기관에서 기 사업화 지원을 받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유사 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도시재생기업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대표 및 사업담당자 등은 서울시(센터)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6929-3283, 3266), 또는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2133-7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별지 제1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소개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정부 재정지원 현황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사업계획서

【법 인 명 : (대표 :)】

접수번호	접수일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신청서

신청기관명		법인형태	
대표자	성 명 : 전 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 명 : 전 화 : E-mail :
소 재 지			
선 정 유 형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		
사업내용			
업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가사 간병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위와 같이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소개서 4. 법인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별지 제2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사업계획서

【법 인 명 : (대표 :)】

목 차

1	**(지역성)지역 이해 및 해결 과제** 1-1. 지역 특성 분석 (물리적, 인구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과제 및 방법 1-3. 지역 활성화에 대한 비전
2	**(지역중심) 지역자원활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 2-1. 내부의 다양한 주체 구성 및 협력 구조 2-2. 고용 인력 근무 현황 및 주민 고용 증대 계획 2-3. 지역 내 네트워크 및 연계 가능 자원 2-4. 구체적인 지역자원활용 방안
3	**(공공성) 사업 및 조직 운영의 공공성** 3-1. 조직 운영 및 사업·활동 내용에서의 공공성 3-2.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현황 3-3. 공공성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 및 비전 3-4. 수익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
4	**(수익성) 사업(비즈니스) 계획** 4-1. 사업 아이템 및 목표 고객, 시장 분석 4-2.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구조 4-3.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4-4.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4-5. 시장 확대 및 홍보 전략 4-6. 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 자산 활용(안) 4-7. 사업 추진 일정 4-8. 매출/비용 추정 4-9. 자원 조달 및 예산 사용 계획
5	**기대효과** 5-1.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 5-2. 지역 경제 측면에서의 효과

1 (지역성) 지역의 이해 및 해결 과제

1-1. 지역 특성 분석(물리적, 인구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과제 및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과제

- 과제에 대한 기존 방법 분석

- 조직에서 찾은 기회와 과제 해결방법 등

1-3. 지역 활성화에 대한 비전

- 과제 해결 시 지역의 변화 및 비전

2	(지역중심) 지역자원활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

2-1. 내부의 다양한 주체 구성 및 협력 구조

-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대학 등 내부 구성원의 다양성

-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계기, 목적 및 역할

-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량 및 협력 구조, 실 사례

2-2. 고용 인력 근무 현황 및 주민 고용 증대 계획

- 고용 인력 근무 현황(주민 비율, 담당 업무 포함)

- 구체적인 주민 고용 증대 계획

2-3. 지역 내 네트워크 및 연계 가능 자원

- 지역 내 참여하고 있는 협력 네트워크

-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자원

3	(공공성) 사업 및 조직 운영의 공공성

3-1. 조직 운영 및 사업·활동 내용에서의 공공성

- 조직 운영, 사업, 양질의 일자리, 지역 활동 등 공공적인 측면

3-2.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현황

- 회의 등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황

3-3. 공공성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 및 비전

- 조직의 사업·활동 및 운영의 공공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3-4. 수익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

- 지역사회를 위한 수익의 사용처 및 사용계획

- 지역재생을 위한 활동(봉사)등 계획

4 (수익성) 사업(비즈니스) 계획

4-1. 사업 아이템 및 시장 분석
- *사업 아이템(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기존 유사 사업(사례) 및 시장(경쟁업체) 파악*

4-2.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구조
-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가치)은 무엇인가?*
- *목표 고객(고객의 연령대, 성별, 라이프스타일, 욕구 등 구체적으로)은 누구인가?*
-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경로로 고객에게 전달되는가?*
- *고객은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고객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 *수익은 어떠한 방법들로 창출 될 것인가?(매출, 후원금, 정부 지원금 등 구체적으로)*
- *우리가 가진 핵심자원은 무엇인가?(생산장비, 기술, 인적자원 등)*
- *우리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핵심 파트너는 누구인가?(납품업체, 물류·배송업체 등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 *사업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 구조 설명*

4-3.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 *기술 경쟁력(확보 방안), 가격 경쟁력(확보 방안), 생산 원가 및 판매가 등*

4-4.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사업 수행시 효율적인 조직 구성*
- *필요한 역량 및 확보 계획*

4-5. 시장 확대 및 홍보 전략
- *시장 진입 방안 및 확대 계획 설명*
- *판로 개척 및 고객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서술*

4-6. 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 자산 활용(안)
- *주민협의회, 앵커시설, 자치단체 등 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 자산 활용 방안*

4-7. 사업 추진 일정
- *지원 기간 내 세부사업의 추진 일정(가능한 월별로 서술)*

4-8. 매출 / 비용 추정
- *현재 매출(직전 3개월) 및 사업 추진 후 추정 매출*
- *현재 비용(직전 3개월) 및 사업 추진 후 추정 비용*
- *손익분기점 예상 시기*

5 기대효과

5-1.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

5-2. 지역 경제 측면에서의 효과

【별지 제3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법인소개서

법인명					
법인형태					
사업자번호 (법인등기일)					
소재지	본점				
	사업장				
연락처	전화	사무실		이메일	
		핸드폰			
	팩스			홈페이지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다양한 주체 구성 여부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자본금	고정자산		부채	천원	
	유동자산				

【별지 제4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부 재정지원 현황서(3년 이내)

〈수상 경력〉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자	시행기관	아이템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아이디어 부문 대상*	*2014-10-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자 이내*

〈정부재정지원 현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중복수혜여부 판단기준: 서울 도시재생기업 육성 지원 지침)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3년 이내 수상 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대표자(직원)의 인적사항을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기관명, 성명, 직위, 전화번호(H.P), E-mail,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2021년 연말까지 보존 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2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인력), 소재불명, 자료 미제출 등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4. 법적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5. 공고기간: 2019. 3. 21.(목) ~ 4. 4.(목)
6. 청문기간: 2019. 4. 16.(화) ~ 4. 17.(수)
7. 청문장소: 주거정비과 회의실(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4층)
8. 청문주재자: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주무관 김강현
9. 진 술 자: 법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10.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11.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기타 소명자료
12. 등록취소 해당 청문대상 업체

번호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 유	적용법규
1	2006-5	㈜상지도시개발	노중흠	광진구 아차산로73길 11, 2층(광장동)	등록취소	-서류 일체 미제출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	「도정법」제10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2.개별기준 나목
2	2016-1	㈜창조씨엠	허강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309호(가산동, 한라시그마벨리)	등록취소	-서류 일체 미제출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	「도정법」제10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2.개별기준 나목

13.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133-7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선정
[V]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의회공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19-151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혜련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김봉호 (배우자)	유한양행	100	매각	228	2018. 1. 31.	NH투자증권
김봉호 (배우자)	유한양행	110	매각	228	2018. 3. 22.	NH투자증권
김봉호 (배우자)	티슈진	44	매각	53	2018. 1. 5.	NH투자증권
김봉호 (배우자)	신세계푸드	60	매각	159	2018. 4. 26.	NH투자증권
김봉호 (배우자)	LG생활건강	30	매각	1,250	2018. 1. 25.	NH투자증권
김봉호 (배우자)	바텍	1,200	매각	23	2019. 2. 14.	NH투자증권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9-32호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2017.5.18.)로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계동 33-4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Ⅰ. 결정(변경)취지

○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계동 33-43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제어기준	
기정	배치	건축한계선	서계동 33-43	• 생활가로변 및 생활가로변 인접골목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후퇴	
변경				• 생활가로변 도로 폭원 8m이상 확보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1m 후퇴 ※ 자세한 사항은 지침도 참조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계동 33-43	• 건축한계선 변경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1m후퇴	• 현 생활가로 폭원(6~8m) 및 필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생활가로 폭원 8m 이상 확보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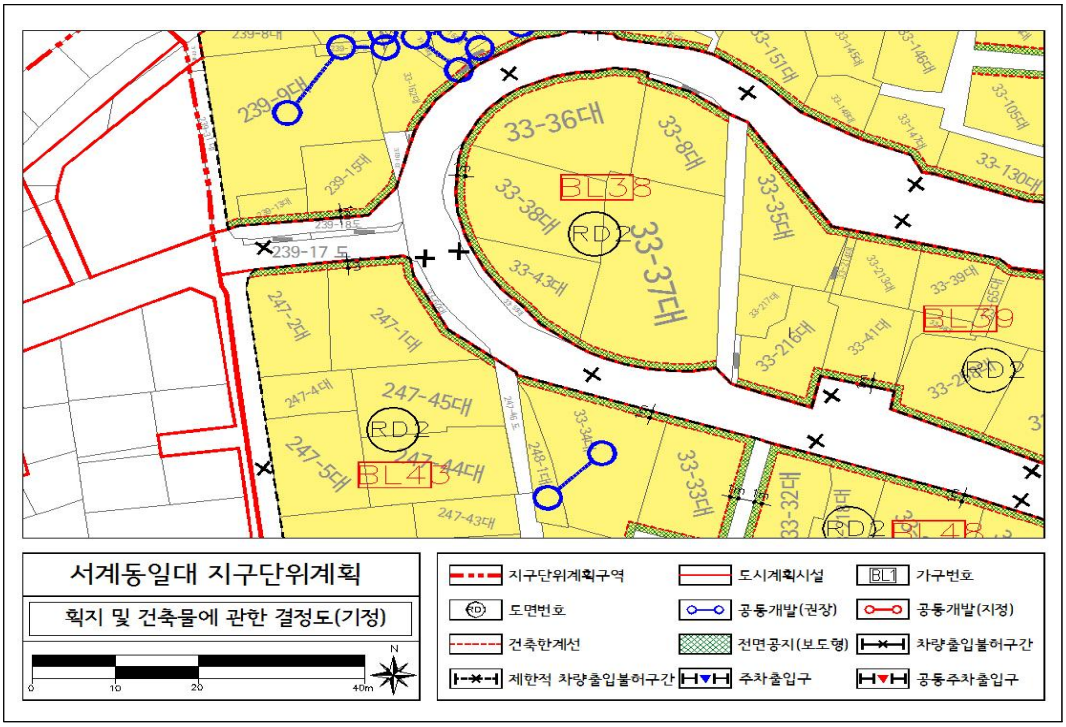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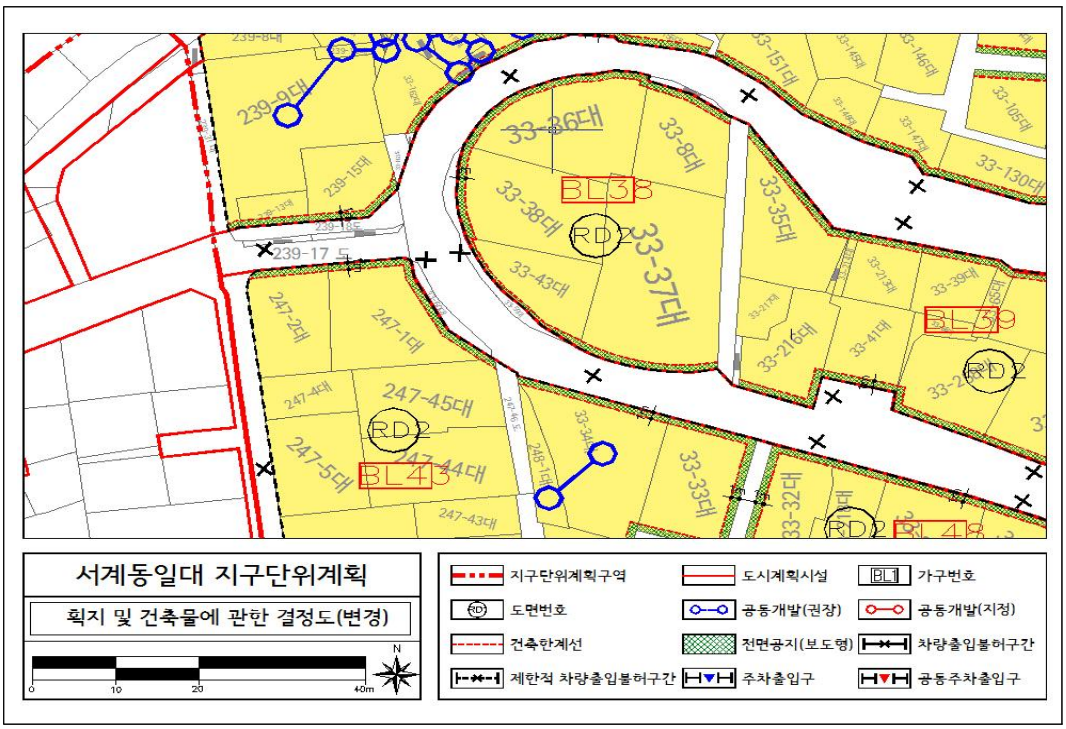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1부. 끝.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가구번호
도면번호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보도형)
차량출입불허구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가구번호
도면번호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전면공지(보도형)
차량출입불허구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 강북구고시 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139호(2018.10.18.)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19-203호(2019.02.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 공고한 『덕릉로13-1~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덕릉로13-1~ 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공사	강북구 수유동 442-26 ~수유동 442-28	폭 4~5m 연장 35m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9호 (2018.10.18.)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덕릉로13-1~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42-102	대지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31동 506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박용현	1/2				
						최분순	1/2				
2	수유동 442-106	대지	15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28	권영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한강로지점)	근저당권	
3	수유동 442-108	대지	7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26	김은태					
4	수유동 442-109	대지	10	1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23, 301동 804호 (호원동, 호원가든3차아파트)	고재삼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은행 (의정부지점)	근저당권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38번길 12, 102동 901호 (호원동, 한주5차아파트)	임복희	1/2				
5	수유동 442-107	도로	108	1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75	안치수	31.375/2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01	방인찬	근저당권	6/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5	남정대	79.125/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49	선우봉옥	6/26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84-13	조한성	5/26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69	박승철	7/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25	이상린	6/2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덕릉로13-1~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5	수유동 442-107	도로	108	108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56	김한식	4/2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01	방인찬	근저당권	6/26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3	임문규	6/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5	정연선	15/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6	김규홍	20/2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2-20	김문삼	6/26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35-10	강병국	71.5/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40	강재헌	6/26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덕릉로13-1~인수봉로52길 34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442-26	담장 및 대문	1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26	김은태				
2	수유동 442-28	담장 및 대문	1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28	권영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한강로지점)	근저당권	
		수목	1식							

◈ 도봉구고시 제2019-37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 3. 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며,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조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9-24호(2009. 4. 7.)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및 지형도면 정정 결정된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으로 편입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5 외 7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를 위하여** 도봉구 공고 제2019-267호(2019. 2. 28.)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의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5 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8,400㎡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0.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

자. 문 의 : 도봉구청 문화체육과(☎02-2091-22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2019년도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9년도 보상예상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8,400**	**8,400**	**8,400**							
1	창동	산202-5	임	33	33	33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				
2	창동	산202-7	임	900	900	900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				
3	창동	산203-8	임	72	72	72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수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윤영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재웅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5.6/28				
4	창동	산203-10	임	1,800	1,800	1,800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수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윤영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장재웅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5.6/28				

연번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9년도 보상예상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창동	산204-5	임	117	117	117	이순용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호(한솔빌라트)	1				
6	창동	산204-7	임	2,600	2,600	2,600	이순용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호(한솔빌라트)	1				
7	창동	산205-24	임	178	178	178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1	의정부 신곡새마을 금고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신곡동)	근저당권 설정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근저당권 설정	
8	창동	산205-26	임	2,700	2,700	2,700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9, ***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1	의정부 신곡새마을 금고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신곡동)	근저당권 설정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근저당권 설정	

◈ 노원구고시 제2019-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1974.5.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9-171호(2019.2.21.)로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완료한 **『월계동 476-20 ~ 472-49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노원구 월계동 476-20 ~ 472-49	월계동 476-20~472-49간 도로개설사업	B = 8.0m L =238.0m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74.5.11)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라. 사업 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고시 방법 : 시보게재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2116-4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월계동 476-20~472-49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월계동 473-21	도로	44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2	노원구 월계동 473-5	도로	1,753	29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노원구 월계동 474-2	대지	3	3	고충현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0길40, 202호(삼선동3가)				
					김종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61, 503동1104호 (대화동,대화마을)				
					황명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61, 503동1104호 (대화동,대화마을)				
					김영혜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2동1002호(둔촌동, 주공아파트)				
					안희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19, 107동1001호(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				
					최순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3길35, 101동 1606호(실리안아파트)				

○ 사업의 명칭 : 월계동 476-20~472-49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4	노원구 월계동 474-1	대지	126	126	고충현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20길40, 202호(삼선동3가)				
					김종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61, 503동1104호(대화동,대화마을)				
					황명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61, 503동1104호(대화동,대화마을)				
					김영혜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2동1002호 (둔촌동, 주공아파트)				
					안희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19, 107동1001호(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				
					최순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3길35, 101동 1606호(실리안아파트)				
5	노원구 월계동 448	도로	2,273	1,1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6	노원구 월계동 472-49	도로	2,188	2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위치도 및 현황사진


도로개설
B=8m, L=238m
CU
미식성
GS25
서울선곡초등학교
옥의관
승리관
승흥빌라
삼창아파트
296세대
세븐일레븐
현대빌라
두나빌라
가야빌라
동화자연마루
양드림
풍성한교회
그린빌라
동산아파트
864세대
영광상가
동신빌라
한전빌라
청룡강화도어
장위3동
주민센터
우이천



◈ 노원구고시 제2019-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8호(2008.3.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9-176호(2019.2.21.)로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완료한 **『월계동 280-1 ~ 655-11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노원구 월계동 280-1~655-11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B = 15.0m L =214.0m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8호 (2008.3.6.)	월계동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간 제외 (B=5~6, L=214m)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라. 사업 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고시 방법 : 시보게재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2116-4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월계동 654-1	도로	1,636	66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2	노원구 월계동 645-5	도로	23	23	황병철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로 151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중앙로1가)	가압류	
							홍천군		압류	
							홍천세무서		압류	
3	노원구 월계동 281-2	도로	149	8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4	노원구 월계동 277-3	전	400	400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건축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79, 707호(창동)				
					유한규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602호(포일동, 포일숲속마을)				
					유한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19, 103동 302호(동삼동,반도보라비치)				
					유한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1동 204호(압구정동,현대아파트)				
					유위경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4나길23 (수유동)				
					유스티브승근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69, 6동 1202호(신곡동, 신성벽산아파트)				

○ 사업의 명칭 :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5	노원구 월계동 277-2	답	3	3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건축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79, 707호(창동)				
					유한규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602호(포일동, 포일숲속마을)				
					유한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19, 103동 302호(동삼동,반도보라비치)				
					유한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1동 204호(압구정동,현대아파트)				
					유위경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4나길23 (수유동)				
					유스티브승근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69, 6동 1202호(신곡동, 신성벽산아파트)				
6	노원구 월계동 281-4	도로	959	95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7	노원구 월계동 278-1	잡종지	79	79	이성수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74, 115동 2302호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				
8	노원구 월계동 280-1	전	26	26	이은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20 103동 1201호 (내수동, 경희궁파크팰리스)				
9	노원구 월계동 276-8	잡종지	189	189	오영화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19, 104동 605호 (풍무동,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성이현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15길 47-5(삼성동)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월계동 655-14 (샤인로즈)	계단	석재	1㎡		이세종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91, 101동 502호 (월계동, 우남푸르미아아파트)				
						이선녀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91, 101동 502호 (월계동, 우남푸르미아아파트)				
2	노원구 월계동 655-14 (APPANG)	데크	목재 및 철제	2㎡		이기복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13 1층 APANG				
3	노원구 월계동 655-14 (JUICY)	계단	석재	1㎡		이세종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91, 101동 502호 (월계동, 우남푸르미아아파트)				
						이선녀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91, 101동 502호 (월계동, 우남푸르미아아파트)				
4	노원구 월계동 272-31 (와플팝커피)	데크	목재	11㎡		모경숙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17 1층 와플팝커피				
5	노원구 월계동 276-20 (날보러와요)	데크	목재	4㎡		김미자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37 1층 날보러와요카페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	노원구 월계동 276-22	가건물	샷시/유리	1㎡		유호준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3길17 2층 (월계동)				
						김순한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3길17 2층 (월계동)				
		가건물	샷시/유리	2㎡		유호준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3길17 2층 (월계동)				
						김순한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3길17 2층 (월계동)				
7	노원구 월계동 276-22	숙성실	냉장고	1㎡		신경숙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53길17 1층 대풍정육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개설 : B=15m, L=214m
(월계동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간 제외 B=5~6m,
L=214m)
창조교회
인과선원
제2공학관
도서관
제1공학관
성원교회
인덕공업
고등학교
인덕대학교
월계중학교
서울신계
초등학교
대운동장
인덕아이파크
(2019년11월예정)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사슴어린이집
월계사슴
아파트2단지
월계1교
우편취급국
월광교회
사슴1단지
아파트
현대아파트
성원4단지
아파트
서울녹천
초등학교
녹천초교
교차로
만나교회
두솔유치원
그랑디
오피스텔
노원소방서
서울월계
2동우체국
월계주공
2단지아파트
월계주공
1단지아파트
월계역
신도브래뉴아파트



◈ 강서구고시 제2019-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 및 해제사유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3. 대 상 지
   가. 신규지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211-1번지 등 3개소(붙임1 참조)
   나.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02-1 등 2개소(붙임2 참조)
4. 지정 및 해제일 : 2019.03.21.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안내(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이를 위반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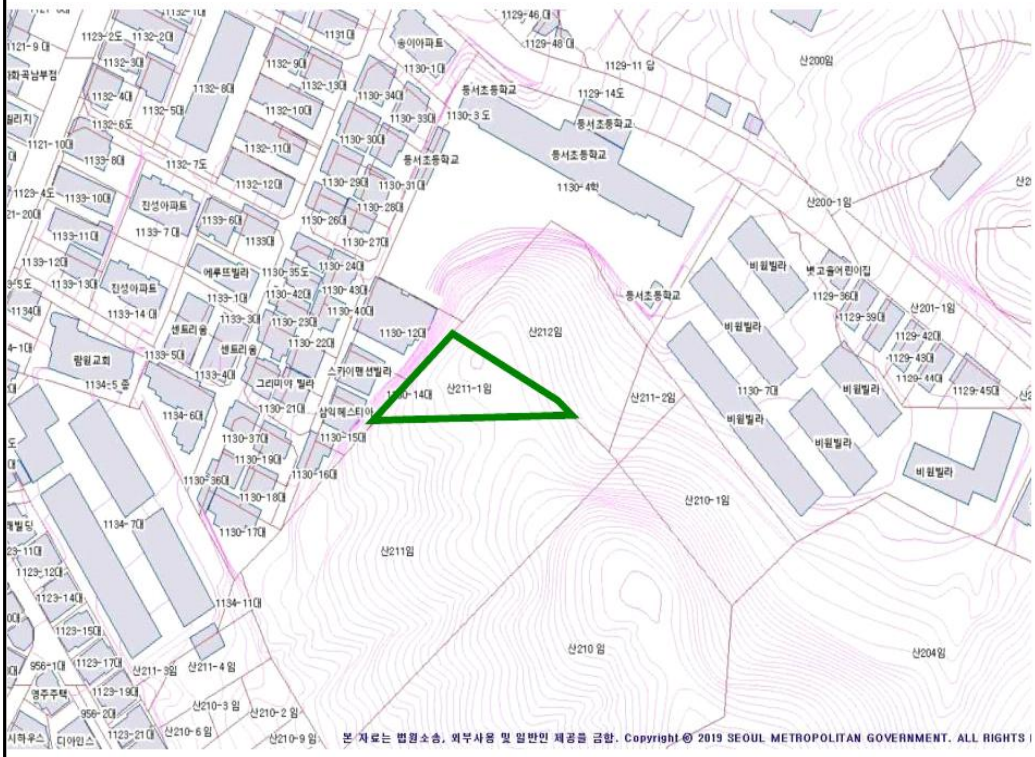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공원(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합계				90,944.1	7,249		
1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211-1	임야	624	624		국(기획재정부)
2	수명산 근린공원(수명산)	강서구 내발산동 748	공원	83,807.1	6,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3	개화 근린공원(개화산)	강서구 개화동 361-4	임야	182	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61-36	유○환
		강서구 개화동 산59	임야	6,01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8길 5, 3동 201호(삼성동, 진흥아파트)	김○희
		강서구 개화동 361-38	임야	260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61-30	유○환
		강서구 개화동 363-40	대지	54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74-11	이○세
		소계		6,513	125		

번호: 제2019년-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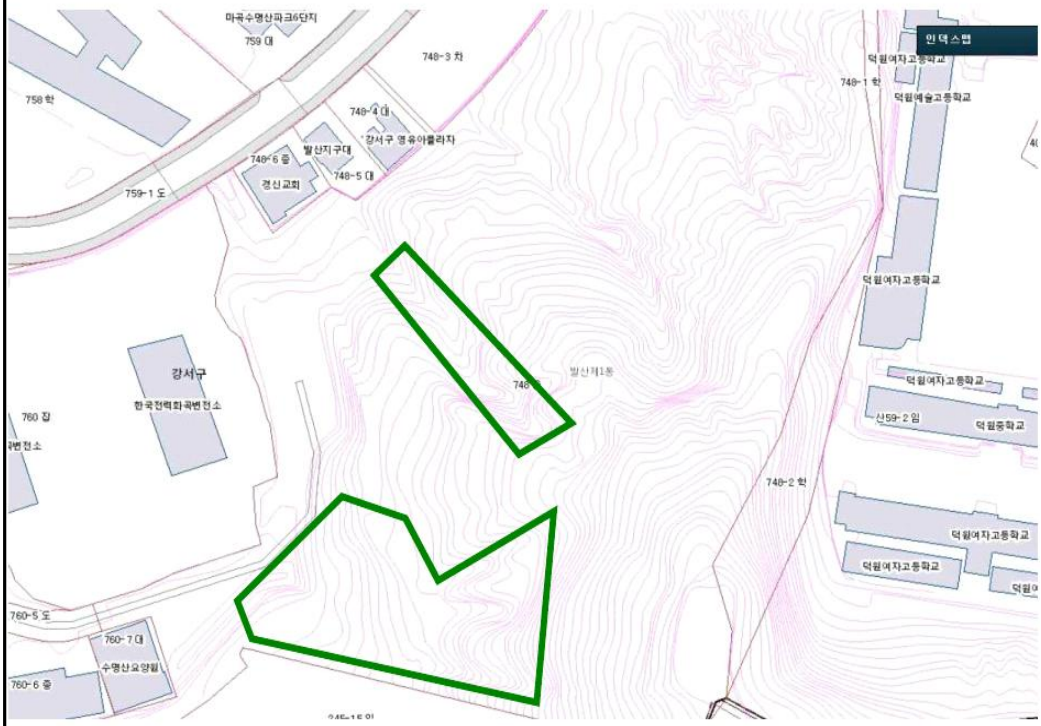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강서 화곡동	산211-1	임야	624	624	
계			624	624	

번호: 제2019년-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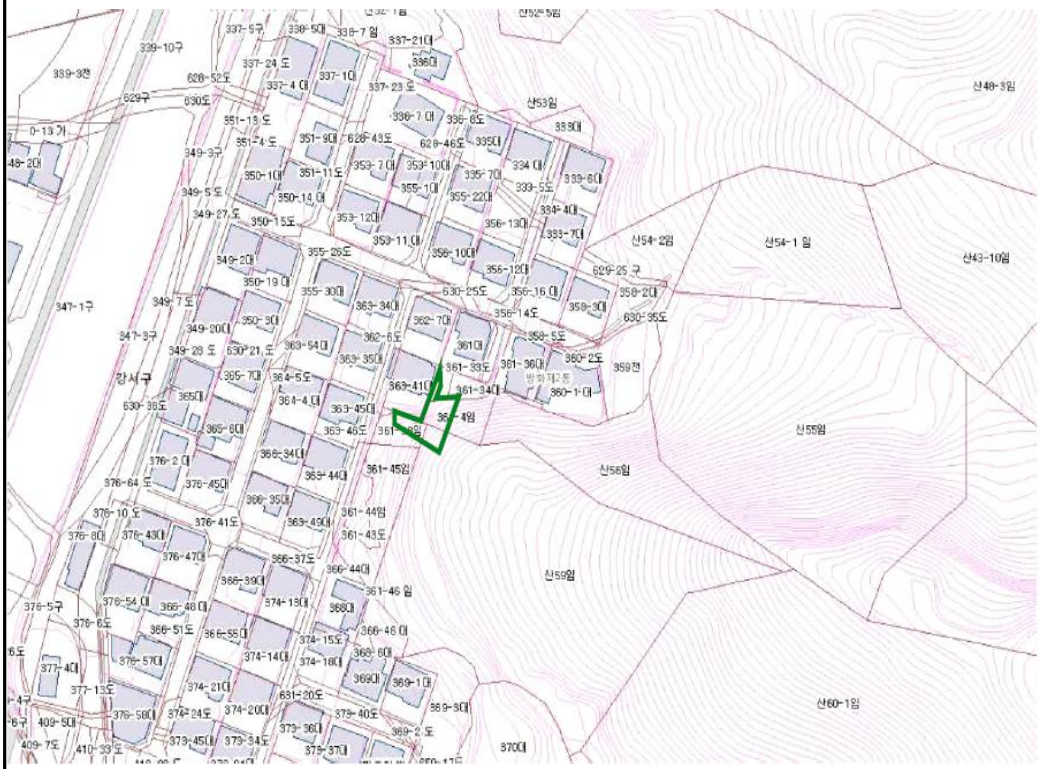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강서. 내발산동	748	공원	83,807.1	6,500	
계			83,807.1	6,500	

번호: 제2019년-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구역 도면(축척 1:1,200)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강서. 개화	361-4	임야	182	70	
	산59	임야	6,017	15	
	361-38	임야	206	30	
	363-40	대지	54	10	
계			6,459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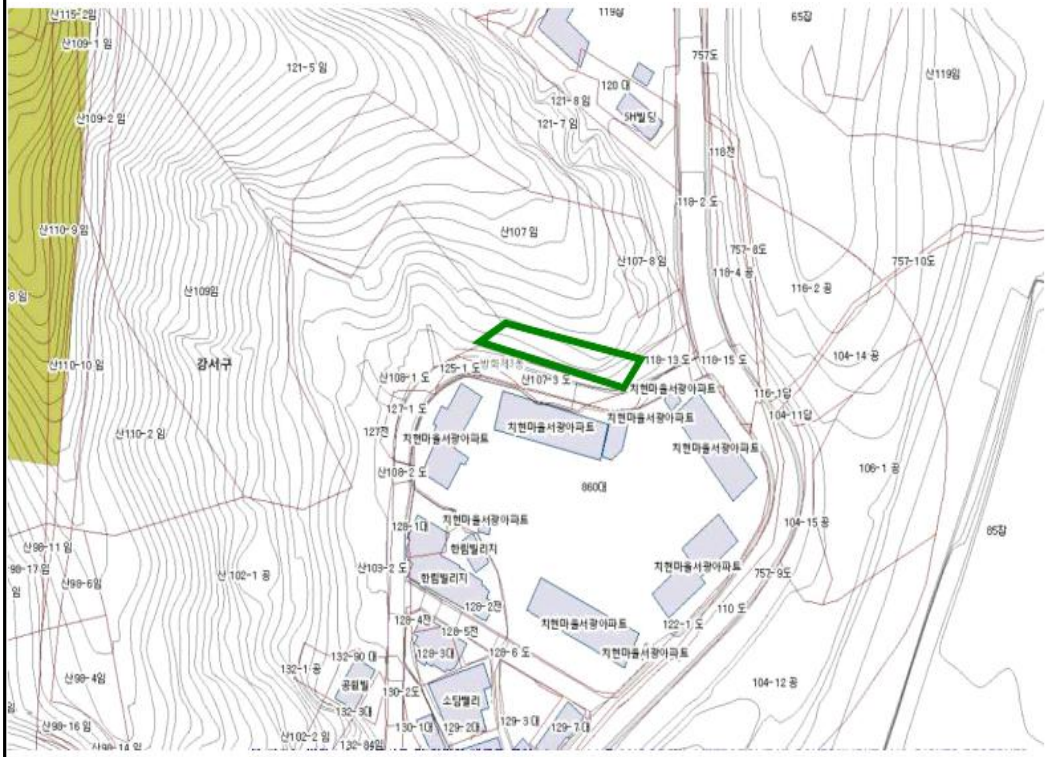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연번	공원(산지)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합계				62,183	1,320		
1	꿩고개 근린공원 (치현산)	강서구 방화동 산102-1	공원	11,297	510		서울특별시
2	개화근린 공원 (개화산)	강서구 방화동 산153-1	임야	18,678	1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 산153-2	임야	1,388	6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53-4	임야	25,289	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0, 6층(논현동)	김○봉
		강서구 방화동 463-13	임야	5,531	35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3길 20-8 (갈현동)	장○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 10동 801호(대치동)	옥○숙
		소계		50,886	810		

번호: 제2019년-1호

산사태취약지역 해제구역 도면(축척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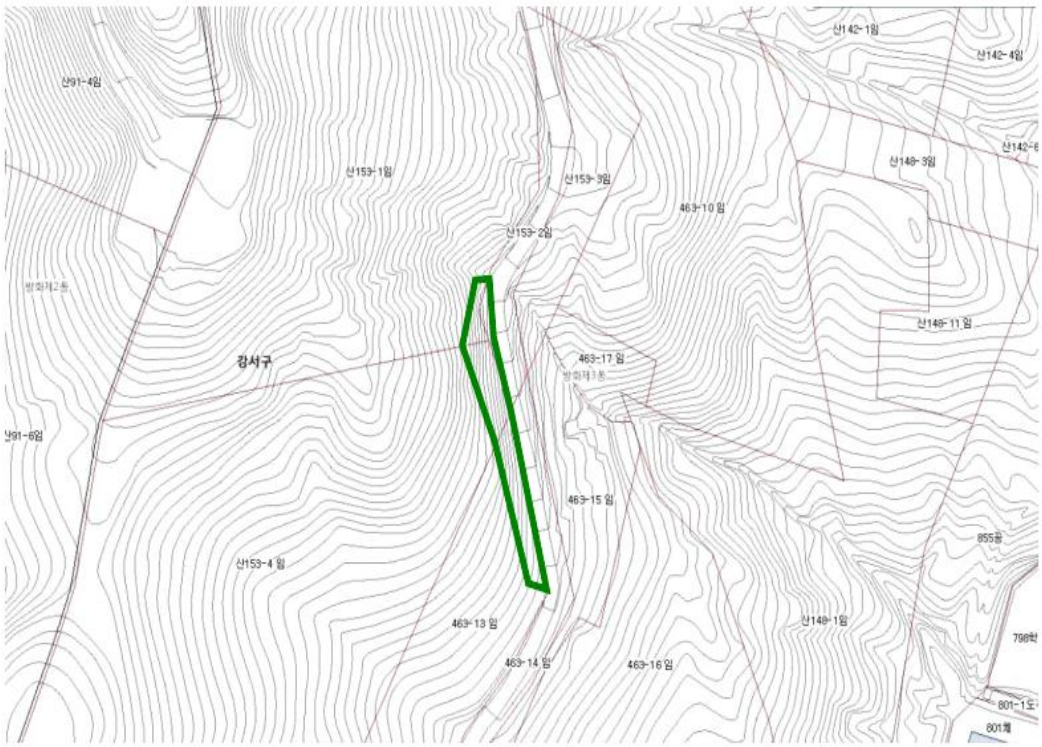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강서. 방화	산102-1	공원	11,297	510	
계			11,297	510	

번호: 제2019년-2호

산사태취약지역 해제구역 도면(축척 1:1,200)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강서. 방화	산153-1	임야	18,678	100	
	산153-2	임야	1,388	60	
	산153-4	임야	25,289	300	
	463-13	임야	5,531	350	
계			50,886	810	

◈ 금천구고시 제2019-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가.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나. 사업명칭 : 독산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주체 성명 : 노춘진외 2인
- 사업주체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6, 301동 904호(강변마을, 동일하이빌)

라.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893-7호

마. 대지면적 : 1,072.7㎡

바. 건축연면적 : 2,938.8㎡

사.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6층(3개동),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50세대, 근린생활시설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자. 변경 내용

- 지하1층 평면 변경
- 101동 세대 발코니 변경, 계단참 변경
- 102,103동 세대 발코니 변경
- 입면 징크판넬 삭제
- 건축면적 증가(0.51㎡), 연면적 증가(29.46㎡)
- 조경면적 감소(12.62㎡)

2.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 동작구고시 제2019-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가. 성명 및 주소 :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사인 외 1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6길4)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변경있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규모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사업비(천원)	사업기간(사용검사 예정일)
		층수(지상/지하)	동	세대수							
아파트	기정	20/5	13	950	39,627	139,931.89	21.37	227.73	14,567.47	540,000,000	2021.01
	변경	20/5	13	950	39,627	139,977.82	21.23	227.73	14,567.47	540,000,000	2021.01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2018. 5. ~ 2021. 01. 31.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변경없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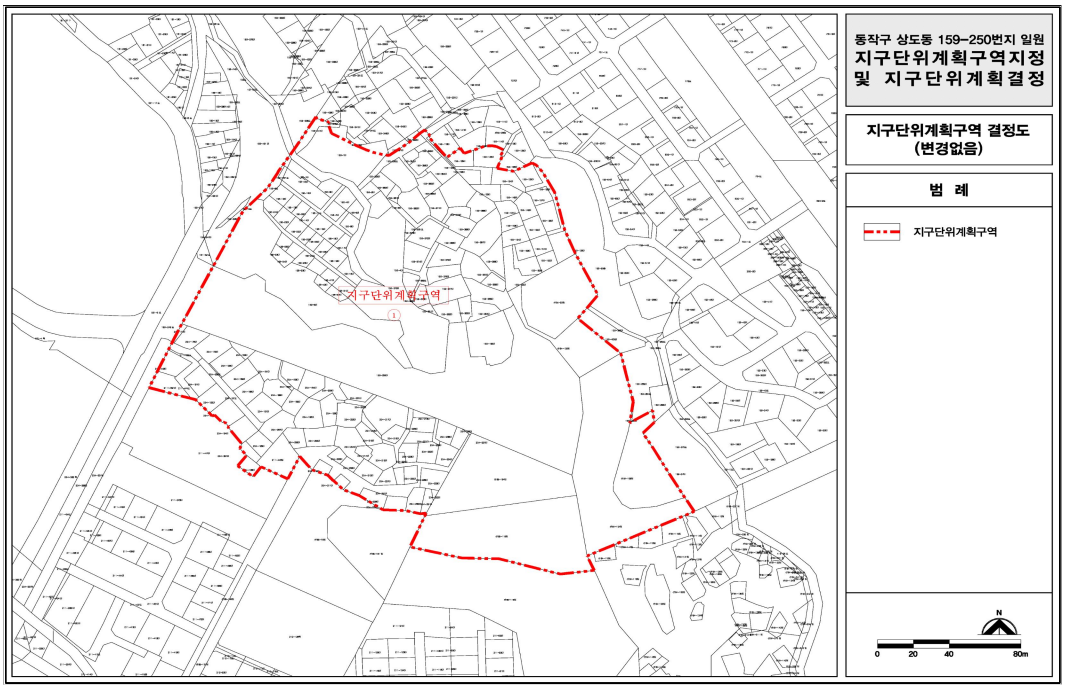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최초결정일)
-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48,302	동작구고시 제2017-77호 (2017.09.28)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작구고시 제2018-29호(2018.05.03.)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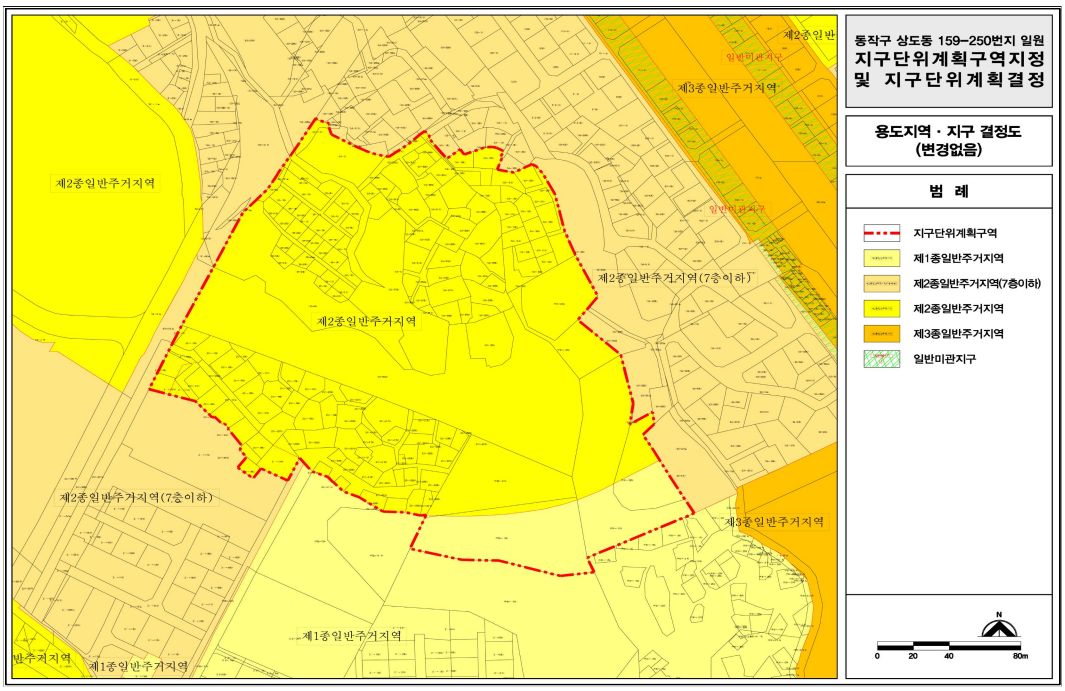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계		48,30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746	9.8	
	제2종일반주거지역	43,556	90.2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변경없음)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781	15,902	-	-	-	1	71	589	1	710	15,313
중로	1	710	15,313	-	-	-	-	-	-	1	710	15,313
소로	1	71	589	-	-	-	1	71	589	-	-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중로	3	35	12~35	보조간선	710	상도동 210-455	상도동 32-11	일반도로	-	-	-
기 정	소로	2	79	8	국지	71	상도동 159-392	상도동 159-441	일반도로	-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 (2017.09.28)	-

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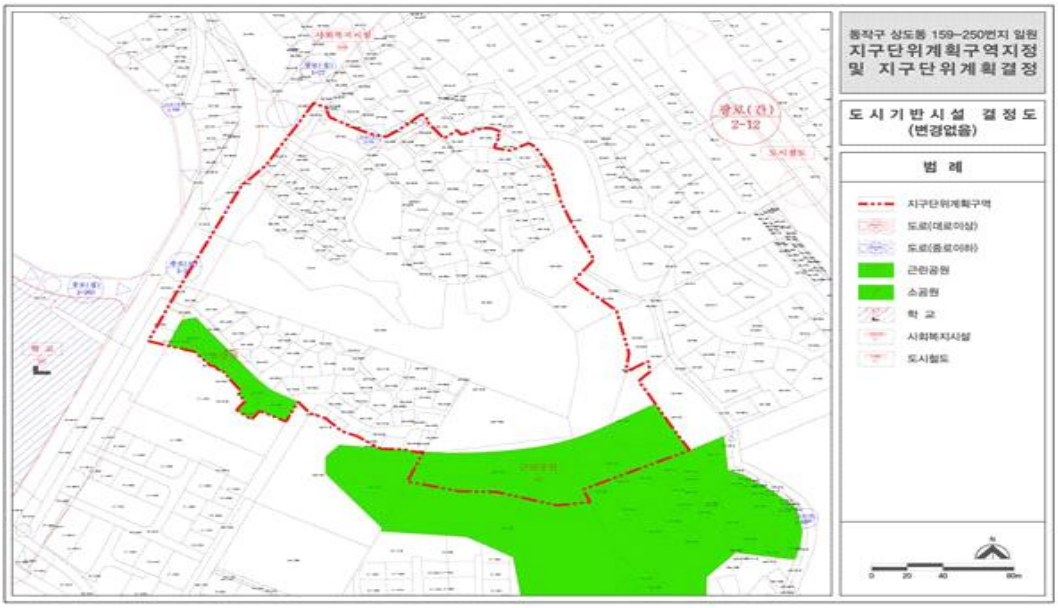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상도 근린공원	근린공원	상도동 산65-116번지 일원	360,403.8 (4,746)	-	-
기 정	①	-	소공원	상도동 204-192번지 일원	1,390	동작구 고시 제2017-77호 (2017.09.28)	-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는 구역 내 면적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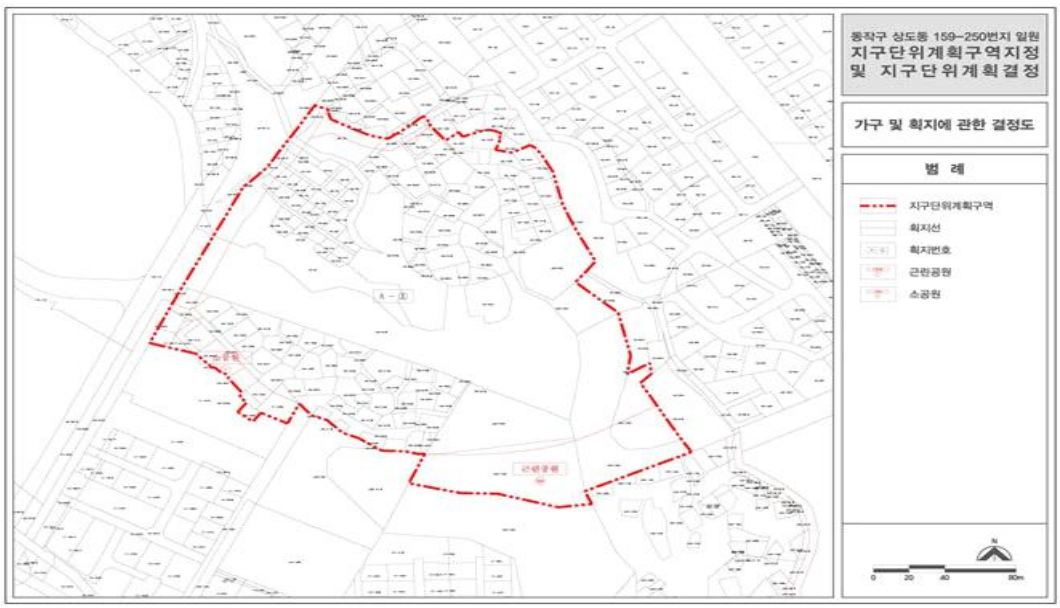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A	39,627	①	39,627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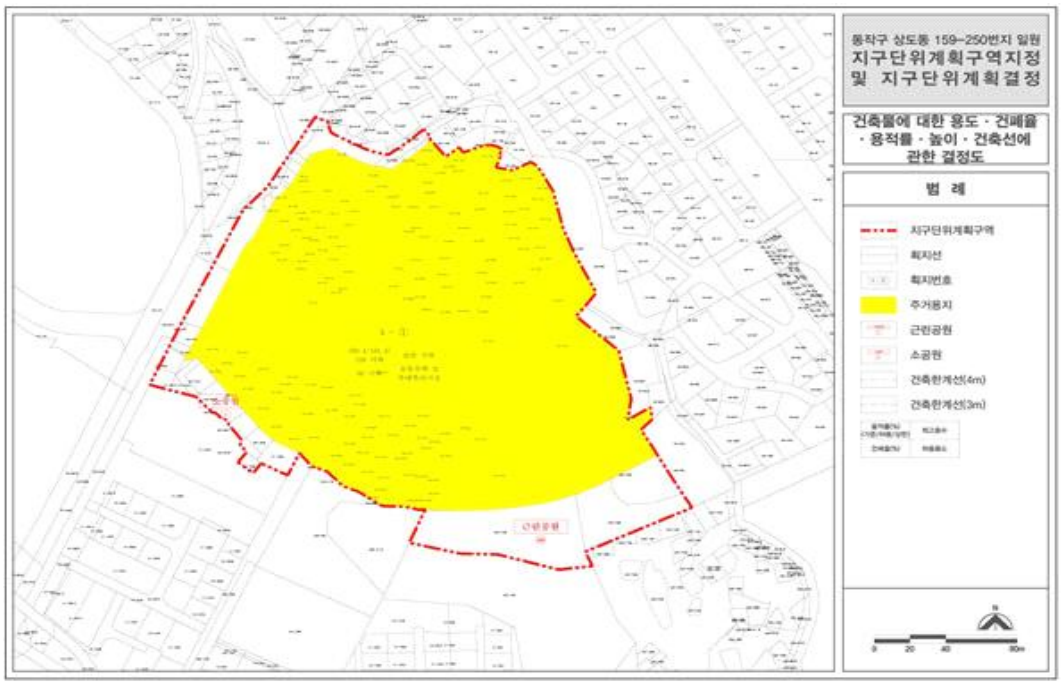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①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169.4% 이하	[산출식] • 기준 = {(150%×1,141㎡)+(170×38,486)}/39,627㎡ = 169.42% • 허용 = 169.42% + 12%(무량판구조 7%, 에너지효율인증2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4%, 신재생에너지 3등급 1%) = 181.42% • 상한 = 181.42% + (169.42%×1.3×0.2442×0.9443) = 232.20% ※ a = 9,483㎡/38,819㎡=0.2442, C = 160.00/169.42 = 0.9443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150%×4,741㎡)+(170%×4,742㎡)}/9,483㎡ = 160.00%
			허용	• 181.4% 이하	
			상한	• 228% 이하	
		높이		• 최고층수 20층 이하	
		건축선		• 중로3-35호선 및 근린공원변 : 4m • 소로2-79호선 및 인접대지변 : 3m	

※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산출식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3-35호선변(양녕로변)	•중로 3-35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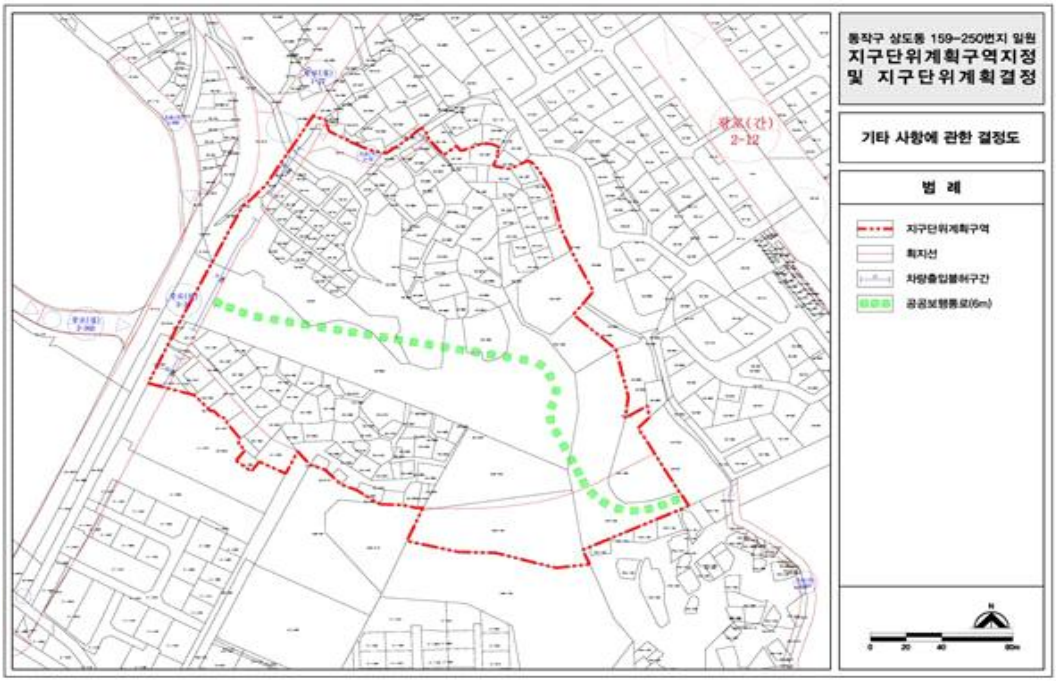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상도근린공원 ~ 중로3-35호선변(양녕로변)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원 4~ 6m	

다) 공공시설 부담계획 : 변경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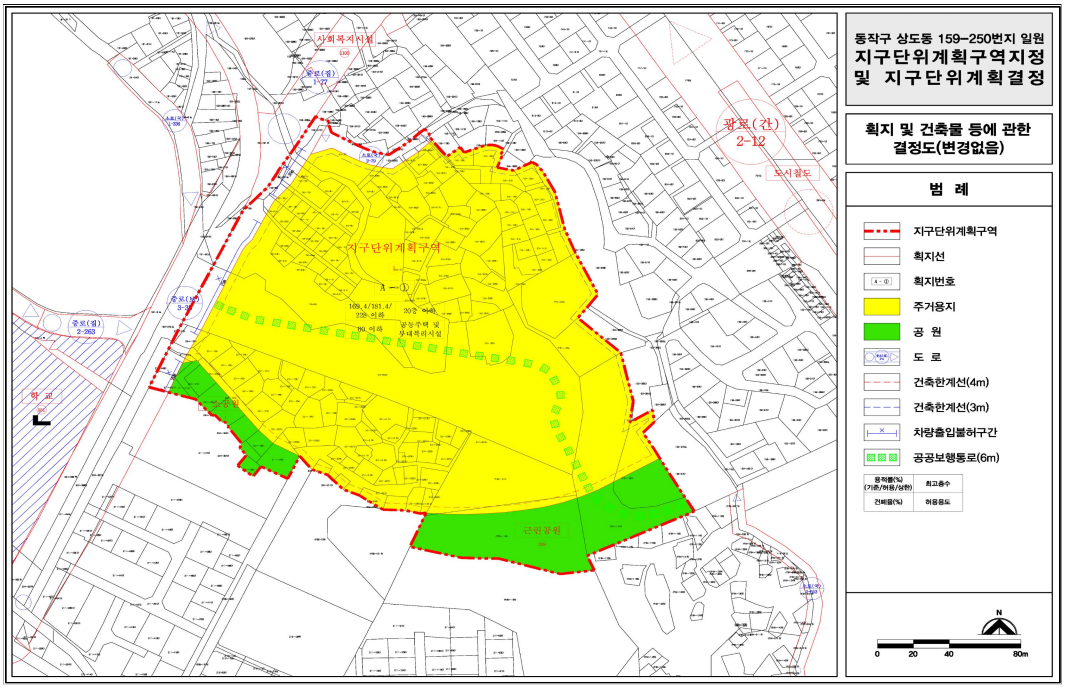
구분	면적(㎡)		순부담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6,136	6,136	13.0	13.0	
도 로	2,539	2,539	5.4	5.4	
공공시설	879	808	1.9	1.7	• 건축물기부채납(건축물연면적: 1,082.57㎡/대지지분:306㎡)
소 계	9,554	9,483	20.3	20.1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6.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977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9-37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4호(2018.08.0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19-330호(2019.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97번지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토지보상 4,730㎡

바.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필지		34,058	4,730							
1	산97	임야	6,108	843	강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203동 2303호(구의동,현대아파트)	414/6108				
					박종락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7길 17(수유동)	469/6108				
					최병기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104-6(문흥동)	437/6108				
					서근배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4동 702호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534/6108				
					김용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길 22(천호동)	207/6108				
					한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상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근영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336	247/6108				
					최경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 302동 205호(월계동, 청백아파트)	263.5/6108				
					최기자	서울툭별시 성동구 사근동 12길 11-8(사근동)	263.5/6108				
					최기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18(사근동)	365/6108	김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8길 16-14, 301호	근저당권	
					유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48, 102동 202호(잠실한솔아파트)	247/6108				
					조상현	서울툭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안영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정재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김영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윤소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5, 303동 503호(평촌동,초원아파트)0	190/6108				
					김영풍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30(용당동)	241/6108				
					송인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4나길 1,304호(가락동)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백용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7, 에프동 2509호(도곡동,타워팰리스)	494/6108				
2	산120	임야	26,499	2,436	직산조씨이조참판진상지직계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05-3		한국전력공사	서울툭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철탑및송전선의건설과소유	
3	산133	임야	1,451	1,451	직산조씨이조참판진상지징계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05-3					

구 공 고

◈ 도봉구공고 제2019-375호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호(2013.1.17)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아래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물관리과(☏2091-411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21일
도 봉 구 청 장

가. 하천공사의 명칭 :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나.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도봉1천의 통수단면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치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재해예방 대책강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개요 : 하천 확폭 및 낙차공 보수 등 시설물 정비, L=0.73km
다.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68-19번지 일대
라.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656(방학동)
마.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0.12.31.까지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 서대문구공고 제2019-3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시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34호(2019.3.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신촌동 27-3~52-2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대문구 신촌동 52-23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신촌동 27-3~52-23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113m)
라. 사업시행자 : 신촌동 52-2외7필지(김정숙), 플로렌스힐(이형규)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전화 : 330-1762)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신촌동 27-3~52-23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시항	
1	서대문구 신촌동	52-23	대	129	129	이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2-19외 5필지				
2	서대문구 신촌동	52-30	대	14	14	이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2-19외 5필지				
3	서대문구 신촌동	52-37	전	412	412	김정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2-2외 7필지				
4	서대문구 신촌동	52-40	전	106	106	이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2-19외 5필지				
5	서대문구 신촌동	52-41	전	1	1	이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2-19외 5필지				
6	서대문구 신촌동	27-3	구거	72	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마포구공고 제2019-308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1호(2009.10.8)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폐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010.2.18)호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조성 사업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 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공원) -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성산동 산11-1번지 외 3필지	○ 사업의 종류 -근린공원조성(토지보상) ○ 규 모 : 15,79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최초:건설부고시(제2181호) (1966.2.5) -최종:서울특별시고시(제391호) (2009.10.8)	사업인가 고시일로부터 2020.6.30

다.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라. 열람기간 : 2019. 3. 21. ~ 2019. 4. 04. (15일간)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02-3153-9553)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물건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위치) 동	소재지(위치) 번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등기)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계				15,792	15,792							
1	성산	산11-1	임야	9,503	9,503	임야 (체육시설, 산책로 등)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2	성산	산11-66	임야	1,302	1,302	임야 (산책로 등)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3	성산	산12-3	임야	99	99	임야 (산책로 등)	이욱환	서울시 잠원동130-17 신반포7차 아파트 301동 1009호				
4	성산	산11-65	임야	4,888	4,888	임야 (산책로 등)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강서구공고 제2019-409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꿩고개근린 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36-10 등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10,198㎡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3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 첨부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84)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사업명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합계	7필지		10,198	10,198							
1	방화동 산136-10	임야	500	500	1/2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8	김용구				
					1/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이화생				
2	방화동 산135-6	임야	1,263	1,263	1/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심미아파트 1803호	강석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압류	
					1/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84 삼성아파트 101-1105	강종구				
3	방화동 산133	임야	2,820	2,820	1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79-1(수유동)	한은신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4	방화동 산130-6	임야	2,550	2,55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공항동)	권순직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	이태경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5	방화동 산115-8	임야	765	765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2동 1104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강찬구				
6	방화동 산109-4	임야	1,100	1,100	1696/763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21 드와이드웨이 1947	문경자				
					3960/76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44-1102	박희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82-2	김영식	근저당권	
					1980/7636	211-10, lion pl epsom okland newzland	박우식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7	방화동 산107-10	임야	1,200	1,200	7/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930동 706호(중동, 미리내마을)	박노국				
					7/30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8길10 밤섬경남아너스빌 104동 1503호	박노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후곡마을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6번길 22, 104동 401호(송내동, 송내자이아파트)	박귀천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6-9, 지하1층	박옥선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6-9, 지하1층	박노월				
					4/30	미합중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더 포트코트 9026(9026 cedar fort ct Las Vegas Nevada 89113 U.S.A.)	박노숙				

◈ 동작구공고 제2019-308호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85호(2013.3.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환경부 자연마당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80,804㎡

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 기반시설 : 31,780㎡ → 31,535㎡ (감173㎡)

- 도로 1,281㎡ (감)
- 광장 1,108㎡ (증)

○ 조경시설 : 259㎡ → 2,297㎡ (증2,038㎡)

- 계단, 쉼터 등 2,038㎡(증)

○ 휴양시설 : 3,369.45㎡ → 3,370.45㎡ (증1㎡)

○ 유희시설 : 0㎡ → 798㎡ (증798㎡)

- 숲속놀이터 798㎡(신설)

○ 운동시설 : 2,600.80㎡ → 2,138.80㎡ (감462㎡)

○ 교양시설 : 1,194㎡ → 985㎡ (감209㎡)

○ 편익시설 : 2,644㎡ → 2,436㎡ (감208㎡)

○ 녹지 및 기타 : 39,028.95㎡ → 38,041.95㎡ (감987㎡)

라.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19.3.14.~2019.3.27.)

바. 열람장소 : 동작구 공원녹지과(☎820-9846)

사.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변경조서 1부.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본동 산3-9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합 계		80,804.2	13,123.25	3	1,413.26	3,617.45	97	**80,804.2**	**16,404.25**	**3**	**1,362.86**	**3,567.05**	**97**	**시설면적 증 3,281㎡**
기반시설	소 계	31,708	3,984					**31,535**	**5,155**					**감 173㎡**
	도 로	30,876	3,152 (27724)					**29,595**	**3,215 (26,380)**					**감 1,281㎡**
	광 장	832	832					**1,940**	**1,940**					**증 1,108㎡**
조경시설		259	259				16	**2,297**	**2,297**				**16**	**증 2,038㎡**
휴양시설		3,369.45	3,369.45				34	**3,370.45**	**3,370.45**				**34**	**증 1㎡**
유희시설								**798**	**798**					**증 798㎡**
운동시설		2,600.80	2,103.80	1	1,282.88	3,454.07	8	**2,138.80**	**1,641.80**	**1**	**1,282.88**	**3,454.07**	**8**	**감 462㎡**
교양시설		1,194	915	1	46.98	46.98		**985**	**706**	**1**	**46.98**	**46.98**		**감 209㎡**
편익시설		2,644	2,492	1	83.4	116.4		**2,436**	**2,436**	**1**	**33**	**66**		**감 208㎡**
관리시설							39						39	증감없음
녹지 . 기타		39,028.95						**38,041.95**						**감 987㎡**
시설율 (법정 40%)		(13,123.25㎡ / 80,804.2㎡) x 100% = 16.24%						(**16,404.25**㎡ / 80,804.2㎡) x 100% = **21.30%**						**증 5.06%**
건폐율 (법정 10%)		(1,413.26㎡ / 80,804.2㎡) x 100% = 1.74%						(**1,362.86**㎡ / 80,804.2㎡) x 100% = **1.69%**						**감 0.05%**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기)							바닥면적	연면적	(기)	
합계				80,804.20	13,123.25			1,413.26	3,617.45	97			**80,804.2**	**16,404.25**			**1,362.86**	**3,567.05**	**97**	**시설면적 증 3,281㎡**
기반시설	소 계			31,708	3,984								**31,535**	**5,155**						**감 173㎡**
	도로			30,876	3,152 (27724)	( ) 도시계획도로							**29,595**	**3,215 (26,380)**	( ) **도시계획도로**					**감 1,281㎡**
	광장	**가**		**832**	**832**								**1,940**	**1,940**						**증 1,108㎡**
		가-1	**본동산3-9일대**	**(308)**	**(308)**															**폐지**
		가-2	**본동산3-9일대**	**(314)**	**(314)**															**폐지**
		가-3	본동산3-9일대	(210)	(210)						가-3	본동산3-9일대	(210)	(210)						증감없음
		가-4									**가-4**	**본동산3-9일대**	**1,730**	**1,730**						**증 1,730㎡**
조경시설	소 계			259	259					16			**2,297**	**2,297**					**16**	**증 2,038㎡**
	잔디밭	**나**	**본동산3-9**	**203**	**203**						나	**본동산3-9**	**800**	**800**						**증 597㎡**
	파고라		전지역			목재				16		전지역			목재				16	증감없음
	계단	**나**	**본동산3-9**	**56**	**56**						**나**	**본동산3-9**	**557**	**557**						**증 501㎡**
	계단-1	나-1	본동산3-9	(17)	(17)						나-1	본동산3-9	(17)	(17)						증감없음
	계단-2	나-2	본동산3-9	(9)	(9)						나-2	본동산3-9	(9)	(9)						증감없음
	계단-3	나-3	본동산3-9	(12)	(12)						나-3	본동산3-9	(12)	(12)						증감없음
	계단-4	나-4	본동산3-9	(15)	(15)						나-4	본동산3-9	(15)	(15)						증감없음
	계단-5	나-5	본동산3-9	(3)	(3)						나-5	본동산3-9	(3)	(3)						증감없음
	계단-6	**나-6**									**나-6**	**본동산3-9**	**269**	**269**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계단-7	나-7									나-7	본동산3-9	44	44						신설
	계단-8	나-8									나-8	본동산3-9	26	26						신설
	계단-9	나-9									나-9	본동산3-9	17	17						신설
	계단-10	나-10									나-10	본동산3-9	17	17						신설
	계단-11	나-11									나-11	본동산3-9	73	73						신설
	계단-12	나-12									나-12	본동산3-9	55	55						신설
	계류	너									너	본동산3-9	536	536						증 536㎡
	쉼터	녀									녀	본동산3-9	404	404						증 404㎡
	쉼터-1	녀-1									녀-1	본동산3-9	68	68						신설
	쉼터-2	녀-2									녀-2	본동산3-9	23	23						신설
	쉼터-3	녀-3									녀-3	본동산3-9	13	13						신설
	쉼터-4	녀-4									녀-4	본동산3-9	20	20						신설
	쉼터-5	녀-5									녀-5	본동산3-9	95	95						신설
	쉼터-6	녀-6									녀-6	본동산3-9	71	71						신설
	쉼터-7	녀-7									녀-7	본동산3-9	36	36						신설
	쉼터-8	녀-8									녀-8	본동산3-9	78	78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소 계			3,369.45	3,369.45					34			3,370.45	3,370.45					34	증 1㎡
	야유회장	다	본동산3-9	966	966															폐지
	다목적마당	댜									댜	본동산3-9	993	993						신설/증 993㎡
	입구마당	더									더	본동산3-9	113	113						신설/증 113㎡
	하늘마당	더									더	본동산3-9	210	210						신설/증 210㎡
	담소마당	도									도	본동산3-9	421	421						신설/증 421㎡
	휴게소	라		2,160	2,160						라		1,633.45	1,633.45						감 790㎡
		라-1	본동7-1	(927)	(927)															폐지
		라-2	본동산3-9	(182)	(182)															폐지
		라-3	본동5-2	(152)	(152)						라-3	본동5-2	(152)	(152)						증감없음
		라-4	본동3-7	(107)	(107)						라-4	본동3-7	(107)	(107)						증감없음
		라-5	본동2-1	(355)	(355)						라-5	본동2-1	(355)	(355)						증감없음
		라-6	흑석동259-2	(137)	(137)						라-6	흑석동259-2	(137)	(137)						증감없음
		라-7	흑석동141-2	(60)	(60)						라-7	흑석동141-2	(60)	(60)						증감없음
		라-8	본동산5일대	(28)	(28)						라-8	본동산5일대	(28)	(28)						증감없음
		라-9	본동산5일대	(32)	(32)						라-9	본동산5일대	(32)	(32)						증감없음
		라-10	본동산5일대	(40)	(40)						라-10	본동산5일대	(40)	(40)						증감없음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소	라-11	본동산5일대	(160)	(160)						라-11	본동산5일대	(160)	(160)						증감없음
		라-12	흑석동1-3일대	243.45	243.45						라-12	흑석동1-3일대	243.45	243.45						증감없음
		라-13									**라-13**	**본동산3-9**	**319**	**319**						**신설/증 319㎡**
	장의자		전지역			목재				32		전지역			목재				32	증감없음
	야외테이블세트		흑석동1-3일대			목재				2		흑석동1-3일대			목재				2	증감없음
유희시설	**소 계**												**798**	**798**						**증 798㎡**
	숲속 놀이터	카									**카**	**본동산3-9**	**798**	**798**						**신설/증 798㎡**
운동시설	소 계			2,600.80	2,103.80			1,282.88	3,454.07	8			**2,138.8**	**1,641.8**			1,282.88	3,454.07	8	**감 462㎡**
	배드민턴장	마	본동산3-9	462	462		1면													**폐지**
	체육관	4	본동166-22	1,572	1,075		2층	958.08	2,719.50		4	본동166-22	1,572	1,075		2층	958.08	2,719.50		증감없음
	체육관 (증축)	4-1	흑석동1-3일대	324.80	324.80		4층	324.80	734.57		4-1	흑석동1-3일대	324.80	324.80		4층	324.80	734.57		증감없음
	생활 체육시설	마	본동산3-9일대	242	242						마	본동산3-9일대	242	242						증감없음
	생활 체육시설-1	마-1		(173)	(173)						마-1		(173)	(173)						증감없음
	생활 체육시설-2	마-2		(69)	(69)						마-2		(69)	(69)						증감없음
	운동기구					철재				8					철재				8	증감없음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1,194	915			46.98	46.98				**985**	**706**			46.98	46.98		**감 209㎡**
	한강사자수조혼비	바	본동475-1	70	70	화강석	1기				바	본동475-1	70	70	화강석	1기				증감없음
	학도의용군충혼비	사	본동172-1	83	83	화강석	1기				사	본동172-1	83	83	화강석	1기				증감없음
	효사정	1	흑석동141-2	683	404	와즙조	1층	46.98	46.98		1	흑석동141-2	683	404	와즙조	1층	46.98	46.98		증감없음
	놀이마당	아	본동산3-9	358	358															**폐지**
	학습마당	야									야	**본동산3-9**	**149**	**149**						**신설/증 149㎡**
편의시설	소 계			2,644	2,492			83.4	116.4				**2,436**	**2,436**			**33**	**66**		**감 208㎡**
	전망대	2	본동산3-9	208	56	와즙조	1층	50.4	50.4											**폐지**
	전망데크	자	본동산2-14	946	946						자	본동산2-14	946	946						증감없음
	전망데크2	쟈	본동산2-14	272	272						쟈	본동산2-14	272	272						증감없음
	휴게데크	저		38	38						저		38	38						증감없음
	화장실	3	흑석동4	33	33	조적조	2층	33	66		3	흑석동4	33	33	조적조	2층	33	66		증감없음
	주차장	차	흑석116-4	1,147	1,147		33대				차	흑석116-4	1,147	1,147		33대				증감없음
관리시설	소 계									39									39	증감없음
	조명시설		전지역			주철				20		전지역			주철				20	증감없음
	휴지통		전지역			목재				15		전지역			목재				15	증감없음
	안내판		전지역			철재				4		전지역			철재				4	증감없음
녹지및기타	소 계			39,028.95									**38,041.95**							**감 987㎡**
			전지역	39,028.95								전지역	**38,041.95**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계				1,082	27,724				
변경					**970**	**26,380**				
당초	광로	1		40	100	4,600	통과도로			올림픽대로
당초	대로	1	1	35	870	21,780	통과도로	북서쪽 부지경계	남동쪽 부지경계	현충로
당초	**중로**	**3**	**2**	**12**	**16**	**192**	**통과도로**	**현충로**	**유수지**	
변경		**-**	**-**	**-**	**-**	**-**	**-**	**-**	**-**	
당초		**3**	**3**	**12**	**96**	**1,152**	**통과도로**	**현충로**	**북서쪽 부지경계**	
변경		**-**	**-**	**-**	**-**	**-**	**-**	**-**	**-**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1,310	3,096.00				
변경					1,264	3,215.00				
당초	중로	계			3	36				
변경					-	-				
당초		**3**	**1**	**12**	**3**	**36**	**진입로**	**도시계획로 중3-1**	**광장 가-1**	
변경		**-**	**-**	**-**	**-**	**-**	**-**	**-**	**-**	
당초	소로	계			166	704				
변경					245	1020				
당초		2	1	8	10	80	진입로	현충로	전망데크	
당초		3	1	4	60	240	부진입로	광장가-1	전망대1	
당초		3	2	4	8	32	"	전망데크	휴게소 라-4	
당초		3	3	4	60	240	"	휴게소라-7	효사정 2	
당초		3	5	4	20	80	"	현충로	체육관	
당초		**3**	**7**	**4**	**8**	**32**	**"**	**남동부지경계선**	**산책로 8**	
변경		**-**	**-**	**-**	**-**	**-**	**-**	**-**	**-**	
당초		**-**	**-**	**-**	**-**	**-**	**-**	**-**	**-**	
변경		**3**	**8**	**4**	**87**	**348**	**연결로**	**카페마당**	**하늘마당**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당초	산책로	계			1,141	2,356			
변경					1,019	2,195			
당초			1	2	325	650	소로3-7	북서부지경계선	
변경			-	-	-	-	-	-	
당초			2	2	29	58	광장 가-1	소로 3-8	
변경			-	-	-	-	-	-	
당초			3	2	34	68	광장 가-1	소로 3-8	
변경			-	-	-	-	-	-	
당초			4	2	64	128	소로3-8	휴게소 라-2	
변경			-	-	-	-	-	-	
당초			5	2	18	36	소로3-8	전망대1	
변경			-	-	-	-	-	-	
당초			6	2	40	80	광장가-1	소로3-1	
변경			-	-	-	-	-	-	
당초			7	2	26	52	소로3-13	소로3-15	
변경			-	-	-	-	-	-	
당초			8	2	131	262	소로3-7	현충로	
변경			-	-	-	-	-	-	
당초			9	2	43	86	소로2-1	북서부지경계선	
당초			10	2	173	346	한강수사자조혼비	휴게소 라-5	
당초			11	2	49	98	현충로	휴게소 라-3	
당초			12	2	38	76	현충로	휴게소 라-5	
당초			13	2	48	96	휴게소 5-1	현충로	
당초			14	2	49	98	주차장	효사정2	
당초			15	3	12	36	계단-2	계단-3	
당초			16	3	62	186	계단-1	산책로15	
당초			-	-	-	-	-	-	
변경			17	3	108	324	서측경계선	휴게쉼터-1	
당초			-	-	-	-	-	-	
변경			18	2	136	272	입구마당	계단7	
당초			-	-	-	-	-	-	
변경			19	2	251	502	담소마당	하늘마당	
당초			-	-	-	-	-	-	
변경			20	1.5	50	75	동측경계선	쉼터-6	

◈ 동작구공고 제2019-343호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44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된 동작구 대방동 350-2번지 일대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0-2번지 일대

나. 공원면적 : 413,203㎡

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 기반시설 : 46,739.222 ㎡ → 47,337.92 ㎡ (증 638.7 ㎡)

- 도로 및 광장 면적 증가・광장 신설

○ 휴양시설 : 10,176.95 ㎡ → 10,284.65 ㎡ (증 107.7 ㎡)

- 휴게소 신설

○ 운동시설 : 28,064.07 ㎡ → 27,295.27 ㎡ (감 768.80 ㎡)

- 체육관 현황 반영・폐지

○ 편익시설 : 4,028.0 ㎡ → 3,353.8 ㎡ (감 674.2 ㎡) /

- 주차장 면적 감소・현황반영・신설, 화장실 면적 증가・ 현황반영)

○ 녹지 및 기타 : 317,180.59 ㎡ → 318,577.19 ㎡ (증1396.6 ㎡) - 녹지 면적 증가

라.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19.3.14.~2019.3.27.)

바. 열람장소 : 동작구 공원녹지과(☎820-9846)

사.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변경조서 1부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50-2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13,203.00	93,796.26 (19,077.00)	10동	1,990.47	7,294.69		**413,203.00**	**93,126.86 (19,077.00)**	11동	**2,727.45**	8,684.64		
기반 시설	소 계	47,439.22	46,739.22 (19,077.00)					**47,377.92**	**47,377.92 (19,077.00)**					**증)638.70㎡**
	도 로	38,155.00	38,155.00 (18,377.00)					**38,346.6**	**38,346.6 (18,377.00)**					**증)191.60㎡**
	광 장	8,584.22	8,584.22					**9,031.32**	**9,031.32**					**증)477.10㎡**
조 경 시 설		449.00	449.00					449.00	449.00					
휴 양 시 설		10,176.95	10,085.95	1동	54.00	107.00		**10,284.65**	**10,193.65**	1동	54.00	107.00		**증)107.70㎡**
유 희 시 설		1,708.10	1,328.10					1,708.10	1,328.10					
운 동 시 설		28,064.07	28,064.07	(1동)	(765.80)	(1,386.00)		**27,295.27**	**27,295.27**					**감)768.80㎡ (현황반영)**
교 양 시 설		3,897.00	3,127.64	3동	1,516.00	6,767.22		3,897.00	3,127.64	3동	**2,245.98**	**8,150.17**		**녹지하부 시설 (현황시설용도변경)**
편 익 시 설		4,028.00	3,742.21	4동	160.40	160.40		**3,353.80**	**3,095.21**	**5동**	**167.40**	**167.40**		**감)674.20㎡**
관 리 시 설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녹지 및 기타		317,180.59						**318,577.19**						**증)1396.60㎡**
시 설 율 (법정40%)		(93,796.26 / 413,203.00) x 100 = 22.70%						**(93,126.86 / 413,203.00) x 100 = 22.54%**						**감)0.15%**
건 폐 율		(1,990.47 / 413,203.00) × 100 = 0.48%						**(2,727.45 / 413,203.00) × 100 = 0.66%**						**증)0.18%**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413,203.00	93,796.26 (19,077.00)			1,990.47	7,294.69				**413,203.00**	**93,126.86 (19,077.00)**			1,990.47	7,294.69		
기반시설	소계			**46,739.22 (합산오류로 정정)**	46,739.22 (19,077.00)								**47,377.92**	**47,377.92 (19,077.00)**						**증:638.70㎡**
	도로		전지역	38,155.00	38,155.00 (18,377.00)							**전지역**	**38,346.6**	**38,346.6 (18,377.00)**						**증:191.60㎡ (현황반영)**
	광장	가		8,584.22	8,584.22						**가**		**9,031.32**	**9,031.32**						**증:447.10㎡**
		가-1	대방동350-2	(1,350.00)	(1,350.00)						가-1	대방동350-2	(1,350.00)	(1,350.00)						
		가-2	대방동23-176	(853.00)	(853.00)						가-2	대방동23-176	(853.00)	(853.00)						
		가-3	대방동23-176	(250.00)	(250.00)						가-3	대방동23-176	(250.00)	(250.00)						
		가-4	대방동23-176	(680.00)	(680.00)						가-4	대방동23-176	(680.00)	(680.00)						
		가-5	대방동350-2	(1,400.00)	(1,400.00)						가-5	대방동350-2	(1,400.00)	(1,400.00)						
		가-6	대방동335-218	(679.00)	(679.00)						가-6	대방동335-218	(679.00)	(679.00)						
		가-7	상도동 산4-4	(360.00)	(360.00)						가-7	상도동 산4-4	(360.00)	(360.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8	노량진동 공325-2	(294.00)	(294.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9	노량진동 공325-2	(50.00)	(50.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가-10	노량진동 대221-31	(276.00)	(276.00)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가-11	상도동 363	(111.41)	(111.41)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2	상도동 363	(339.76)	(339.76)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가-13	상도동 363	(52.79)	(52.7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광장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4	상도동 363	(54.94)	(54.94)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5	상도동 363	(183.05)	(183.05)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6	상도동 363	(730.84)	(730.84)						
		가-17	상도동 363	(121.00)	(121.00)						가-17	상도동 363	(121.00)	(121.00)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8	상도동 363	(20.69)	(20.69)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가-19	상도동 363	(15.14)	(15.14)						
		가-20	노량진동 6-4	(254.60)	(254.60)						가-20	노량진동 6-4	(254.60)	(254.60)						
		가-21	노량진동 6-4	(294.00)	(294.00)						가-21	노량진동 6-4	(294.00)	(294.00)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2	대방동 3-15잡	(112.50)	(112.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3	대방동 13-23대	(101.50)	(101.50)						
											가-24	**대방동 350-2**	**(447.10)**	**(447.10)**						**신설 중)447.10㎡**
	생태 육교	①	대방동 350-2	(700.00)	(700.00)						①	대방동 350-2	(700.00)	(700.00)						
	전시 가벽	⑪					8개				⑪					8개				
조경시설	소계			449.00	449.00								449.00	449.00						
	파고라	②					25개				②					25개				
	쉘터	③					36개				③					36개				
	벽천	④	대방동23-176	330.00	330.0						④	대방동23-176	330.00	33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⑤	노량진동 공325-2	18.00	18.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⑥	노량진동 대221-31	45.00	45.00						
	음악 분수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⑦	노량진동 공325-2	56.00	56.00						
	플랜터						1개									1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시설	소계			10,176.95	10,085.95		1동	54.00	107.00				**10,284.65**	**10,193.65**		1동	54.00	107.00		**증:107.70㎡**
	경로당	1	본동 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1	본동 산 11-1	145.00	54.00		2층	54.00	107.00		
	휴게소	나		**10,031.95 (합산오류로 정정)**	**10,031.95 (합산오류로 정정)**						**나**		**10,139.65**	**10,139.65**						**증:107.70㎡**
		나-1	대방동350-1	(790.00)	(790.00)						나-1	대방동350-1	(790.00)	(790.00)						
		나-2	대방동15-41	(180.00)	(180.00)						나-2	대방동15-41	(180.00)	(180.00)						
		나-3	대방동 23-181	(290.00)	(290.00)						나-3	대방동 23-181	(290.00)	(290.00)						
		나-4	상도동4-4	(60.00)	(60.00)						나-4	상도동4-4	(60.00)	(60.00)						
		나-5	대방동 23-176	(1,350.00)	(1,350.00)						나-5	대방동 23-176	(1,350.00)	(1,350.00)						
		나-6	노량진동 225-161	(113.00)	(113.00)						나-6	노량진동 225-161	(113.00)	(113.00)						
		나-7	노량진동 공325-2	(314.00)	(314.00)						나-7	노량진동 공325-2	(314.00)	(314.00)						
		나-8	노량진동 공325-2	(437.00)	(437.00)						나-8	노량진동 공325-2	(437.00)	(437.00)						
		나-9	본동 11-1	(980.00)	(980.00)						나-9	본동 11-1	(980.00)	(980.00)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0	본동 126-249	(4,050.00)	(4,05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1	본동 126-249	(600.00)	(600.0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2	상도동 363	(153.80)	(153.80)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3	상도동 363	(131.99)	(131.99)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4	상도동 363	(110.56)	(110.56)						
		나-15	노량진동 443	(266.10)	(266.10)						나-15	노량진동 443	(266.10)	(266.1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휴게소	나-16	노량진동 448	(10.0)	(10.0)						나-16	노량진동 448	(10.0)	(10.0)						
		나-17	노량진동 440	(10.0)	(10.0)						나-17	노량진동 440	(10.0)	(10.0)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8	대방동 13-65대	(37.10)	(37.1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나-19	대방동 13-58대	(148.40)	(148.40)						
											나-20	**대방동 350-2**	**(107.70)**	**(107.70)**						**신설 증:107.70㎡**
	벤치						183개									183개				
	피크닉 테이블						3개									3개				
	앉음벽						186.7m									186.7m				
	통석 의자	⑫					10개				⑫					10개				
유희시설	소계			1,708.10	1,328.10								1,708.10	1,328.10						
	어린이 놀이터			1,708.10	1,328.10								1,708.10	1,328.10						
		⑧-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⑧-1	노량진동 225-269	(362.00)	(362.00)						
		⑧-2	본동 산 11-1	(480.00)	(300.00)						⑧-2	본동 산 11-1	(480.00)	(300.00)						
		⑧-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⑧-3	상도동 356-220대	(600.00)	(400.00)						
		⑧-4	대방동 13-65대	(266.10)	(266.10)						⑧-4	대방동 13-65대	(266.10)	(266.10)						
운동시설	소계			28064.07	28064.07		(1동)	(765.80)	(1,386.0)				**27,295.27**	**27,295.27**						**감:768.8㎡ (현황반영)**
	배드민턴장	다		6,012.00	6,012.00						다		6,012.00	6,012.00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1	대방동 23-176	(1,904.00)	(1,904.00)		(8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다-2	대방동 15-45일대	(728.00)	(728.00)		(3면)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3	본동 산6-9	(540.00)	(540.00)		(1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4	본동 산6-9	(1,940.00)	(1,940.00)		(3면)				
		다-5	본동 126-249일대	(900.00)	(900.00)		(1면)				다-5	본동 126-249일대	(900.00)	(900.00)		(1면)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테니스장	라		5,283.93	5,283.93						라		5,283.93	5,283.93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1	대방동 23-189일대	(2,889.93)	(2,889.93)		(4면)				
		라-2	본동 126-249일대	(2,394.00)	(2,394.00)		(4면)				라-2	본동 126-249일대	(2,394.00)	(2,394.00)		(4면)				
	축구장	마	대방동350-2일대	9,000.00	9,000.00						마	대방동350-2일대	9,000.00	9,000.00						
	다목적구장	바		5,028.28	5,028.28						바		5,028.28	5,028.28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1	대방동 23-176	(3,253.00)	(3,253.00)						
		바-2	본동 산11-1	(950.00)	(950.00)						바-2	본동 산11-1	(950.00)	(950.00)						
		바-3	상도동 363	(290.08)	(290.08)						바-3	상도동 363	(290.08)	(290.08)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바-4	대방동 13-60대	(535.20)	(535.20)						
	체력단련장	사		1,971.06	1,971.06						사		1,971.06	1,971.06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1	대방동 23-176	(632.00)	(632.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2	본동 126-249	(53.00)	(53.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3	대방동 350-2	(114.00)	(114.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4	대방동 375-78	(238.00)	(238.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5	대방동 375-78	(272.00)	(272.00)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사-6	상도동 363	(194.06)	(194.06)						
		사-7	노량진동 21	(199.30)	(199.30)						사-7	노량진동 21	(199.30)	(199.30)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사-8	대방동 13-66대	(268.70)	(268.70)						
	체육관	2	대방동 350-2	768.80	768.80	철근 CON'C	지하2층	(765.80)	(1,386)											감:768.8㎡ (현황반영)
	체력단련시설	⑬					25개				⑬					25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교양시설	소계			3,897.00	3,127.64		3동	1,516.00	6,767.22				3,897.00	3,127.64		**3동**	**2,245.98**	**8,150.17**		**지상부 면적 변동없음**
	도서관	3	대방동 23-189	1,850.00	1,084.00		5층	994.00	4,959.00		3	대방동 23-189	1,850.00	1,084.00		5층	994.00	4,959.00		
	어린이 도서관	3-1	노량진동 225-161	781.00	781.00		2층	192.00	488.22		3-1	노량진동 225-161	781.00	781.00		2층	192.00	488.22		
	청소년 수련 시설	4	상도동 산4-4	500.00	500.00		지하1층 지상3층	330.00	1,320.00		4	상도동 산4-4	500.00	500.00			**1,059.98**	**2,702.95**		
											4-1	상도동 산4-4	(500.00)	(500.00)		지하1층 지상3층	(330)	(1,320.0)		
											4-2	**대방동 350-2**	**-**	**-**		**지하2층**	**(729.98)**	**(1,382.95)**		**녹지하부시설로 지상부 면적동일**
	다목적 공연장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5	노량진동 공325-2	584.00	584.00						
	탑	⑨		19.00	115.64						⑨		119.00	115.64						
	공군탑	⑨-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⑨-1	대방동 23-176	(115.00)	(115.00)						
	자매 결연탑	⑨-2	대방동 23-176	4.00	0.64						⑨-2	대방동 23-176	(4.00)	(0.64)						
	야외 무대	⑩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⑩	노량진동 공325-2	63.00	63.00						
편익시설	소계			4,028.00	3,742.21		4동	160.40	160.40				**3,353.8**	**3,095.21**		**5동**	**167.40**	**167.40**		**감:674.2㎡**
	주차장	아		2,508.21	2,467.81						아		**1,813.81**	**1,813.81**		**32대**				**감:694.40㎡**
		아-1	대방동 23-106일대	(1,294.21)	(1,294.21)		(15대)				아-1	대방동 23-106일대	(1,294.21)	(1,294.21)		(15대)				
		아-2	대방동 350-1	(960.00)	(919.60)		(24대)				**아-2**	**대방동 350-2**	**(265.60)**	**(265.60)**		**(8대)**				**감:694.4㎡ (현황반영,신설)**
		아-3	상도동 산4-4	(254.00)	(254.00)		(9대)				아-3	상도동 산4-4	(254.00)	(254.00)		(9대)				
	약수터	자		1,020.00	1,020.00						자		1,020.00	1,020.00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1	본동 126-249	(120.00)	(12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자-2	대방동 350-2	(900.00)	(900.0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편익시설	화장실	6		74.79	59.40		1동	59.40	59.40		**6**		**94.99**	**66.4**		**2동**	**66.4**	**66.4**		**증:20.2㎡ (현황반영)**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6-1	대방동 23-189	(74.79)	(59.40)		1동	(59.40)	(59.40)		
											6-2	**대방동 350-2**	**(20.2)**	**(7.00)**		**1동**	**(7.00)**	**(7.00)**		**증:20.2㎡ (현황반영)**
	전망대	7		425.00	195.00		3동	101.00	101.00		7		425.00	195.00		3동	101.00	101.00		
		7-1	대방동 23-189	(280.00)	(50.00)		1동	(41.00)	(41.00)		7-1	대방동 23-189	(280.00)	(50.00)		1동	(41.00)	(41.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2	본동 126-249	(50.00)	(50.00)		1동	(41.00)	(41.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7-3	노량진동 225-291	(95.00)	(95.00)		1동	(19.00)	(19.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8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		260.07	260.07		2동	260.07	260.07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 CON'C	1동	(150.00)	(150.00)		8-1	대방동 23-176	(150.00)	(150.00)	철근 CON'C	1동	(150.00)	(150.00)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량 철골조	1동	(110.07)	(110.07)		8-2	대방동 20-118	(110.07)	(110.07)	경량 철골조	1동	(110.07)	(110.07)		
	조명시설						(250개)									(250개)				
	휴지통						(35개)									(35개)				
	안내판						(1개)									(1개)				
	볼라드						(15개)									(15개)				
	안전휀스						(129경간)									(129경간)				
	문주						(1개)									(1개)				
	경계휀스	⑭					(70경간)				⑭					(70경간)				
	목재휀스	⑮					(16경간)				⑮					(16경간)				
녹지 및 기타				317,180.59									**318,577.19**							**증:1396.60㎡**

다. 공원시설계획도로

○ 도로총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8,677.1	38,155.0 (18,377)				
변경					**8,844.1**	**38,346.6** **(18,377)**				**증:** **191.6㎡**
	중로	소 계			578	(7,744)				
당초	소로	소 계			8,099.1	30,411.0 (10,633)	공원내 도로 (도시계 획도로)			
변경					**8,266.1**	**30,602.6** (10,633)	공원내 도로 (도시계 획도로)			

○ 공원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총괄	합 계			1,513.6	18,377				
변경 없음	중로	소 계			578	7,744				
〃	중로	3	1	6-15	154	1,700	도시계획 도로	대방동23-186	소 3-6	변경없음
〃	〃	3	2	18	158	2,844	〃	대방동23-188	대방동23-188	〃
〃	〃	3	3	4-15	266	3,200	〃	대방동466-57	대방동15-40	〃
변경 없음	소로	소 계			936.6	10,633				
〃	소로	1	1	12	271	3,252	도시계획 도로	중3-3	상도2재개발 입구	변경없음
〃	〃	1	3	2-12	200	1,880	〃	본동 산11-1	본동 산11-1	〃
〃	〃	1	4	12	169.6	2,035	〃	본동 10-5	본동 산127-78	〃
〃	〃	1	5	2-12	27	250	〃	본동 30-25	본동 30-66	〃
〃	〃	1	6	12	204	2,448	〃	상도동 7-87	흑석동 241-36	〃
〃	〃	1	7	12	64	768	〃	상도2 재개발	소3-21	〃

다.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소 계			7,162.5	19,778.0				
변경	**소로**	**소 계**			**7,329.5**	**19,969.6**				**증: 191.6㎡**
변경 없음	소로	3	1	10	72	720	진입로	중 3-3	주차장(자-1)	
〃	〃	〃	2	3	10	30	산책로	중 3-1	배드민턴장(다-1)	
〃	〃	〃	6	3-5	340	1,584	〃	중 3-1 종점	대방동 360-2	
〃	〃	〃	8	3	54	162	〃	소 3-9	광장(가-1)	
〃	〃	〃	9	4	60	240	〃	다목적운동장	소 3-8	
〃	〃	〃	10	2	52	104	〃	광장(가-1)	광장(가-3)	
〃	〃	〃	11	3	54	162	〃	도서관(3)	소 3-13	
〃	〃	〃	12	4	74	296	〃	대방동 350-2	소 3-13	
〃	〃	〃	13	2	426	852	〃	주차장(자-1)	대방동 15-45	
〃	〃	〃	14	3	28	84	〃	소 1-1	배드민턴장(다-2)	
〃	〃	〃	15	2	532	1,064	〃	소 1-1	소 1-1	
〃	〃	〃	16	2	392	784	〃	소 3-15	소 3-15	
〃	〃	〃	17	2	32	64	〃	소 3-15	전망대(5-1)	
〃	〃	〃	18	4	124	496	〃	소 1-1	휴게소(나-4)	
〃	〃	〃	22	6	45	270	〃	노량진동 225-294	노량진동 225-294	
〃	〃	〃	23	6	40	240	〃	본동산 11-1	소 1-3	
〃	〃	〃	24	4	160	640	〃	소 3-23 종점	어린이놀이터(④-3)	
〃	〃	〃	25	2	35	70	〃	소 3-26	소 1-4	
〃	〃	〃	26	2	192	384	〃	소 1-4	소 3-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소로	3	27	2	40	80	산책로	소 3-32	소 3-26	
〃	〃	〃	28	2	15	30	〃	소 3-26	배드민턴장 (다-6)	
〃	〃	〃	29	2	54	108	〃	약수터(차-1)	본동 127 -52북측	
〃	〃	〃	31	2	16	32	〃	소3-29	배드민턴장 (다-6)	
〃	〃	3	32	2	240	480	〃	본동 129-249서측	소 3-33 기점	
〃	〃	〃	33	4	38	152	〃	소 3-34 종점	본동 126-15북측	
〃	〃	〃	34	2	50	100	〃	소 3-32	소 3-33 기점	
〃	〃	〃	35	2	7	14	〃	소 3-36	본동30-17북 동측	
〃	〃	〃	36	2	76	152	〃	소 3-33	소 3-39	
〃	〃	〃	37	4	14	56	〃	소 3-36	본동 30 -17동측	
〃	〃	〃	38	2	52	104	〃	소 3-26	소 3-32	
〃	〃	〃	39	2	180	360	〃	소 3-42	소 3-34	
〃	〃	〃	40	2	34	68	〃	소 3-39	흑석동 200-52	
〃	〃	〃	41	2	30	60	〃	소 3-39	배드민턴장 (다-7)	
〃	〃	〃	42	2	88	176	〃	소 3-45	〃	
〃	〃	〃	43	2	30	60	〃	소 3-44	소 3-42	
〃	〃	〃	44	2	108	216	〃	흑석동 211-33	흑석동 200-63	
〃	〃	〃	45	2	72	144	〃	소 3-44	휴게소 (나-8)	
〃	〃	〃	46	2	12	24	〃	소 3-45	배드민턴장 (다-7)	
〃	〃	〃	47	2	23	46	〃	소 3-45	〃	
〃	〃	〃	48	2	48	96	〃	소 3-4	흑석동 211 -33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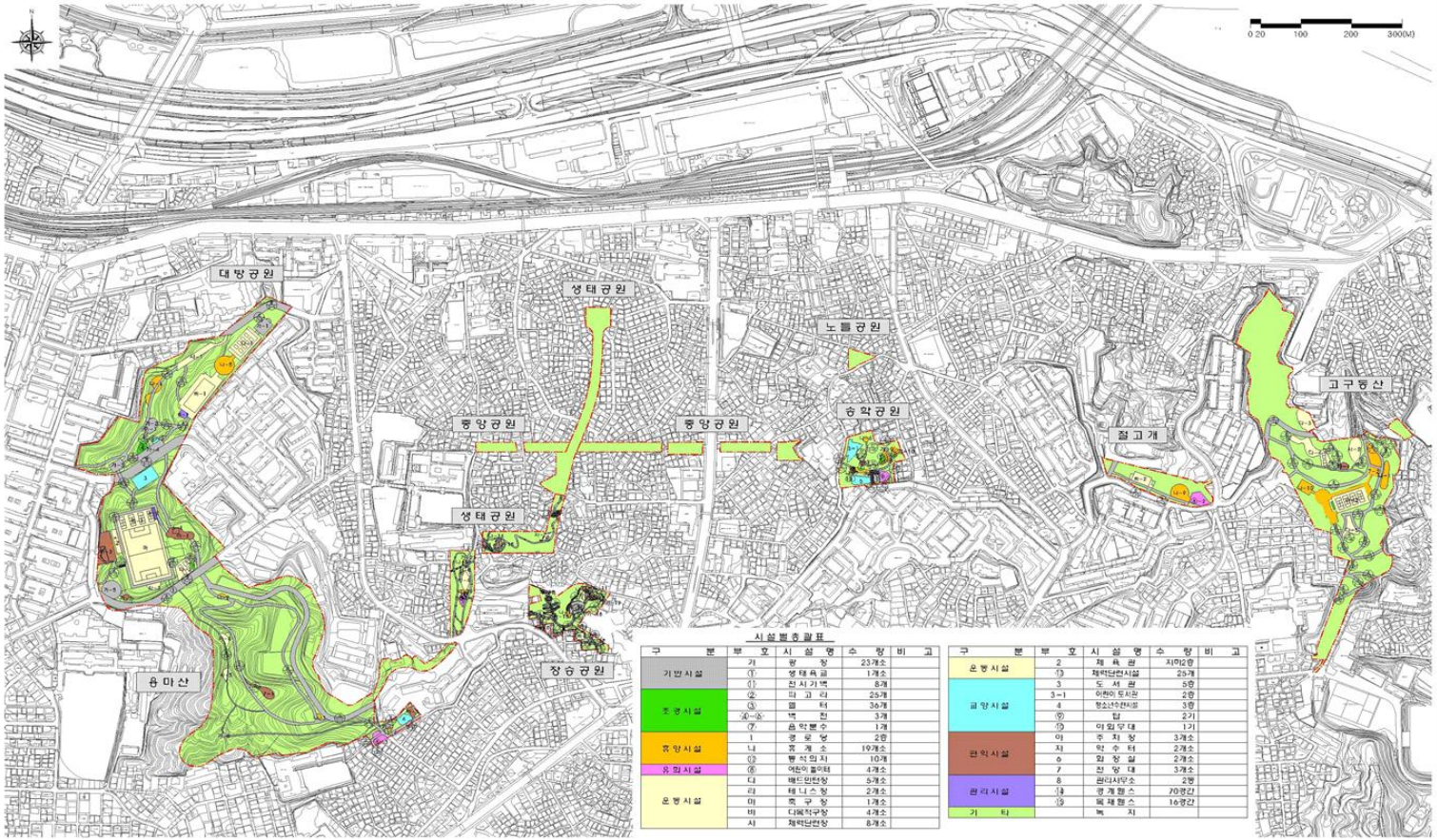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소로	3	49	2	50	100	산책로	소 3-51 종점	소 3-44	
〃	〃	〃	50	2	32	64	〃	흑석동 211-33	소 3-51	
〃	〃	〃	51	2	80	160	〃	흑석동 211-33	흑석동 211-33	
〃	〃	〃	52	2-3	274	822	〃	다목적운동장	광장(가-5)	
〃	〃	〃	53	4	75	300	〃	진입광장(가-3)	광장(가-4)	
〃	〃	〃	54	3	40	120	〃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아-1)	
〃	〃	〃	55	4	156	624	〃	주차장(자-1)	중 3-2	
당초	소로	3	56	2	16	32	〃	소 3-1	주차장 (자-2)	**증: 181.6㎡ (현황반영)**
변경				**1.2**	**178**	**213.6**	**〃**	**소 3-12**	**소 3-58**	
변경 없음	소로	3	57	2	3	6	〃	배드민턴장 (다-3)	소 3-13	
〃	〃	〃	58	4	45	180	〃	광장(가-3)	소 3-11	
〃	〃	〃	59	1.5	704	1,056	〃	소 3-15	중 3-3	
〃	〃	〃	60	4	13	52	〃	대방동 2-2	대방동 2-2	
〃	〃	〃	61	20	35	700	〃	중 3-3	축구장(바)	
〃	〃	〃	62	6	80	480	연결로	상도동 산 4-80임	소 3-63	
〃	〃	〃	63	6	26	156	〃	소 3-62	소 3-18	
〃	〃	〃	64	4	25	100	〃	소 3-63	상도동 산 4-69임	
〃	〃	〃	65	4	10.2	41	〃	소 3-64	상도동 356-220	
〃	〃	〃	66	3	10	30	〃	기존도로	어린이도서관 (3-1)	
〃	〃	〃	67	2	24	48	〃	어린이도서관 (3-1)	소 3-68	
〃	〃	〃	68	2	22	44	〃	휴게소 (나-6)	전망대 (7)	
〃	〃	〃	69	2	17	34	〃	음악분수 ⑦	휴게소 (나-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소로	3	70	4	16.5	66	〃	광장 (가-9)	휴게소 (가-10)	
〃	〃	〃	71	5	3	15	〃	기존도로	광장 (가-8)	
〃	〃	〃	72	4	3	12	〃	기존도로	어린이 놀이터(⑧)	
〃	〃	〃	73	3	11	33	〃	기존도로	휴게소 (나-7)	
〃	〃	〃	74	4	39	156	연결로	광장 (가-13)	광장 (가-15)	
〃	〃	〃	75	4	60	240	〃	광장 (가-15)	광장 (가-16)	
〃	〃	〃	76	5	31	155	〃	광장 (가-16)	광장 (가-11)	
〃	〃	〃	77	2	14.5	29	〃	광장 (가-19)	휴게소 (나-12)	
〃	〃	〃	78	2	7.6	15	〃	광장 (가-18)	광장 (가-16)	
〃	〃	〃	79	3.4	23.1	79	〃	광장 (가-15)	광장 (가-12)	
〃	〃	〃	80	1.5	155.6	233	〃	광장 (가-15)	광장 (가-12)	
〃	〃	〃	81	1.2	37.3	45	산책로	광장 (가-16)	휴게소 (나-13)	
〃	〃	〃	82	1.2	16.5	20	〃	휴게소 (나-13)	광장 (가-11)	
〃	〃	〃	83	1.2	28	34	〃	광장 (가-11)	소 3-77	
〃	〃	〃	84	1.2	47	56	〃	소 3-77	소 3-78	
〃	〃	〃	85	1.2	21.3	26	〃	소 3-78	소 3-75	
〃	〃	〃	86	1.2	17.9	21	〃	광장 (가-14)	소 3-74	
〃	〃	〃	87	1.2	49.8	60	〃	광장 (가-17)	소 3-75	
〃	〃	〃	88	6.2	45.1	280	〃	기존도로	기존도로	
〃	〃	〃	89	3.9	5.1	20	진입로	기존도로	소 3-75	
〃	〃	〃	90	4.5	11.2	50	〃	기존도로	광장 (가-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없음	소로	3	91	4.5	20.2	91	〃	기존도로	광장 (가-17)	
〃	〃	〃	92	4	7.6	30	〃	기존도로	소 3-91	
〃	〃	〃	93	4	14	56	〃	기존도로	광장 (가-17)	
〃	〃	〃	94	1.2	5.3	6	〃	기존도로	소 3-87	
〃	〃	〃	95	2.5-4.5	39.6	135.5	진입로	기존도로	광장 (가-20)	
〃	〃	〃	96	2.5-6.0	185.4	526.5	산책로	광장 (가-20)	소 3-97	
〃	〃	〃	97	2.0	94.2	197.0	진입로	기존도로	광장 (가-21)	
〃	〃	〃	98	2.0	27.6	55.2	연결로	소 3-97	광장 (가-21)	
〃	〃	〃	99	2.0	7.1	14.3	〃	소 3-97	광장 (가-21)	
〃	〃	〃	100	2.0	3.5	7.0	〃	체력단련장 (사-7)	소 3-98	
〃	〃	〃	101	2.5	115.8	289.5	산책로	광장 (가-22)	소 3-103	
〃	〃	〃	102	2.5	71.4	178.6	〃	소 3-103	소 3-103	
〃	〃	〃	103	3.0	53.7	161.1	진입로	대방동 13-133대	대방동 13-22대	
〃	〃	〃	104	2.5	145.6	364.0	산책로	소 3-103	상도동 451도	
〃	〃	〃	105	2.0	11.3	22.6	진입로	소 3-104	상도동 451도	
〃	〃	〃	106	1.5	30.5	45.7	연결로	소 3-104	소 3-101	
신규	**소로**	**3**	**107**	**2.0**	**5.0**	**10.0**	**진입로**	**기존도로**	**화장실 (6-2)**	**증:10.0㎡ (현황반영)**

조성계획도(변경전)

노량진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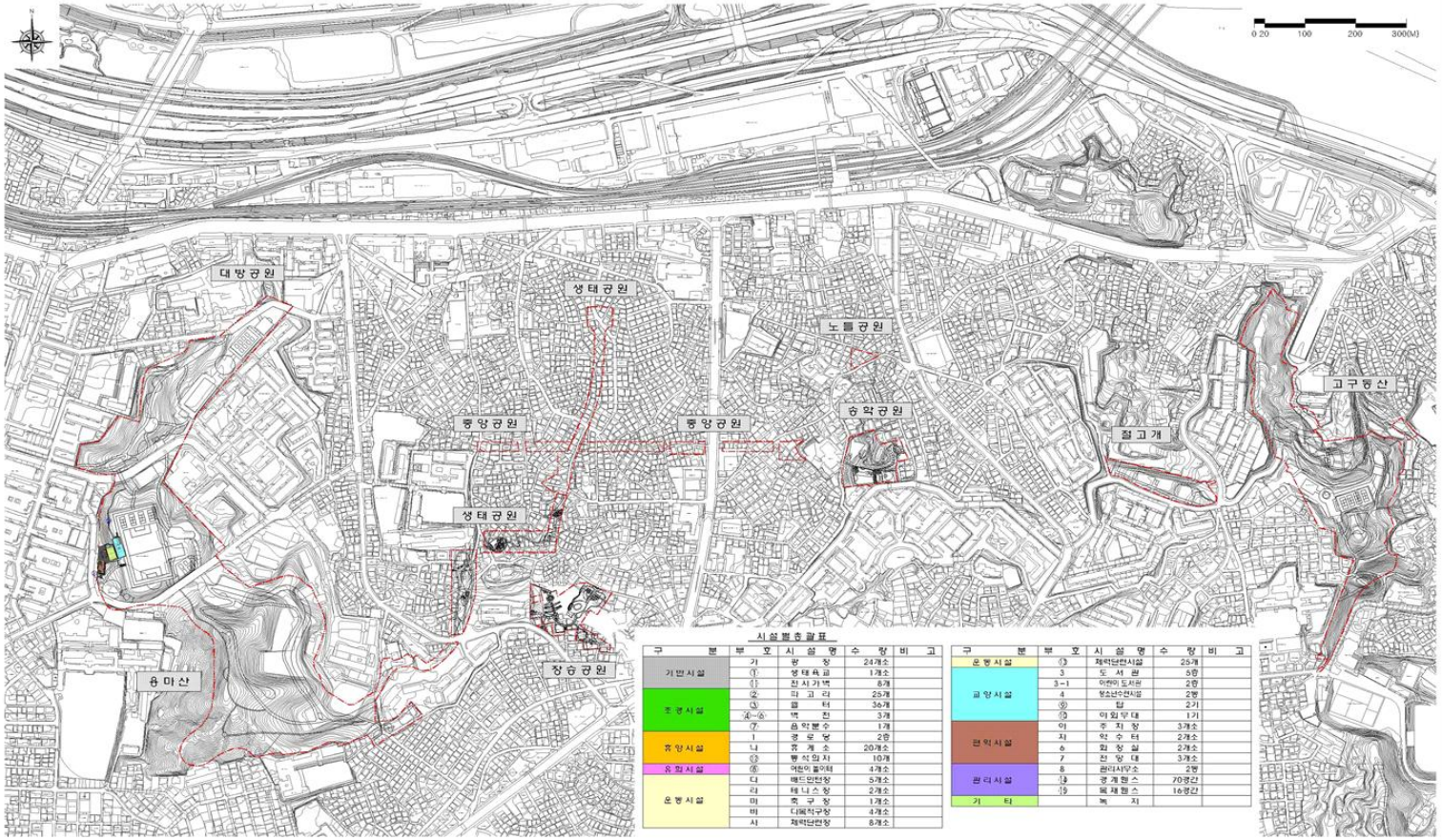
시설별총괄표

구분	부호	시설명	수량	비고
기반시설	가	광장	23개소	
	①	생태육교	1개소	
조경시설	①	진시기벽	8개	
	②	다고디	25개	
	③	캠터	36개	
	④~⑤	벽전	3개	
	⑦	음악분수	1개	
휴양시설	1	광로등	2한	
	나	휴게소	10개소	
	⑫	벤치의자	10개	
유희시설	⑥	어린이놀이터	4개소	
운동시설	다	배드민턴장	5개소	
	라	테니스장	2개소	
	마	축구장	1개소	
	바	다목적구장	4개소	
	사	체력단련장	8개소	

구분	부호	시설명	수량	비고
운동시설	2	체육관	지하2층	
	⑬	체력단련시설	28개	
교양시설	3	도서관	3한	
	3-1	어린이도서관	2한	
	4	청소년전시실	3한	
	⑦	탑	2기	
	⑩	야외무대	1기	
관익시설	아	주차장	3개소	
	자	약수터	2개소	
	6	화장실	2개소	
	7	잔망대	3개소	
	8	관리사무소	2한	
관리시설	⑱	공개휴소	70평간	
	⑲	목재휴소	16평간	
기타		녹지		

조성계획도(변경후)

노량진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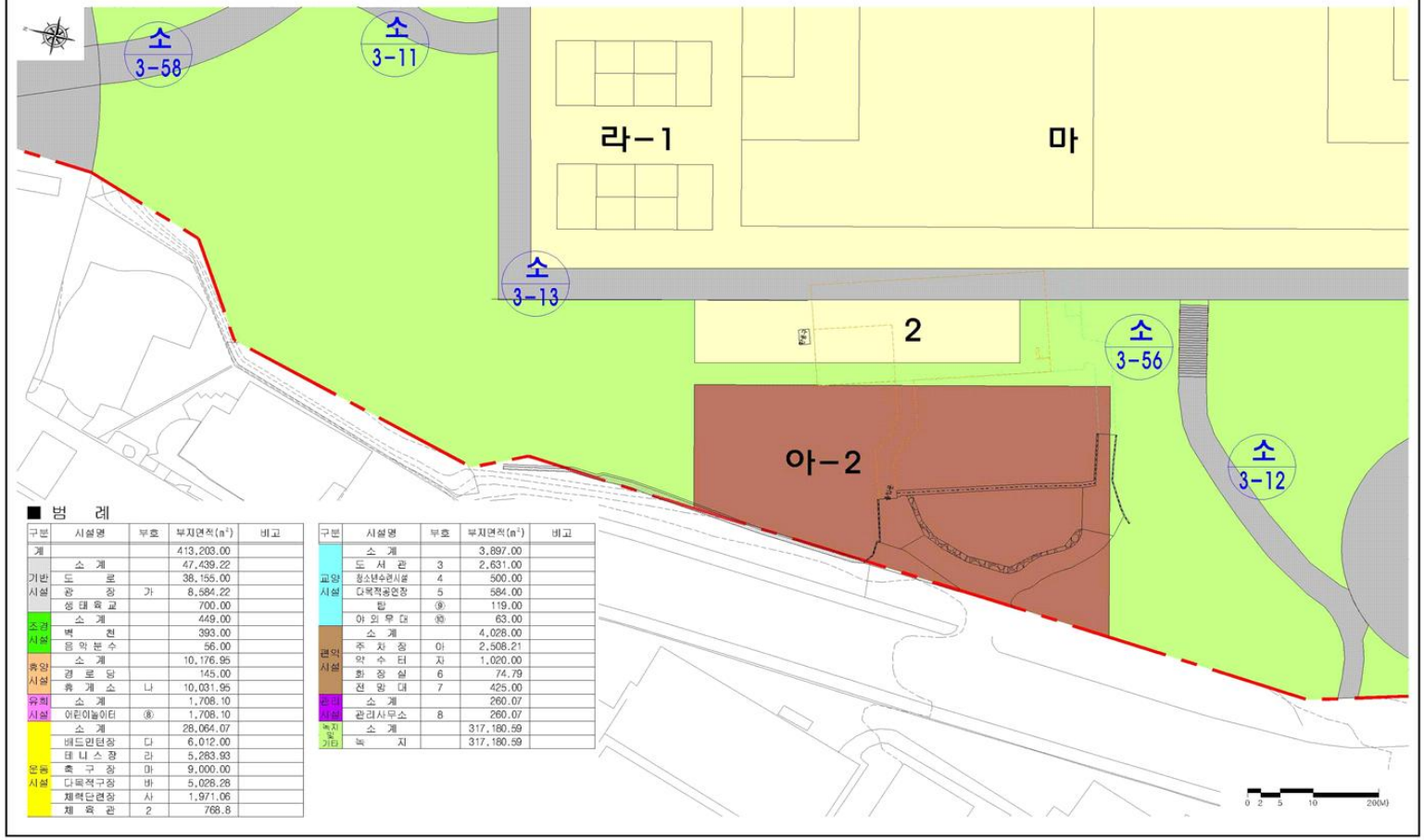
시설별총괄표

구분	부호	시설명	수량	비고
기반시설	가	광장	24개소	
	①	생태육교	1개소	
	①	친시가백	8개	
조경시설	②	파고라	25개	
	③	쉼터	36개	
	④~⑥	벽천	3개	
	⑦	음악분수	1개	
휴양시설	ㅣ	광우보	2한	
	ㄴ	휴게소	20개소	
	⑫	퇴적학자	10개	
유희시설	⑤	어린이놀이터	4개소	
운동시설	다	배드민턴장	5개소	
	라	테니스장	2개소	
	마	축구장	1개소	
	바	다목적구장	4개소	
	사	체력단련장	8개소	

구분	부호	시설명	수량	비고
운동시설	⑬	체력단련시설	25개	
교양시설	3	도서관	5한	
	3-1	어린이도서관	2한	
	4	보소년수련시설	2한	
	⑤	탑	2기	
편익시설	⑪	야외무대	1기	
	아	주차장	3개소	
	자	화장실	2개소	
	6	화장실	2개소	
	7	잔디대	3개소	
관리시설	8	관리사무소	2한	
	⑱	공개행소	70평근	
	⑲	복재행소	16평근	
기타		녹지		

조성계획도(변경전)

노량진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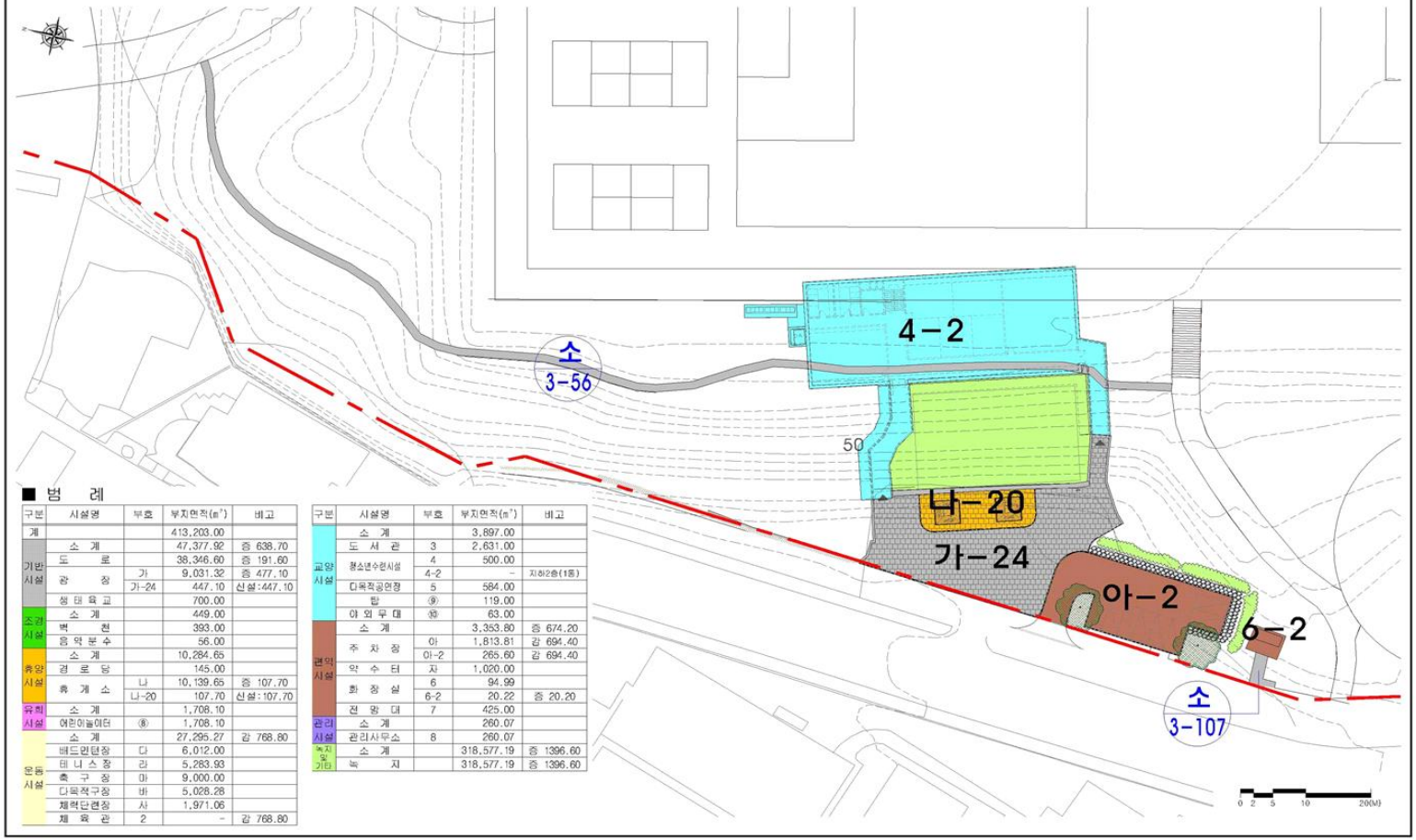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비고
계			413,203.00	
기반시설	소 계		47,439.22	
	도 로		38,155.00	
	광 장	가	8,584.22	
	생태육교		700.00	
조경시설	소 계		449.00	
	벽 천		393.00	
	음악분수		56.00	
휴양시설	소 계		10,176.95	
	경 로 당		145.00	
	휴 게 소	나	10,031.95	
유희시설	소 계		1,708.10	
	어린이놀이터	⑧	1,708.10	
운동시설	소 계		28,064.07	
	배드민턴장	다	6,012.00	
	테니스장	라	5,283.93	
	축 구 장	마	9,000.00	
	다목적구장	바	5,028.28	
	체력단련장	사	1,971.06	
	체 육 관	2	768.8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비고
교양시설	소 계		3,897.00	
	도 서 관	3	2,631.00	
	청소년수련시설	4	500.00	
	다목적공연장	5	584.00	
	탑	⑨	119.00	
	야외무대	⑩	63.00	
편익시설	소 계		4,028.00	
	주 차 장	아	2,508.21	
	약 수 터	자	1,020.00	
	화 장 실	6	74.79	
	전 망 대	7	425.00	
관리시설	소 계		260.07	
	관리사무소	8	260.07	
녹지및기타	소 계		317,180.59	
	녹 지		317,180.59	

조성계획도(변경후)

노량진근린공원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비고
계			413,203.00	
기반시설	소 계		47,377.92	증 638.70
	도 로		38,346.60	증 191.60
	광 장	가	9,031.32	증 477.10
		가-24	447.10	신설:447.10
	생 태 육 교		700.00	
조경시설	소 계		449.00	
	벽 천		393.00	
	음 악 분 수		56.00	
휴양시설	소 계		10,284.65	
	경 로 당		145.00	
	휴 게 소	나	10,139.65	증 107.70
		나-20	107.70	신설:107.70
유희시설	소 계		1,708.10	
	어린이놀이터	⑧	1,708.10	
운동시설	소 계		27,295.27	감 768.80
	배드민턴장	다	6,012.00	
	테 니 스 장	라	5,283.93	
	축 구 장	마	9,000.00	
	다목적구장	바	5,028.28	
	체력단련장	사	1,971.06	
	체 육 관	2	-	감 768.8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비고
교양시설	소 계		3,897.00	
	도 서 관	3	2,631.00	
	청소년수련시설	4	500.00	
		4-2	-	지하2층(1동)
	다목적공연장	5	584.00	
	탑	⑨	119.00	
	야 외 무 대	⑩	63.00	
편익시설	소 계		3,353.80	증 674.20
	주 차 장	아	1,813.81	감 694.40
		아-2	265.60	감 694.40
	약 수 터	자	1,020.00	
	화 장 실	6	94.99	
		6-2	20.22	증 20.20
	전 망 대	7	425.00	
관리시설	소 계		260.07	
	관리사무소	8	260.07	
녹지 및 기타	소 계		318,577.19	증 1396.60
	녹 지		318,577.19	증 1396.60

◈ 서초구공고 제2019-4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592-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4~6	국지 도로	57	서초동 1592-17	서초동 1592-2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131	서초동 1592-17	서초동 1590-15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3	소로3-3	• 도로 연장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 폭원 : 4~6m → 6m - 연장 : 57m → 131m (증 74m) - 종점 : 서초동 1592-20 → 서초동 1590-15	•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2016.10.) 심의의결사항 이행을 위하여 도로 폭원 등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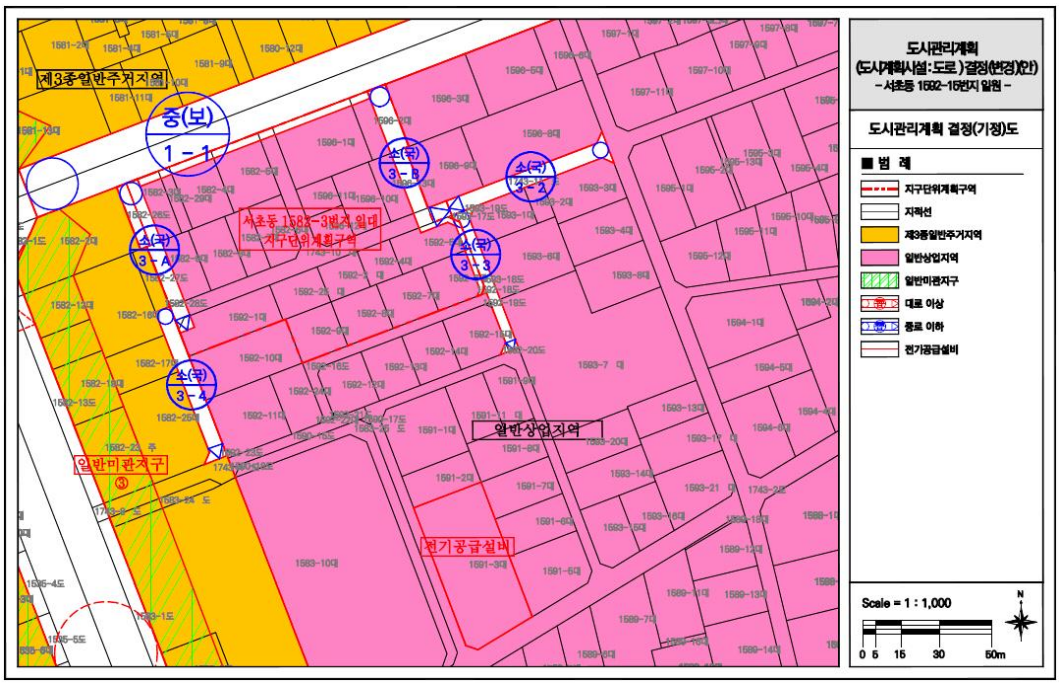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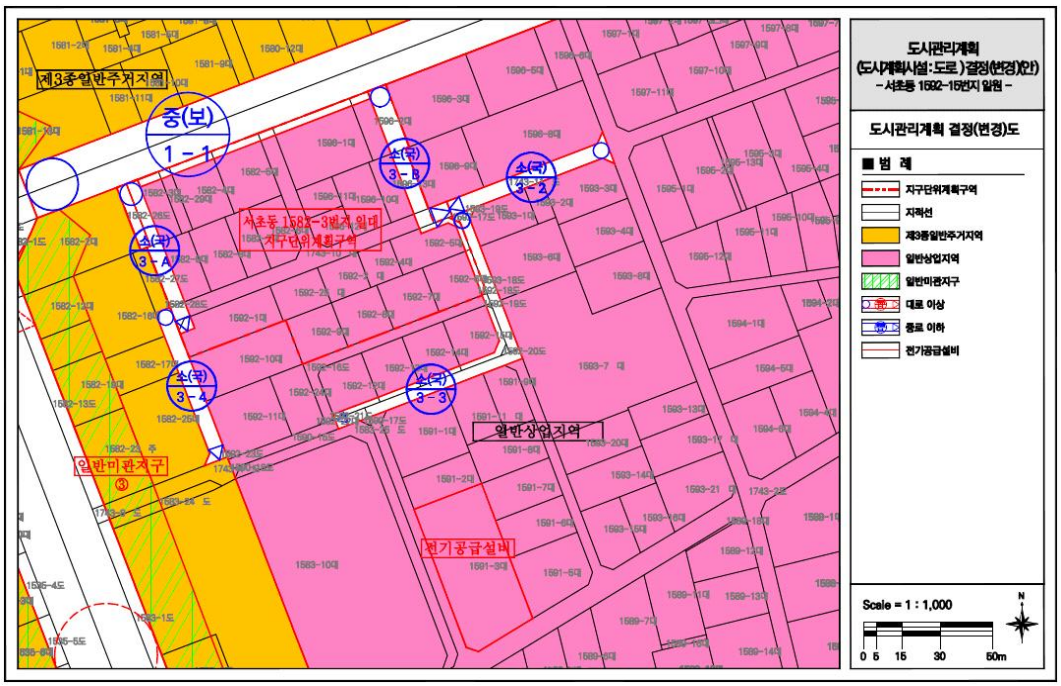
4.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마곡대교~ 성산대교)	선박 3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위한 선박운항	’19.03.18.~ ’19.12.31.	’19. 03.18.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6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3.21. ~ 4.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4.4. ~ 2019.4.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자진납부금액 (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50	이*훈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번길 **	***동****호 (창우동, 은행한신아파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56	김*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번길 **	***동***호 (금곡동, 인정프린스아파트)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61	(주)에*엔아이엔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길 **	***호 (공덕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68	이*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	***호 (화곡동,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69	한*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지층 ***호 (신림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71	김*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호 (신사동, 신한월드빌)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73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신사동, 대성아트빌)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2	000175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공덕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180	임*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	***호 (내동, 가온하우스)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6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3.21. ~ 2019.4.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4.4. ~ 2019.4.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진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다길 **	***호 (구로동, 우원그린빌아파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3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태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호 (임학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4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태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호 (임학동)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53	애완견 줄 미착용	50,000	류*현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길 **	***호 (우면동, 피오스텔)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54	애완견 줄 미착용	50,000	이*평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	(청량리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영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서초동, 다우월드아파트)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2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영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번길 **	A동 ***호 (기장읍, 서린에코빌아파트)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3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환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	지층***호 (염창동, 지층)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0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강*수	기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번길 **-**	(금호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중*회상담센타 (김*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	***호 (천호동, 천호엘크루주상복합)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홍*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	***호 (증산동, 삼일빌라)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0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희, 김*호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번길 ***	(가좌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백*근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자양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1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백*근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자양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1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	*동 ****호 (문래동*가, 국화아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영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나길 **-*	*층 (구로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1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규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공덕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2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규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공덕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2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식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길 **-**	*층 (용산동*가)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2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만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가길 **-*	***호 (자양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2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식회사 위*스이엔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길 **	(당산동*가)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3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조*래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A동 ****호 (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3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용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 (풍동, 숲속마을)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4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영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번길 **	***호 (주안동, 필하우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4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정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번길 **-**	(수동면)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4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섭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길 *-**	***호 (신사동, 신한월드빌)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50	애완견 줄 미착용	50,000	조*영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길 **-*	(갈월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관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길 **	***동 ***호 (소룡동, 그린서해맨션)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료	2019-03	00054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관	기타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길 **	***동 ***호 (소룡동, 그린서해맨션)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41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54번지 ~ 양천구 목동 518번지
   - 면 적 : 1,116㎡(영구 921㎡, 일시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수관로 설치
   - 내 역 : 도수관로(D=1,800㎜, L=419m) 및 도달구 1개소

5. 공사기간 : (당초) 2016.02.17.~2019.02.22.
   (변경) 2016.02.17.~2019.11.0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동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13-14번지 일원
   - 면　적 : 3,0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도관 부식방지 시설물 설치
   - 내　역 : 상수도관 부식방지 시설물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08.03.20.~2013.03.19.
   (변경) 2013.03.20.~2023.03.1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4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진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6번지 일원
   - 면　적 : 86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휴게공간 및 보도 등 데크 설치
   - 내　역 : 휴게공간 및 보도 등 데크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09.09.14.~2014.09.13.
   (변경) 2014.09.14.~2024.09.13.

정 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3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시보 제2019-3511호(2019. 3. 14.)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의견제출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